#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손 현

#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손 현

#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Model related to Promotion Acts

연구자 : 손 현(연구위원)<br>Son, Hyun

2016. 10. 31.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square$ 최근 우리나라의 입법경향 중 하나로서, 특정 산업•기업• 계층•문화 등을 진흥•조성•육성•촉진•지원하기 위한 진흥법제의 입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square$ 최근 법규범이 사회의 요구에 대한 실현과 정책의 추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정책입법으로서의 진흥법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square$ 실제 진흥법제의 경우 개별 입법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 법의 구성이나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형태의 행정 작용법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음.
$\square$ 이러한 진흥법제에 관하여 법령 입안 심사기준이나 학계에 서 합의된 통일적인 입법 형식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상의 용어도 진흥, 조성, 육성, 촉진, 지원 등 입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square$ 이번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입법 형식 중 하나인 진 흥법제의 의의, 특징, 유형별 현황 및 분석을 기초로 하여 진흥법제의 공통된 입법 요소 중 특징적인 요소를 도출하 여 입법 기준과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I. 주요 내용

$\square$ 진흥법제는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제명에 "진흥", "지원", "육성", "촉진", "조성" 등의 용어를 붙인 법률로 범주화할 수 있으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어떠한 산업, 기업, 사람, 계층, 지역, 사안을 지원, 조성, 유도하기 위하여 급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제를 모두 진흥법제라 할 수 있음.
$\square$ 진흥법제는 입법 목적에 따라 그 유형 및 진흥 수단이 매 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정 수반을 필수 요소 로 하며, 진흥 및 지원의 목적, 대상, 요건, 절차 등을 규율 하는 입법 구조를 취하고 있음.
$\square$ 이러한 진흥법제를 입안할 경우에는 입법 목적의 타당성 및 입법 목적과 정책 수단과의 관계에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 지원을 주요 핵심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관련 법제, 재정확보 방안, 집행 및 성과 평가 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입법되어야 함.
$\square$ 최근에는 상향식 정책추진 체계, 진흥 또는 지원 방법과 관련하여 개별 입법 목적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수단의 개발 및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 한 입법 형태라 할 수 있음.
$\square$ 중복, 무분별한 진흥법제의 제정을 방지하고, 진흥법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진흥법제 입법시 구체 적인 입안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II. 기대효과

$\square$ 진흥법이 우리 법체계상 가지는 의미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입법체계에 관한 학술적 연구에 기여함.
$\square$ 현행 각종 진흥법제 전반을 개관하여, 진흥법의 입법 기준 및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진흥법의 제정 및 검토 과정 에서의 입법실무상의 기초자료로 제공함.

2 주제어 : 진흥범, 지원뱀, 육성범, 촉진범, 조성범, 입범 모델, 입범 기준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square$ As one trend in Korean legislation, promotion legislations which have a certain subject such as industry, corporate, culture, and etc. are immensely increasing.
$\square$ Especially, legislation is emerging as one of the most enforceable measurements for responding the demand of the society and implementing policies, the continuous increasing of legislation for promoting is expected.
$\square$ In the case of promotion acts, they generally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framework acts which draw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the policies, however, the structure of the contents of them are very various and they have substantial factors as administrative operation norms.
$\square$ Nonetheless, there is no assessment standards or guides for promotion acts 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academia. In addition, the legal terms have been decided by the legislator's arbitrary judgment.This study suggests the legislative standards and models based on the common factors drawn from the analysis on legislative purposes, characteristics, types, and etc. of each promotion acts.

## П. Main Contents

$\square$ Promotion legislation formally categorizes the acts with the name of "promotion", "support", "foster", "create", etc. However, it substantially includes all acts which are consisted of provisions to support or to induce a certain industry, corporate, people, region, matter based on the political necessity for public interest.
$\square$ The types and measurements of promotion legislation are getting more various by the legislative purposes. The promotion legislation needs the financial roots basically and takes the general structure which provides the promotion purpose, the targets, requirements, and processes.The promotion legislation should be reasonable considering its purpose and the political measurements, and be assessed considering the compliance of financial laws, financial plans, and the causal relation between execution and performance.It is desirable that policies are making in creative and innovative ways according to each purpose of the legislation.

To prevent abusive or redundant legislation and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romotion legislation, the specified legislative standards and improvements are needed.

## III. Expected Effect

It will contribute to academic studies on legislative structure by defining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promotion acts in Korean legal structure.It will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for preparing and reviewing promotion legislation in the future by suggesting the legislative standards and models.[^0]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2. 선행 연구 분석 .....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9
3. 연구의 범위 ..... 19
4. 연구의 방법 ..... 20
제 2 장 진흥법제의 의의 및 입법 현황 ..... 23
제 1 절 진흥법제의 의의 ..... 23
5. 진흥법제의 개념 ..... 23
6. 진흥법제의 기능 ..... 26
7. 진흥법제와 유사한 성격의 법제와의 구분 ..... 28
제 2 절 진흥법제 입법 현황 분석 ..... 33
8. 개 관 ..... 33
9. 진흥법제의 유형별 분석 ..... 33
10. 진흥법제의 특징 ..... 42
제 3 장 진흥법제의 입법 체계 및 모델 분석 ..... 45
제 1 절 의 의 ..... 45
제 2 절 진흥법제의 입법 체계 및 모델 분석 ..... 46
11. 정책추진 체계에 관한 규정 ..... 47
12.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규정 ..... 68
13. 지원수단에 관한 규정 ..... 94
14.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183
15. 벌칙•과태료 규정에 관한 사항 ..... 193
제 4 장 진흥법제 입법시 주요 고려 사항 ..... 205
제 1 절 주요 쟁점 ..... 205
16. 법률 제명의 사용 기준 ..... 205
17. 법적 근거의 필요성 및 범위 여부 ..... 207
18. 진흥 및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 담보 ..... 210
19. 평등의 원칙 등 합헌성 고려 ..... 210
5.「국가재정법」등 재정관련 법제와의 관계 고려 ..... 215
20. 유사•중복 입법의 문제 ..... 220
제 2 절 정 리 ..... 222
참 고 문 헌 ..... 225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21. 법률 제명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229
22. 연도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235
23. 제안자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244
24. 소관부처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251
25. 주요 진흥법제 개관 및 구성 체계 ..... 268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입법경향 중 하나로서, 특정 산업•기업•계층•문 화 등을 진흥•조성•육성•촉진•지원하기 위한 입법(이하 "진흥법 제"라 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법률의 제명에 "OO 진흥법", "OO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진흥법이 2016. 1. 1. 기준으로 약 70 여개가 있으며, "진흥"과 유사한 의미로 "조성", "육성", "촉진", "지원" 등의 명칭을 법 제명에 사용하고 있는 법률도 많이 존재 하고 있다. ${ }^{1)}$ 법률의 제명에 진흥•조성 • 육성•촉진•지원 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법률에 이에 관한 사항 을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거의 모든 법률이 진흥법제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최근 법규범이 사회의 요구에 대한 실현과 정책의 추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정책입법으로서의 진흥법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최근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 중순까지 제명을 기준으로 새로 제정•공포된 법률 27 건 중 11 건이 진흥 • 육성 • 촉진 • 지원 관련 법률이다.

[^1][최근 제정된 진흥법제 현황2)]

| 구 분 | 법률명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진흥 } \\ & \text { (4건) } \end{aligned}$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br>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학진흥법 |
| $\begin{aligned} & \text { 육성 } \\ & \text { (2건) } \end{aligned}$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 $\begin{aligned} & \text { 촉진 } \\ & \text { (2건) } \end{aligned}$ |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립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지 원 <br> (1건)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진흥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책의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는 프로그 램법으로서 기본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나, 실제 진흥법제의 경우 개별 입법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법의 구성이 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형태의 행정 작용법적 요소를 실질 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진흥법제에 관하여 법령 입안 심사기 준(법제처)이나 학계에서 합의된 통일적인 입법 형식이 구체적으로 마 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상의 용어도 진흥, 조성, 육성, 촉진, 지원 등 입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진흥법제의 특성상 기본법이나 특별법과 같은 고유한 입법 모델 및 형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 특성상 통일된 입법

[^2]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현행 우리 입법 현 실상 진흥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상으로도 현행 진흥법제에 비효율적인 추진 체계 및 추진 계획의 마련, 과도한 특례조항의 신설, 중복•유사 입법 및 지원 의 문제, 과다한 규제 조항의 포함, 입법 목적과 정책 수단과의 괴리 문제 등이 개별법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진흥법제가 우리 입법 체계상 가지 는 의미와 성격을 분석하고, 향후 각종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작업에 유용한 법령 입안 모델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번 연구는 우리 입법 체계상 진흥법이 가지는 의미와 성격, 기능, 유 형을 분석하고, 현행 진흥법 입법 형식을 갖춘 법제 전반을 검토하여, 공통의 입법 요소를 도출하고, 진흥법 입법 형식의 합리성과 타당성 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진흥법제의 입법 기준 및 모델을 마련함을 목 적으로 한다.

## 2. 선행 연구 분석

정책입법의 증가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입법형식으로 기본법, 특별법, 진흥법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기본법, 특별법에 대한 입 법 체계 및 입법 모델 연구는 2006년, 2012년도에 진행되었고, 이번 연구는 진흥법제에 대한 입법 체계 및 모델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진흥법제에 있어서 개별 법률별에 대한 입법 평가와 법제 개 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진흥법제 전반에 대 한 입법 체계를 분석하고, 입법 기준 및 모델을 제시한 연구는 진행 되지 않았다.

## （1）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3）

이 연구는 2006년 당시 제정•시행중인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43 개의 기본법을 분석하여，우리 입법 형식상＇기본법＇이 가지는 의의， 기능，특성을 밝히고，입법 모델을 제시하였다．대부분의 기본법이＂규 율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본이념 및 방향，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동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국가 등의 책무，동 제도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개별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준 및 제정•개 정시 기본법의 취지 존중，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제도를 시행 함에 있어서 다른 개별 법률에서 도입할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 등 동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 등을 정하 고，기본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개별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4）＂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니，기본법의 구성 중 제1장 총칙（목적，기본이 념，정의，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 등의 기본 책무），제 2 장（OO정책의 기본 계획 및 추진 체계），제4장（보칙），제5장（벌칙）규정 등에 대한 분 석을 중심으로 하였고，제 3 장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개괄적 인 분석 및 소개를 하고 있다．

진흥법제의 경우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지원 수단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으로 보자면 기본법 구성상 제 3 장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들어갈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 게 된다．

[^3]
## (2)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방안 연구5)

이 연구는 특정한 사회적 문제나 사건에 대한 개별 입법 조치의 필 요성에 따라 "OO특별법", "OO 특례법", "OO특별조치법", "OO임시조 치법", "특정OO법" 형태로 2012년 기준으로 제정•시행중인 149개 특별 법 현황을 분석하여,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의의와 기능을 살 펴보고, 특별법 입법 형식, 입법 체계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흥법제의 경우에도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된 법률이 많은 것처럼 특별법의 성격상 진흥법제의 핵심 입법 구성 요소인 특례, 지원 사항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선행 연구에서도 특별법 중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현황을 소개하고, 고려사항을 제시 하고는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특례, 지원 규정에 대한 분석과 특례• 지원수단에 대한 입법 기준 및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진흥 법제의 경우 진흥 및 지원수단에 대한 개별 분석이 중심이 되었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최근 법률이 정책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특정 산업•기업•계층•문화 등을 진흥•조성•육성 • 촉진•지원하기 위 한 정책 실현수단으로 진흥법제의 제•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진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특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진흥법제의 공통된 특징으로 삼아 진흥법 제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법률의 제명에 "진 흥", "지원", "육성", "촉진", "조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진흥
5) 해당 연구는 박영도(b),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2 발간 된 보고서임; 이하의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여 요약•분석하였다.

법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의 범위를 확정하였다(2016. 1. 1. 기준 286 개).

주요 연구내용으로 첫째, 진흥법제의 의의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진흥법제의 범주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진흥법을 하나의 입법 형 식으로 볼 수 있고, 기본법과 특별법 등 다른 입법 형식과는 어떤 차 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진흥법제가 우리 입법 체계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규명하였다.

둘째, 진흥법제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 진흥법제의 특성을 파악해보 았다. 현재 제정•시행되고 있는 진흥법제를 다양한 형태 즉, 제명별, 연도별, 제안자별, 소관부처별, 진흥대상별, 진흥수단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이러한 진흥법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진흥법제의 공통된 입 법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 주요 요소별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입안되 어야 하고, 바람직한 입법 형태(모델)는 무엇인지 파악해보았다.

최종적으로는 진흥법제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쟁점사항 을 검토하여 진흥법제 입법 및 정비시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진흥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를 위해 개별 진흥법제에 대한 전수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진흥법제 및 입법 형식, 기준에 관한 다양한 법률 문헌, 입법 연혁 및 입법 자료 등을 분석하여, 진흥 법제의 입법 체계 및 입법 기준(모델)을 도출하는데 참고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입법 실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 [워크솝 개욤]

| 구 분 | 개 요 |
| :---: | :---: |
| 제1차 <br> 워크숍 | 일시 : 2016년 3월 22일(화) 오후 16:00~18:00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 주제 : 진흥법제 현황 개관 및 주요 쟁점 검토 세부 일정 <br> o 발표 <br> - 진흥법제 현황 개관 및 연구의 주요 내용 (손 현, 한국법제 연구원 연구위원) <br> - 현행 진흥법제상의 주요 쟁점 정리(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br> o 토론: <br> 고낙훈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법제처 법제심의관) <br> 유태동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 서기관) <br>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br> 조성규 (전북대 법전원 교수) <br> 차종진 (I\&I 리서치 선임연구위원) <br>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제2차 <br> 워크숍 | 일시 : 2016년 5월 13일(금) 오후 16:00~18:00 <br>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 <br> 주제 : 주요 국가의 진흥법제 현황 분석 <br> 세부 일정 <br> o 발표 <br> - 프랑스 진흥법제 현황 분석(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br> - 독일 진흥법제 현황 분석(차종진 I\&I 리서치 선임연구위원) <br> - 일본 진흥법제 현황 분석(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6) 해당 워크숍은 이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워크숍에서 논의된 자료는 별도로 발간하지 않았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자들의 동의를 얻어 일부 인용하였으며, 그 경우에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자료임을 표시하였다.

| 구 분 | 개 요 |
| :---: | :---: |
|  | o 토론: <br> 고낙훈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법제처 법제심의관) <br> 유태동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 서기관) <br> 조성규 (전북대 법전원 교수) |
| 제3차 <br> 워크숍 | 일시 : 2016년 10월 21일(금) 오후 16:00~18:00 <br>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서면 조사 병행) <br> 주제 : 진흥법제 입법 기준 및 모델(안) 검토 세부 일정 <br> o 발표 <br> - 진흥법제 입법 기준 및 모델(안)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o 토론: <br> 김남철 (부산대 법전원 교수) <br>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br> 김은주 (제주대 법전원 교수) <br> 문상덕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br> 이관행 (강원대 법전원 강사) <br> 이호용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br> 최승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br> 홍강훈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br> 홍정선 (전 연세대 법전원 교수) |

# 제 2 장 진흥법제의 의의 및 입법 현황 

## 제 1 절 진흥법제의 의의

## 1．진흥법제의 개념

현행 법제상 법률의 제명에＂진흥＂，＂지원＂，＂육성＂，＂촉진＂，＂조성＂ 등의 용어를 붙인＂진흥법（「과학교육진흥법」，「대학도서관진흥법」，「공 간정보산업진흥법」 등）＂，＂지원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식생활교육지원법」，「국 제경기대회 지원법」 등）＂，＂육성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 등）＂，＂촉진법（「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도시교통정 비 촉진법」，「해외건설 촉진법」 등）＂，＂조성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등이 존재하고 있는데，이 러한 진흥법제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 （1）형식적 의미의 진흥법제

현행 법제상 법률의 제명에＂진흥＂，＂지원＂，＂육성＂，＂촉진＂，＂조성＂등 의 용어를 붙인 법률을 의미한다．문제는 형식적으로는 진흥법제에 속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상＂진흥＂，＂지원＂，＂육성＂，＂촉진＂，＂조성＂보다는 규제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고 있는 법률（예를 들어「건설기술 진흥법7）」，

7）「건설기술 진흥법」의 경우 2013．5． 22 전부개정을 통해「건설기술관리법」에서 법 률의 제명을 변경하였다．법률의 제명 변경 이유로＂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 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법제처，국가법령 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1794호，2013．5．22．，전부개정）」제•개정 이유）． 그러나 법률 내용을 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제 25 조 제 2 항）에 관한 조항이 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법률의 제 명을 기준으로 진흥법제를 개념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진흥법，지원법，육성법，촉진법，조성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문제가 되나，현행 실정법상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대상 목적에 따른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용어를 선택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우리 법령 체계에서 법률의 제명에 따른 구분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현행 진흥법제에서 진흥 등의 대상을 무엇으로 하 느냐에 따라 일정 부분 용어 사용의 통일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그러나 진흥법，지원법，육성법，촉진법，조성법을 입법 형식이 나 규율 내용에 따라 구별되는 특성이나 구별의 실익은 발견하기 어 려워 보인다．
［법률상＂진흥•지원•육성•촉진•조성＂용어 사용례］

| 법률명 | 목 적（제1조） |
| :---: | :---: |
|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 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 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관광진흥법 |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 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이 법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 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되는 등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기존의 건설기술 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진흥법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관리 법（규제법）의 성격이 더 강한 법률로 평가된다．

| 법률명 | 목 적(제1조) |
| :---: | :---: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법은「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 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 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 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 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 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실질적 의미의 진흥법제

진흥법제가 가지는 특성 및 내용에 따라 진흥법제를 정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진흥법제의 규정 내용 및 특성을 기준으로 보면 공공복 리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어떠한 산업, 기업, 사람, 계층, 지 역, 사안을 진흥(지원•육성•촉진•조성)하기 위해 급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행정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수익적 행정, 급부행정, 촉진•조성 행정, 유도행정에 해당하는 법제를 진흥법제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 을 것이다.

## ［행정의 분류8）］

（1）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수익적 행정 VS 침익적 행정 VS 복효적 행정
（2）법적 수단에 따른 분류 ：급부행정 VS 침해행정
（3）내용에 따른 분류 ：급부행정（촉진•조성행정） VS 질서행정 VS 유도 행정 VS 재무행정 VS 조달행정

## 2．진흥법제의 기능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기본법의 기능으로（1）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2）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3）정책의 계속 성•일관성 확보，（4）행정의 통제 기능，（5）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6）지방분권의 추진 기능을 제시하였다．9）특별법의 기능으 로는（1）입법 정책적인 기능，（2）국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와 입 법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기능，（3）신속한 법규범의 제•개정을 할 수 있는 입법 기술적인 기능 등을 수행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10)}$

오늘날과 같이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국민의 권익을 소극적으로 보 호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원적인 이해관계의 조정 과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결，다양한 공적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나아가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복지공동체의 건설 등 실로 광범 위한 공익실현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11）정책목표를 달성 하기 수단으로 법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이러한 정책입법

8）행정법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행정의 분류 기준이다．행정의 분류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정선，「행정법특강」，박영사，2012，pp．9～11；김남철，「행 정 법 강론」，박영사， $2014 \mathrm{p} .13 \sim 16$ 참조 바람．
9）자세한 내용은 박영도（a），앞의 보고서，pp．24～34 참조
10）자세한 내용은 박영도（b），앞의 보고서，pp．25～31 참조
11）문상덕，＂행정법학에 있어서 법과 정책－그 상관관계와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최송화교수화갑기념논문집「현대공법학의 과제」，박영사，2002，pp．995～996．

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형식으로 기본법，특별법，진흥법제의 활용이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정책 실현 및 행정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기본법，특별법，진흥법제는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기본법의 경우에는 정책의 목적 내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기 본적 정책 수단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면，특별법은 일반법에서 규 율하는 사항과 별도로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또는 특정 사안，특정시 간•기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한시 적 법률로서 입법 기술적으로 활용되는 법률로 볼 수 있다．${ }^{12)}$ 형식적 으로 기본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별법의 존재를，${ }^{13)}$ 특별법의 경 우에는 일반법의 존재를 예정하고 입법된다．

이에 반해 진흥법제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본법，특별법 형 식으로 제정되는 형태도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 실현 및 행 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조성，유도적 수단들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개별 법제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진흥법제와 관련하여 기본법（일반법），특별법이 존재하는 경 우도 있지만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예정하지 않고 정책 및 제도 운영 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 형태가 가 장 많이 존재하는 진흥법제의 형태이다．

이러한 진흥법제의 경우 국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는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헌법 원리의 구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법률이 정책 실현의 수

12）기본법，특별법의 개념，특징，기능 등에 대한 설명은 박영도（a）（b），앞의 보고서와 문상덕，앞의 논문 등을 참조하였다．
13）물론 기본법의 경우에도 기본 이념 및 방향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민방위기 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의 운영 사 항을 완결적으로 규정하여 개별 법률을 전제하지 않는 기본법도 존재한다（박영도 （a），앞의 보고서，p．346）

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흥법제는 지원 기능 등을 통해 국 가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제로서 기 능하고 있다.

기본법의 경우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국가 정책의 목적 및 기본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입법 목적이라면, 진흥법제의 경우 이러한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즉 진흥 목적, 대상,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질적인 국가 정책이 집행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 정책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흥법제는 기본적으로 특정 산업, 기업, 사람, 계층, 지역, 사안을 진흥•지원•육성•촉진•조성하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이러한 진흥법제의 집행을 통해 산업 및 기업 육성 정책을 실질 적으로 구현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의 지원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평 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 하는 법제이다.

## 3. 진흥법제와 유사한 성격의 법제와의 구분

## (1) 기본법과의 구분

## 1) 기본법의 개념

기본법의 개념과 관련하여 선행연구14)에 따르면 실질적 의미의 기 본법과 형식적 의미의 기본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실질적 의미의 기 본법은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 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가진 법률인가와는

[^4]관계가 없이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형식적 의미의 기 본법이란＂법령의 제명에＇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을 통칭하 여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법률 제명의 형식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 2）진흥법제와의 구분

현행 법제상「문화산업진흥 기본법」，「영상진흥 기본법」처럼 진흥법 과 기본법 형식이 혼재된 형태도 존재하는 것처럼，진흥법제와 기본 법은 유사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기본법의 일반적인 유형이 제 도의 기본 이념，방향을 기본법에서 정하고，이에 맞추어 개별적인 사 항은 개별법으로 규율하는 형태로 기본법은 개별법과의 관련성을 가 지고 입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진흥법제의 경우는 기본법 형태일수 도 있고 개별법 형태일 수도 있다．기본적으로 진흥법제의 경우 개별 법률의 존재를 예정하지 않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 대 상，지원 수단 등이 하나의 완결적 형태로 규정된 법제를 내용상 분 류에 따라 진흥법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2）특별법과의 구분

## 1）특별법의 개념

일정한 분야에 대해 법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법률에 의해 규율 될 수 있는 사안 또는 수범자 등을 특정하지 않고，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 구속력 내지 일반적 통용력을 가지는 법률 을＂일반법＂이라고 하는데 반해，특별법은 동일한 사항에 관해 특정인 이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사안，특정시간•기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규율하는 법을＂특별법＂이라고 한다．15）

15）박영도（b），앞의 보고서，p． 25

## 2）진흥법제와의 구분

진흥법제의 경우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되는 법률이 다수 있다．일반 법을 두고，특례 및 특별 규정이 필요한 경우 특별법 형식을 통해 입 법되는데，일반적으로 특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되는 진흥법제가 다수 존재한다．

##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된 진흥법제 현황］


#### Abstract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 별조치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공 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 별법」，「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자 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국제과학비즈니 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산 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경상남도 창


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주한미군 공 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 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허 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지 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등

## （3）규제법과의 구분

## 1）규제법의 개념

규제란＂어떤 사항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16)}$ 실정법상「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 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17）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할 때 규제법이란 어떤 사항을 규 율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실질적 의미의 규제법이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법률을 의미할 것이고，형식적 의미의

16）한국법제연구원，「법률용어사례집」 2016．p． 368.
17）「행정규제기본법」 제 2 조 제 1 호

규제법이란「질서위반행위규제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풍속영업 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법률의 제명에＇규제＇를 사용하고 있 는 법률과 「건설기계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 등＇관리＇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을 규제법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 의미의 규제법 현황］


#### Abstract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 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오존층 보 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 에 관한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지 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행정규제기 본법」，「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 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 법」，「공중위생관리법」，「군수품관리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먹는물 관리법」등


## 2）진흥법제와의 구분

어떤 사항을 규율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 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사항을 주로 담고 있는 규제법제와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어떠한 산업，기업，사람，계층，지역，사 안을 진흥（지원，육성，촉진，조성）하기 위해 급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진흥법제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상 진흥법제에서도 진흥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 등 규제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고，규제법제에서도 규제 유인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수 규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구분하

기는 쉽지 않다．진흥법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 형태 의 규제 사항이 포함되는 진흥법제는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정 부분 진흥법제에서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더라 도 법률의 입법 목적이＇진흥＇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진흥법제로，반대 라면 규제법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법률의 제명에 있어 서도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제 2 절 진흥법제 입법 현황 분석

## 1．개 관

2016．1．1．기준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진흥법제가 약 286 개 정 도 되는데，이러한 진흥법제를 법률 제명별，연도별，제안자별，소관부 처별，진흥대상별，진흥수단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해봄으로써，진흥법 제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 2．진흥법제의 유형별 분석

## （1）법률 제명별 분석

［법률제명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구 분 | 법 률 |
| :---: | :---: |
| 진흥법 | 「과학교육진흥법」등 70개 법률 |
| 지원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 76 개 법률 |  |


| 구 분 | 법 률 |
| :---: | :---: |
| 촉진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50개 법률 |
| 조성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
| 기 타 ${ }^{18)}$ | 「숙련기술장려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53개 법률 |
| 소 계 | 286개 법률 |

진흥법제의 경우 법률 제명 및 목적규정에서 진흥，육성，지원 또는 조성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이러한 법률 제명이 명확한 용례 에 따라 구분되어져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진흥 등의 대상이 되는 목적 등에 따라 입법자의 선택에 의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다만，법률 제명이 진흥 등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1）명 시적으로 규제의 입법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사회적 책임을 높이며＂），（2）규제를 주요 목적 및 내용 으로 하면서 법률의 제명만을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경우（「건설기술관 리법」 $\rightarrow$ 「건설기술 진흥법」）도 있어 법률의 제명만으로 진흥법제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법률의 제명만으로 구분해본 형식적 의미의 진흥법제의 경우 대략 지원 법이 76 개，진흥법이 70 개，촉진 법이 50 개，육성법이 30 개 정도로 지원법이 가장 많이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아무래도 진흥 정 책의 가장 큰 목적 및 수단이＇지원＇이기 때문에 법률의 제명에도＇지 원＇을 사용한 법률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9)}$

18）기타는 증진，장려 등 유사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법 형태 로 제정된 법률 유형이다．
19）지원법제가 가장 많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연구보고서의 제목 및 관련 법률을 지 원법제가 아닌 진흥법제로 유형화한 이유는 지원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만，용례를 살펴보면＇진흥＇이 지원，조성，육성，촉진보다는 가장 넓은 의미로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흥법제＇라고 칭하였다． 연구자에 따라서는＂진흥법제＂가 아니라 해당 관련 법률들을＂지원법제＂로 유형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연도별 진흥법제 분석

## ［연도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연도별 | 법 률 |
| :---: | :---: |
| 1950 년대 | 「원자력진흥법20）」 등 1개 법률 |
| 1960 년대 | 「농촌진흥법」 등 11개 법률 |
| 1970 년대 | 「학술진흥법」 등 12 개 법률 |
| 1980 년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0개 법률 |
| 1990 년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49개 법률 |
| 2000 년대 | 「영재교육진흥법」 등 113 개 법률 |
| 2010 년대 | 「대학도서관진흥법」 등 80 개 법률 |
| 소 계 | 286개 법률 |

최초의 진흥법은 1962년 3월 21일＂농촌의 진흥개발을 위하여 필요 한 시험연구，계몽지도，기술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지도자의 양성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복리증진을 기함을 목적21）＂으로 제정된「농촌진흥법」이다．이후 진흥법제의 제정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데 1990년대，2000년대에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진흥법제가 국가 정책 실현 및 행정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다는 측면에서 보면，1990년대 이후 행정기능이 보다 다양화되고 질적

20）「원자력진흥법」의 경우 1958．3． 11 제정된 「원자력법」이 그 전신으로 제일 먼저 제정된 법률이기는 하나，법률의 제명에＂진흥＂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원자력 이용 및 진흥체제와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의 분리필요성에 따라「원자력법」이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으로 분법된 2011년부터이기 때문에 「농촌진흥법」이 제 일 처음으로 제정된 진흥법제로 볼 수 있다．
21）「농촌진흥법［법률 제1039호，1962．3．21．，제정］」 제정이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방문일자 2016．2．20）

심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수반하는 진흥법제의 제정도 활발하게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산업화，세계화에 따른 경제 개발 및 산업 발 전의 필요성，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지원 필요성이 증 대됨에 따라 특정 산업，기업，사람，계층，지역，사안을 진흥（지원•육 성•촉진•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의 진흥법제가 본격적으로 제 정되기 시작한 것이다．따라서 연도별 진흥법제의 제정 현황을 살펴 보면，해당 정부의 정책 방향과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 （3）제안자별 진흥법제 분석

［제안자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제안자 구분 | 법 률 |
| :---: | :---: |
| 의원입법 | 「과학교육진흥법」 등 212개 법률 |
| 정부입법 | 「학술진흥법」 등 84 개 법률 |
| 소 계 | 286개 법률 |

진흥법제의 경우 정부입법에 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법률이 월 등히 많다．기본법의 경우 정부입법의 형태로 제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과 구별된다．${ }^{22)}$ 물론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정부의뢰입법이 포함되 어 있기는 하지만，진흥법제의 특성상 침익적인 사항보다는 급부사항 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예산 편성 및 승인의 용이함 때문에 의원들 이 국민 및 지역구민을 위해 진흥법제의 입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다만 진흥법제의 입법 증가에 따라 실제 실체적 내용이

22）2006년 기준으로 총 43 개의 기본법 중 14 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고， 29 개 법률이 정부입법으로 제정되었다（박영도（a），앞의 보고서，p．50）．이는 기본법이 정 책의 방향과 골격을 정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입법으로 많이 제정된 것 으로 보인다．

없거나 유사•중복되는 진흥법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 （4）소관부처별 진흥법제 분석

## ［소관부처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소관부처 | 법 률 |
| :---: | :---: |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2 개 법률 |
| 교육부 | 「과학교육 진흥법」 등 17개 법률 |
| 국방부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 |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등 28 개 법률 |
| 기획재정부 | 「경제교육지원법」 등 2개 법률 |
| 농림축산식품부 | 「김치산업 진흥법」 등 27 개 법률 |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1개 법률 |
| 미래창조과학부 | 「우주개발 진흥법」등 26개 법률 |
| 법무부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등 2개 법률 |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법」 등 16개 법률 |
| 산업통상자원부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6개 법률 |
| 행정자치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등 14개 법률 |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등 10 개 법률 |
| 외교부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1 개 법률 |
| 통일부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5 개 법률 |
| 해양수산부 | 「소금산업 진흥법」등 20개 법률 |


| 소관부처 | 법 률 |
| :---: | :---: |
| 환경부 | 「환경교육진흥법」등 11개 법률 |
|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등 2개 법률 |
| 국민안전처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개 법률 |
| 기상청 | 「기상산업진흥법」등 1개 법률 |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법」등 1개 법률 |
| 문화재청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
| 산림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
| 조달청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1 개 법률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5 개 법률 |
| 특허청 | 「발명진흥법」등 1개 법률 |
| 금융위원회 | 「금융중심지의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등 1개 법률 |
| 방송통신위원회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등 1개 법률 |
| 국무조정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
| 소 계 | 286개 법률 |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진흥법제를 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 히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미래창조과학부，산 업통상자원부 등의 순으로 진흥법제 입법 비율이 높다．진흥법제가 특정 산업，기업，단체，사람，행사 등에 대한 진흥（지원•육성•촉 진•조성）을 주로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소관 부처에서 진흥법제의 입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5）진흥 • 지원 • 육성 • 촉진－조성 대상별 진흥법제 분석

## ［진흥•지원•육성•촉진•조성 대상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구 분 | 법 률 |
| :---: | :---: |
| 특정산업－ <br> 특정기업． <br> R\＆D－특정 <br> 지구（단지）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등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부품•소재전 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가과 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국가초고 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등 |
| 특정계층－ <br> 특정단체• <br> 특정지역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다문화가족지원법」，「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 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노사관계 발전 지 원에 관한 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청년 고용촉진 특별법，등 |


| 구 분 | 법 률 |
| :---: | :---: |
|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문화원진흥 법」，「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 맹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한 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 률」등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중•저준위 방사성폐 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등 |
| 특정제도• <br> 특정행사． <br> 특정사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녹 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제경기대회 지 원법」，「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다양한 입법 목적을 가진 진흥법제가 존재하지만，진흥 등의 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특정산업•특정기업•R\＆D•특정지구（단지） 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특정계층•특정단체•특정지역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특정제도•행사의 진흥 등을 목적으 로 하는 법제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진흥법제의 대상은 진흥법

제가＂특정 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 에 종사하는 자들에＂23）대한 이익을 위해 입안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 점에서 보면，이러한 산업，기업，계층，단체，지역，제도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진흥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이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6）진흥 • 지원 • 육성 • 촉진 • 조성 수단별 진흥법제 분석
［진흥•지원•육성•촉진•조성 수단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구 분 | 법 률 |
| :---: | :---: |
| 규제에 관한 <br> 사항을 담고 <br> 있는 진흥법제 | 「영재교육진흥법」，「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공간산업진 흥법」，「조경진흥법」，「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항공운송사업진흥법」，「식품산업진흥법」，「외식산 업진흥법」，「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등 |
| 급부에 관한 사항만을 담고 있는 진흥법제 | 「과학교육진흥법」，「대학도서관진흥법」，「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인성교육진흥법」，「학교도서관진흥법」，「학교체 육진흥법」，「학술진흥법」，「김치산업진흥법」등 |

진흥법제이지만，규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 고 있다．규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진흥법제와 그렇지 않은 법 제를 구분하면 위와 같다．규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진흥법제의 경우는 진흥법제에 규제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형태이다．진흥법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 형태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진흥법제에 규정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23）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로는 대법원 1987．12．8．선고 86 누 824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6．6．14．선고 95 누 14428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7．08．26．선고 96누17769 판결（부가가치세부 과처분취소）등이 있음．이하 개별 각주는 생략함．

다만 본질적으로 규제를 목적으로 하면서 진흥법제의 제명을 사용하 는 것은 제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편 「원자력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처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과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을 분리하여 입법하는 경우도 있다．안전과 진흥이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에 규 정할 경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분 리하여 입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3．진흥법제의 특징

## （1）진흥법제의 유형 및 수단의 다양화

최근 입법 경향을 보면，규제법제보다는 진흥법제가 급격히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국가 경제 발전 및 복지 실현이 주요한 국가 정책 목적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진흥법 제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진흥법제의 증가에 따라 진흥법 제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으며，그 속에 담긴 구체적인 진흥의 수단 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 （2）재정수반을 필수요소로 한다．

진흥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진흥법제에서 재정 지원을 필 수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기본적으로는 경비 보조，금융 지원， 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담고 있어 재정 수반을 전제로 하게 된다．따라서 진흥법제에서의 재정 지원 근거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법」 등 재정법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집행되게 된다．

## (3) 진흥 및 지원의 목적, 대상,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입법 구조를 취한다.

진흥법제는 기본적으로 진흥 및 지원의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게 규 정되어 있다. 그 대상을 선정하는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다양한 방식에 따라 규율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흥법제에서는 진흥 등의 목적, 대상,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입법 구조를 취하고 있다.

## 제 3 장 진흥법제의 입법 체계 및 모델 분석

## 제 1 절 의 의

진흥법제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진흥, 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입법을 통하여 새롭게 등장하거나, 또는 관련 법 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 로써 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진흥법제가 정부 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책의 추진 근거 및 정 책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흥법 제는 정책추진의 타당성과 정책목적의 명확성,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의 용이성, 정책추진체계의 확립을 통한 정책추진의 효율성 등 다양한 이유로 활발하게 제정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현행 진흥법제는 외형적으로 그 입법의 수가 증대하고 있고, 정부의 입법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개별 입법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과 정리가 필요하며, 실제로 정책추진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장애와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측면 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진흥법제는 지극히 정책적 성향 이 강하게 작용하는 법제로서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과 현실 상황의 고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법제와 비교해볼 때, 법률 자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법리적 쟁점에 관한 검토 뿐만 아니라, 법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 정책적 쟁점 사항의 검토 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진흥법제의 입법체계를 분석하 고, 바람직한 입법 모텔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 제 2 절 진흥법제의 입법 체계 및 모델 분석

현행 진흥법제는 개별 진흥법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 총칙 $\rightarrow$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rightarrow$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rightarrow$ 개발 및 사업 $\rightarrow$ (보칙 $\rightarrow$ 벌칙 $)$ 의 형태이다. 기 본법, 특별법 등 다른 입법 형식에 비해 진흥법제의 경우 지원•육성 의 대상, 수단, 방법 등이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중심 으로 입법 체계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진흥법제의 입법 체계]

| 구 성 | 주요 내용 |
| :---: | :---: |
| 제 1 장 총 칙 | - 목 적 <br> - 정 의 <br>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br>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 제 2 장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체계) | - 기본계획 <br> - 시행계획 <br> - 전담 조직의 설립•운영 |
| 제 3 장 지원 - 육성 | - 지원대상의 선정(지정 - 인증 제도 등) <br> -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보조금 지급, 금융•세 제 지원, 국유재산 특례, 기금의 설치 등) <br> - 기타 진흥 제도(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교 육 - 홍보 등) <br> - 그 외 진흥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 제 4 장 개발 및 사업 | - 단지 조성 <br> - 개발 계획 수립 |


| 구 성 | 주요 내용 |
| :--- | :--- |
|  | - 수수료 <br> - 보고•검사 <br> 제 5 장 보 칙 <br>  <br>  <br>  <br> - 문 <br> - 벌칙, 과태료 등 |

## 1. 정책추진 체계에 관한 규정

일반적으로 진흥법제에 있어서 추진체계라 함은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등 추진계획의 수립, 심의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 조직, 추진계획 의 수립절차 및 주체 등에 관한 쟁점으로 압축된다. 특히, 추진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논의가 최근 새로운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진흥법제를 필요로 하는 정 책들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하향식 추진체계가 일반적인 입법 형태이기는 하지만, 최근 진흥법제 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추 진체계, 이른바 상향식(Bottom-up 방식)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향식 추진체계는 진흥법제의 목적이 일시적인 진흥과 지원이 아니라, 진흥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대상계층 또는 대상지역이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장점이 있다.
（1）입법례 유형24）

## 1）하향식 정책 추진 체계

하향식 정책추진 체계의 경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이러한 상위 계획의 지침 또는 내용에 맞추어 시•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이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형태이다．그 과정에서 계 획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기초조사，또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국가 사무 등 중앙 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 필 요성이 크고，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의 일관성，통일성을 담보할 필 요성이 높은 영역에 적합한 유형이다．
［하향식 정책추진체계 입법례］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농어업인 <br> 삶의 질 <br>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br> 관한 <br> 특별법 | 제 5 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 획의 수립）（1）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br> 1．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 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br> 2．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

24）입법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향식 정책 추진 체계 및 하향식 정책 추진 체계 에 대해서는 이준호 외（a），「지역경제활성화지원법률 제정 관련 국내외 사례연구」， 행정자치부 연구용역보고서，한국법제연구원，2014，pp．62～66；이준호 외（b），「지역특 성에 맞는 산업발전 기반 조성 법제화 방안 연구」，전남지역사업평가단•한국법제 연구원，2016，pp．132～139에서 자세하게 먼저 소개되었다．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 는 기본 개념，특성，입법례에 대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참고하였으 며，입법례로 제시하고 있는 법률 및 해당 규정을 제외하고，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기를 별도로 명기하였다．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 선에 관한 사항 <br>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br>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br>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br> 6. 제 31 조제 1 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br>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br>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br>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br>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br>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 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br> (2)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 10 조에 따른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 제 6 조(시행계획의 수립)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 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 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 행하여야 한다. <br>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 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 7 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1) 광역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따라 5 년마다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 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br> (2)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 에 따라 5 년마다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시•군•구계획＂이라 한 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br> （3）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 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 련 기관，민간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 10 조의 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 접경지역 <br> 지원 <br> 특별법 | 제 $\mathbf{5}$ 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1）행정자치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 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1．「국토기본법」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br> 2．「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br>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16 조에 따른 보호구 역등 관리기본계획 <br> 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br> （2）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r> 1．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br> 2．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br> 3．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br> 4．자연생태 및 산림자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br> 5．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br> 6．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산지의 계획적•생태적 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br> 7．평화통일 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br> 8．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br> 9．통일 이후 남북공동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 의 육성에 관한 사항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10.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 개발 • 운영에 관한 사항 <br> 11.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br> 12.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br> 13.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 선에 관한 사항 <br> 14.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br> 15. 풍수해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br> 16.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 관리에 관한 사항 <br> 17.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br> 18.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와 확충에 관한 사항 <br> 19. 교육•의료•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 한 사항 <br> 20.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 충에 관한 사항 <br> 21. 그 밖에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 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 도록 하여야 한다. <br> (5)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 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도발전계획안"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br> (6)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공청회를 열 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br> （7）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발전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접경 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br> （8）행정자치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r> （9）행정자치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 립할 때 시•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 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br> （10）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11）제 2 조제 1 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 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는「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그 대상은 도로，상하수도 등 주 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
|  | 제 8 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1）시•도지사는 제 5 조제 8 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7조제 1 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br> （2）시•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 경 우 시장•군수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 8 조제 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 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br> （3）행정자치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 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 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r> (5)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6)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전통시장 <br> 및 상점가 <br> 육성을 <br> 위한 <br> 특별법 | 제 5 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1) 중소기 업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 3 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 여 3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br> 1.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br>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br>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br> 4.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br> 5. 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br> (2)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br> (3)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r> (4)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제 6 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br> (2)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br> (3)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 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r> <신설 2013.5.28.> <br>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 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
|  | 제 7 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구청장은 기 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br>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br>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 한 사항 <br>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br>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br>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br>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요청 한 사항 <br>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 역추진계획은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3)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군•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 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br> (4)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 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2) 상향식 정책추진체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추진체계는 하향식 정책추진체계를 기 본으로 하고 있고, 상향식 정책추진 체계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 지만, 최근에 입법되는 법률들 중 지역 개발, 지역 사업 등 지방자치 단체가 중심축이 되어 진행하는 정책분야에서 상향식 정책추진 체계 가 활용되고 있다.
[상향식 정책추진체계 입법례]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1)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 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br> 1.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 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br>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 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br> 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br>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 1 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br>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 기준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

제 8 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1)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 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시•도 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계 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 2 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변 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 토기본법」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토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립•변경 및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1．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 되지 아니할 것．다만，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br> 2．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 <br> 3．계획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할 것 <br> 4．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이 지속가능할 것 <br> 5．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을 것 <br> （5）제 3 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  | 제 10 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로 지역개 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 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수 있다． |
|  | 제 11 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1）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 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 12 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지정하 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br> 1．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지역 <br> 2．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하 였으나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 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亂開發）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2）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 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br> （3）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 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지정권자＂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광 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br> 2．지역개발사업이 고용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br> 3．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br> 4．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br> 5．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 할 것 <br>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br> （4）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br> （5）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 는 지역이「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유선장（遊船場），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br> （6）지정권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 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 개발사업변경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다만，제 10 호 및 제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11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br>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br>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br>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br>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br>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br> 6. 제 13 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br>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br>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br>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br>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제 33 조제 1 항 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 한다) <br> 11. 제 27 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에는 그 세부 목록 <br>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br>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br>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br> (7)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8)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지정된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 1．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 으려는 경우 <br> 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br> （9）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 19 조（시행자의 지정）（1）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 자（이하＂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 권자가 공모（公募）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에 따라 지정한다．다만，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br>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br>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br>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지방공 사＂라 한다） <br> 4．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28 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 는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설립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조합＂이라 한다） <br> 5．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 간투자자 <br> 6．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또는 제 5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2) 지정권자가 제 1 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br> 2.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br>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br> (3) 지정권자가 제 1 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 12 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br> (4) 지정권자가 제 1 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br> (5) 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도 시개발법」제 13 조부터 제 16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 제 4 조(지역발전 5 개년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 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 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한다. <br> (2)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r> 1.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br> 2.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br> 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br> 4.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에 관한 사항 <br>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br> 6.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br>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br>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 에 관한 사항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9．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br> 10．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br> 11．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br> （3）지역발전계획은「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 용계획，「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 야 한다． <br> （4）지역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수립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br> （5）지역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 5 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br> 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 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 년을 단위로 하는 보 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br>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 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이하＂부문별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br>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 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 22 조에 따른 지역 발전위원회（이하＂지역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br> （5）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제 7 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1) 시•도지사는 해당 시• 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 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 전계획(이하 "시 -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br> (2)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r> 1. 시-도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br>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br> 3.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 - 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br> 4.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에 관한 사항 <br> 5. 제 7 조의 2 에 따른 해당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br> 6.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br> 7.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br> 8. 그 밖에 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br> (3)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br> (4)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5)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 7 조의2(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1)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이하 "지역생활권 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br> (2)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발전계획과 시•도 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생활권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 제 8 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 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발전위원 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1)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야 한다. <br> (2) 제 1 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3) 지역발전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 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br> (4) 제 3 항에 따른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5) <삭 제> |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1)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 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관할 시장•군수"라 한다)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 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2) 행정자치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제 출한 종합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승인된 종합육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 시• 도지사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br> (3) 종합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br> 1. 지방소도읍 육성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br> 2. 농림•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br> 3. 도로,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br> 4. 주거환경, 도시공원, 교육과 문화의 진흥 등 주민 생활 환경의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br> 5. 지방소도읍 지역의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br> 6. 그 밖에 지방소도읍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  | 제 5 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1) 관할 시장•군수는 종 합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 출(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br> (2)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제출하거나 직접 작성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br> (3) 행정자치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 할 수 있다. |


| 법률명 | 정책추진 체계 규정 |
| :---: | :---: |
|  | 제 6 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br>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 <br> 여 수립하여야 한다. |

(4) 검 토

진흥법제의 정책추진 체계를 상향식, 하향식 체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특히 상향식 정책추진체계의 경우에는 추진주체와 수혜대상 의 동일화로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의 동기 부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존 지원 법률은 대부 분 정부주도의 특정 지역•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한계라고 할 수 있다.25) 따라서 상향 식 정책추진체계의 경우 지역경제주체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동일 주체에게 지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자생력•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다.2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계획고권)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진흥법제에서 상향식 정책추진 체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진흥법제의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서 상향식 추진체계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의 단체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식 추진체계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합리적인 모 델이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존 방식이 하향 식 추진체계라는 점 또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예산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향식 추진체계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5]등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진흥법제에서 시•도지 사를 주체로 하여 다양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법제가 많이 있는 바,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정계획의 수립의무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 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첩적인 법정계획의 수립부담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진흥법제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추진체계는 적절하지 않으며, 진흥법제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수단 등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정책과 법제에 최적 화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상향식(Bottom-up 방식) 정책 추진 입법 모델(안)

제 $\mathbf{0 0}$ 조(기본지침) (1) OOO 장관은 OOO 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 (생 략)
(3) 제 1 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지침은 작성된 연도의(또는 매년) 10 월 31 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 0 조(기본계획의 수립) (1) OOO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OOO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O년마다 수립하고, 이 법 제 00 조에 따른 00000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O조에 따른 OOO 위원 1 회에 제출한다.
1.「국가재정법」 제 7 조의 국가재정운용계획
2. ~
(2) OOO 장관은 제 0 조에 따른 시•도별 OO 추진계획(이하, "시•도별 추진 계획"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각 호 : (생 략)
(4) OOO장관은 제 1 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 1 항의 기본계획 수립절차,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0 조(시•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1) 제 0 조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OOO 을 육성•촉진하려는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관할 구역의 시도별 OO진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 및 성과와 함께 OOO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추진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 : (생 략)
(3) OOO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와 차년도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4) 제 1 항에 따른 시•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절차,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0 조(시•도별 추진계획의 협의 및 조정) (1) OOO장관은 제 0 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도지사가 제출한 제0조에 따른 시•도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제 0 조에 따른 기본지침에 상충되거나 시•도의 계 획 간에 중복 또는 서로 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게 추진계획의 협의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000 위원회는 해 당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OOO장관 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출처 : 이준호 외(b), 앞의 보고서, pp.136~137

## 2.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규정

진흥법제에서는 진흥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에 앞서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을 선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정법상 선정，지정，인정，인증，확인 등의 제도가 주로 활용하고 있 다．이러한 제도들은 현행법상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이나，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일관된 원칙을 찾기는 어렵 다．27）현행 지정 제도를 예를 들면（1）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 정，（2）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3）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4）규제 대상선정을 위한 지정，（5）공용제한으로서의 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여러 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규정되 어있는 경우도 있다．${ }^{28)}$

## ［지정제도의 유형별 개관］

| 구 분 | 주요 입법례 |
| :---: | :---: |
| 허가－인가－ 특허 | －담 배사업법 제 16 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영업허가） <br>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공법상 계약， 지정해지 조항의 삭제에 따라 영업허가와 유사하게 운용）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의 지정（공적 인증， 인가） <br> 관세법 제327조의2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의 지정（공적 인증，인가） |
|  | ○ 원자력안전법 제 35 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자의 지정 （특허） <br>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민간투자사 업 시행자의 지정（공기업 특허） |
| 행정업무 부여 | －공직선거법 제 161 조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지정（한정적인 공 적 임무의 부여，인적 권리능력 부여라는 의미에서의 지정） |

27）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2012，p． 160
28）현행법상 지정제도의 유형구분에 대해서는 오준근，「지정」제도의 입법구조와 분석， 법제 2002．6，pp．14～31；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pp．160～165에 자세하게 소개 되어 있으며，해당 지정 제도의 유형은 위 자료에서 발췌•인용한 것이다．

| 구 분 | 주요 입법례 |
| :---: | :---: |
| (위임 • 위탁) | 도로교통법 제 104 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행 정청의 의제) <br> 계량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행정 청의 의제) <br> 보훈기금법 제4조의 2 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행정 업무의 대행, 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허용 하는 의미에서의 지정) <br>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판매대 행업자의 지정(행정업무의 대행) <br> - 지방공기업법 제33조에 따른 출납 및 현금의 보관 업무를 수 행하는 금융기관의 지정(업무의 위탁) <br> - 산업표준화법 제 13 조에 따른 광공업품 또는 서비스의 한국산 업표준에 대한 적합성 인증기관의 지정(업무의 이양) |
| 공용제한 | - 지하수법 제 12 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 문화재보호법 제 27 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
| 지원 • 육성 <br> 대상 선정 <br> (사실행위) |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 단체의 지정 <br> -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도서대상의 지정 |
| 규제대상 <br> 선정 <br> (하명)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

※ 출처 : 이상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관련 검토" 자료(미발간 자료), 2015. pp.8~9.

진흥법제에 있어서는 주로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해 지정 등 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서 도입되어 있는 소재•부품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제도도 지원• 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 서는 각 유형별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 (1) 제도 유형에 따른 구분

## 1) 지 정

현행 지정제도는 다양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 처럼 (1) 허가•인가•특허로서의 지정, (2) 행정업무 부여(업무위탁)로 서의 지정, (3) 지원•육성대상 선정으로서의 지정, (4) 규제대상 선정 으로서의 지정, (5) 공용제한으로서의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 }^{29)}$ 진흥법 제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지원•육성의 대상 선정 개념으로서 지정제 도를 활용하고 있다. 육성•지원 대상 선정으로서의 지정은 대부분 사실행위로 이루어진다.

## [지정제도를 활용하는 입법례]

| 번 호 | 법률명 | 지정제도 |
| :---: | :---: | :---: |
| 1 | 제 6 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1) 국가 <br> 는 용재교육을 신흥법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br>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 <br> 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 <br> 할 수 있다. <br> (2)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 기준 <br>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br> 정한다. |  |
| 2 | 건축서비스산업 <br> 진흥법 |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1) <br>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 <br> 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 <br> 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

29) 현행법상 지정제도의 유형구분에 대해서는 오준근, 앞의 글, pp.14~31; 법제처, 앞 의 책, pp. 160~165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해당 지정 제도의 유형은 위 자료 에서 발췌•인용한 것이다.

| 번 호 | 법률명 | 지정제도 |
| :---: | :---: | :---: |
|  |  |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 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br> (2)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br>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진흥시설 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4)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8 조에 따른 벤 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br> (5)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 17 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 은 경우 <br>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br> 3.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br> 4. 제 16 조제 3 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3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 18 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1) 국 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 |


| 번 호 | 법률명 | 지정제도 |
| :---: | :---: | :---: |
|  |  | 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br> (2)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br>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 항의 신청에 따라 진 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 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4) 제 3 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 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br> (5)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  |  | 제 19 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 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 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 18 조제 3 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 4 | 조경진흥법 | 제 7 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 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 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br> (2)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 |


| 번 호 | 법률명 | 지정제도 |
| :---: | :---: | :---: |
|  |  |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br> （3）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 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이 경우 해 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 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4）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 중「기술사 법」 제5조의7 및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제 21 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 경사업을 하는 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8 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br> （5）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 8 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1）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 （이하＂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 할 수 있다． <br> （2）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되거 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 설을 지원할 수 있다． <br> （3）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br> （4）진흥단지의 지정，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 9 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국토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번 호 | 법률명 | 지정제도 |
| :---: | :---: | :---: |
|  |  |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제 1 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br>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br> 2．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 지 못하게 된 경우 <br> 3．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 2 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br> 4．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 7 조제 3 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기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외식 산업진흥법」 등 |  |

## 2）인 증

인증 제도는（1）제품과 서비스 등이 특정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정부가 정한 인증기관이 보증하는 것，（2）제품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3）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 립 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된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것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30)}$ 이러한 인증은 실정법상 용어로서 학문상으로는 특 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1)}$ 에 해당한다．진흥법제에는 이러한 인증제도를 정부지원 대상 선정의 요건으로 활용하고 있다．

30）이상윤，＂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관련 검토＂자료（미발간 자료），2015．pp．4～5．
31）준법률행위적 행적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남철，앞의 책，p．169．

##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입법례 ${ }^{32)}$ ]

| 번 호 | 법률명 | 지정제도 |
| :---: | :---: | :---: |
| 1 | $\begin{aligned} & \text { 녹색건축물 } \\ & \text { 조성 지원법 } \end{aligned}$ | 제 16 조(녹색건축의 인증)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 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br>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 <br> (3)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 2 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br> (4) 제 1 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 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br>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br>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br> 3. 인증유효기간 <br> 4. 수수료 <br>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br>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br>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br>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건축법」 제 22 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

32) 해당 입법례는 진흥법제 중 '인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써 엄격하게 말하면 지원대상의 선정으로 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유형만을 도출한 것은 아 님을 밝힌다.

| 번 호 | 법률명 | 지정제도 |
| :---: | :---: | :---: |
|  |  |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건축법」 제 38 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
|  |  | 제 17 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 (1)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 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 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br>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건축물 에 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 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br>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 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 하여야 한다. <br> (4) 제 3 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 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br> (5) 제 1 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 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


| 번 호 | 법률명 | 지정제도 |
| :---: | :---: | :---: |
|  |  | 2．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br> 3．인증유효기간 <br> 4．수수료 <br> 5．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br> 6．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br> 7．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br> 8．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 무범위 <br>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 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 시하고，「건축법」 제 22 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 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 축법」제 38 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 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
| 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 17 조（환경표지의 인증）（1）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자재 및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 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br> （2）제 1 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br> （3）제 1 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 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며，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 제 18 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1）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


| 번 호 | 법률명 | 지정제도 |
| :---: | :---: | :---: |
|  |  |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 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 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br> (2)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br>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 직을 갖출 것 <br> 2. 제 21 조에 따른 심사원을 2 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br> (3)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br> (4)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 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br> (5)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br> (6) 삭제 <br> (7)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 19 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또는 제 8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br>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 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번 호 | 법률명 | 지정제도 |
| :---: | :---: | :---: |
|  |  | 3. 제 18 조제 2 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 하게 된 경우 <br> 4. 삭제 <br> 5. 제 20 조제 3 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 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br> 6. 제 23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 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br> 7. 제 28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 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br>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 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
|  |  | 제 20 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 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 를 운영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기 준•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 3 | 식품산업진흥법 |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 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 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 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 번 호 | 법률명 | 지정제도 |
| :---: | :---: | :---: |
|  |  | (3) 제 1 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 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4) 제 2 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 22 조의 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br>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 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 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 36 조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 제 12 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 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br> (3) 제 1 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 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4) 제 2 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4 | 무형문화재 <br>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1) 문화재 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br> (2)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 |


| 번 호 | 법률명 | 지정제도 |
| :---: | :---: | :---: |
|  |  | 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필 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br> （3）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br> （4）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문화 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5）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 년으로 하되，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r> （6）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표시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
|  |  | 제 42 조（인증의 취소）（1）문화재청장은 인증과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제 1 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br> 2．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 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br> 3．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 반한 경우 <br> （2）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기타 | 「지능형전력 <br> 업구조로의 <br> 관한 법률」， <br> 금산업 진흥 |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 산 촉진에 관한 법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약산업 육성 및 |


| 번 호 | 법률명 | 지정제도 |
| :---: | :---: | :---: |
|  | 지원에 관한 특별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산업융합 촉진법」， |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사회적기업 육성법」， |  |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 등 |  |

## 3）확 인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행 정청이 공권적으로 그 存否 또는 正否를 판단（인정•확인•선언）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확인이라고 하는데，실정법상으로는 재결，결정，査定，인정，검정，지정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33)}$ 확인에 는 조직법상 확인（당선자 결정，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등），급 부행정상 확인（도로구역의 결정，교과서의 검정 등），규제행정상 확인 （용도지역의 지정，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등），재정법상 확인（소득 금액의 결정 등），군정법상 확인（징병검사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 등），쟁송법상 확인（행정심판의 재결）등으로 구분되는데，${ }^{34)}$ 진흥법제 에서는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으로서 확인제도를 실정법상 활용하고 있기도 한다．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입법례］

| 번 호 | 법률명 | 확인 제도 |
| :---: | :---: | :---: |
|  |  |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1） <br>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 <br> 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 <br> 1 |
| 벤처기업육성에 |  |  |
| 관한 |  |  |
| 특별조치벙 $ᄇ$ 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  |  |
| 나 단체（이하＂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  |  |

33）김남철，앞의 책，p． 169
34）이상윤，앞의 자료，p． 3

| 번 호 | 법률명 | 확인 제도 |
| :---: | :---: | :---: |
|  |  |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br> (2)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확 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br> (3)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영업비밀 <br>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4)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
|  |  | 제 25 조의 2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1) 벤처기업확 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25 조제 2 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 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br> 2. 제 2 조의 2 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게 된 경우 <br>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번 호 | 법률명 | 확인 제도 |
| :---: | :---: | :---: |
|  |  | 4．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 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br> （2）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벤 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 |
| 2 | 소재－부품전문 <br> 기업 등의 <br> 육성에 관한 <br> 특별조치법 | 제 5 조의 2 （소재－부품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br> 등）（1）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 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소재•부품전문기 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br>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br> （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 업의 확인 절차，확인을 위한 조사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 5 조의 3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 <br> （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5 조의 2 의 확인서를 발급하 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된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 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 를 발급받은 경우 <br> 2．제 2 조제 2 호의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요건을 |


| 번 호 | 법률명 | 확인 제도 |
| :--- | :---: | :---: |
|  |  |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br> 3. 부도, 폐업 똔 휸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br>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br> (2)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br>  |
|  |  |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게 이를 알려 소명 <br> 기회를 주어야 한다. <br> (3) 제 1 항에 따른 소재 - 부품전문기업 확인의 취 <br> 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 검 토

이처럼 진흥법제에서는 지원, 육성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지 정, 인증, 확인 등의 제도를 주로 실정법상 활용하고 있다. 개별 제도 별로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흥법제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해당 제도의 목적(도입 취지), 요건, 해당 대상의 권리• 의무 여부, 선정 절차 등에 따라 구분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타당성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

지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행위는 법률 관계(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로서,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가 생기기만 하면 족하고,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가 표현될 필요가 없다.35) 따라서 우수 기관, 단체를 선정하여 정부의 직 접적 지원, 공적 조달에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지원제도와 연계 될 경우에는 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신설하여 연계하는 방 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진흥법제에서는 일부 정부정책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관련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35) 이상윤, 앞의 자료, p.10; 사실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남철, 앞의 책, pp 316~321 참조 바람.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법제에서 지원대상의 확정을 위한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인증 등 다 른 법제도에서 활용되는 인증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종의 규제인프라로서 작용하는 인증제도의 경우는 진흥•지원과는 다른 성격의 인증이며, 기업•상품 등에 대한 인증은 지원 대상을 확 정하기 위하여 인증제도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인증이 필요하지만, 현실 에서는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규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실 제로 규제로서 작용하는 다른 법제도에서의 인증과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지원을 받는 대상의 측면에서는 인증기준이 실제 로 지원을 받기 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진흥법제 의 시행 이후 장기간 제도가 정착을 하게 된다면, 제도운영에 의한 규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해당되는 진흥법제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취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지원 을 받기 위한 인증기준을 만족한 경우 인증유효기간 내에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확인함으로써 해당 기업이나 대상의 부담을 완화시 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인증 이후 지원대상이 인증의 혜 택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하여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의 적인 기준 위반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의 과정이 수반되어 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인증과 유사한 제도이지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확인제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할 수 있 는데 "확인제도"는 외형적으로는 인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순간 지원대상이 되며, 법상의 확인제도는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상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 에, 실제에 있어서는 인증제도보다 확인제도가 기업이나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부담이 완화된 형태의 제도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 }^{36)}$ 또한,

위의 확인제도를 통하여 인증제도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에 해당 요건이나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입법적 작업은 정책수행에 있어서 부담될 수도 있으며, 예측 가능성의 확보에는 바람직하지만, 정책의 탄력적 운영에는 장애가 될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 법규명령 등의 법체계적 - 입법기술적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안은 해당 진흥법제의 특성과 해당 사항 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2) 선정 방법에 따른 구분

일반적으로 진흥법제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는 해당 법률 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게 되는 형태 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절차적 요건만 제시하고, 이러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이 요청되는 입법례가 있는데, 이러한 입법 형태는 법적 요건 보다는 일정한 기준하에서 절차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함 으로써 해당 법률의 지원대상이 되는 규정형태를 의미한다.37)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강조되는 법률들의 특징은 다른 법률의 특정규정에 대 한 특례를 규정하는 특례법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36) 이에 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인증"과 "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즉, ""인증’제도는 지원을 위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게 되어, 인증을 상 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인증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규제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중략) 유사입법례로서「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벤처기업의 요건을 규정한 후에, 이에 대한 인증 을 위하여 일반적인 '인증' 대신에 '확인'이라는 표현을 법규정에서 사용하고 있 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준호 외(c), 새로운 CSR 전략 모색을 위한 법제화 연 구,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법제연구원, 2013.4. p.243).
37)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이준호 외(b), pp.125~127에서도 밝히고 있으며, 이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견해이다.

## ［절차적 요건의 충족이 요청되는 입법례］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1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시행자의 지정）（1）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공모（公募）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다．다만，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사업 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 정할 수 있다． <br>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br>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br>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 하＂지방공사＂라 한다） <br> 4．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공유수 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28 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 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설립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조합＂이라 한다） <br> 5．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br> 6．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또는 제 5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 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br> （2）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1．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br> 2．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br> 3．그 밖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br> (3) 지정권자가 제 1 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 12 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 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br> (4) 지정권자가 제 1 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br> (5) 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 하여는「도시개발법」 제 13 조부터 제 16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제 22 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br>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br>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br>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br>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br> 5.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br>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br>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 제 23 조(실시계획의 승인) (1) 지정권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 42 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로서 소관 중 |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  |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 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하 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br> (2)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 한다. <br> (3)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 및 시장(지정권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 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내용을 14 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
| 2 | 중소기업 <br>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 8 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1) 사업전환을 하려 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을 수 있다. <br> 1. 사업전환의 필요성 <br>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br>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br>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br>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br>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br> 7.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  | 는 사항 <br> （2）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 26 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1）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br> 1．지방자치단체 <br>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br>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br> 4．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br> 5．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 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 2 조제 7 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 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
| 기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기 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

한편，절차적 요건의 충족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법률들은 지원 대상 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적 요건이 요청되는 입법례 가 있고，또는 정부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서 지정받는 입법례가 있는데，모두 법률에서 지원대상의 요건이 완결되 는 것이 아니라，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사항의 충족을 법적 지원 의 요건으로 보는 입법형식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입법례는 유사한

형태로 법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법리적인 문제는 크게 발생하기 않고 있지만, 진흥법제가 갖고 있는 시혜적•급부적 요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등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고 절차적 정당성을 추 가•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38)}$

절차적 정당성 보완의 예로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지방의회 의무적 경유 및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 조정권한 등의 활용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1 | 도시재생 <br>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 15 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 전략계획수립권자 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 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 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br> (2)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 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의견을 제 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 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  | 제 18 조(주민 제안) (1)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br> 이하 같다)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 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 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 자에게 알려야 한다. <br> (3) 제 1 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 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 |

38)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이준호 외(b), pp.125~127에서도 밝히고 있으며, 이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견해이다.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  | 안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 담시킬 수 있다. <br> (4)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 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제 8 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 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 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 역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시•도의 계획을 요구하는 법률에서는 주민의견, 지방의 회의 의견청취가 대부분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다른 지역과의 정책 충돌 및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계획조정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보다 정치하게 법제화시 킴으로써 진흥법제가 가지고 있는 논란의 소지를 정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보다 선진적인 진흥법제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 3. 지원수단에 관한 규정

현행법상 지원수단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데, 일반적으로 경비 지원 및 보조(보조금 지급), 세제감면, 특별회계 설치, 기금설치, 금융지원, 국유재산특례, 출연금지급, 부담금 감면, 투

자조합 설치 및 투자특례, 행정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수단들이 활용 되고 있다.

## (1) 경비 지원 및 보조(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

## 1) 입법례 유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법률에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 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법률에서 법인 또는 단 체 등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서 정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 등으 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 }^{39)}$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입법례 ${ }^{40)}$ ]

| 번 호 | 법률명 | 보조금 지원 |
| :---: | :---: | :---: |
|  |  | 제 7 조(경비 지원 및 보조) (1) 국가와 지방자치 <br> 단체는 과학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br> 과학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 1 | 과학교육진흥법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 <br> 학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 <br> 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 <br>  |
|  |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

39) 최성희,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 방식에 대한 검토",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http://www.lawmaking.go.kr/lmKnlg/mKnlgDat/5214?pageIndex=1 (방문일 2016. 6. 2) pp.2~6
40) 이 외에도 진흥법제 내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입법례는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일부만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 번호 | 법률명 | 보조금 지원 |
| :---: | :---: | :---: |
| 2 | 영재교육진흥법 | 제 14 조（재정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 교육기관에 시설비，운영비，실험실습비，영재 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그 밖 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3 | 도서•벽지 교육진흥 법 | 제 5 조（도서•벽지수당）국가는 도서•벽지학교 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 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 4 | 인성교육진흥 법 | 제 15 조（인성교육 예산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인성교육 지원，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 5 | 학교체육진흥 법 | 제 15 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6 | 국민체육진흥 법 | 제 18 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1）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 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 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br>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대한장 애인체육회，한국도핑방지위원회，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 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 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br> （3）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비를 보조할 수 있다． |
| 7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제 4 조（장려금의 지급）정부는 항공사업자로서 외화의 획득 또는 절약에 현저한 공이 있는 |


| 번 호 | 법률명 | 보조금 지원 |
| :---: | :---: | :---: |
| 8 |  |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 <br> 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수목원•정원의 <br> 정 및 진흥에 <br> 관한 법률 |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br> 체는 제7조제 1 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 <br> 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 <br> 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br> 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 번 호 | 법률명 | 보조금 지원 |
| :--- | :--- | :---: |
|  |  |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br>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 <br> 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2）검 토

보조금41）과 관련하여서는 막연히＂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보다는 운영비 및 사업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법령에 세밀 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개별 법령에서＂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 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등의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지방보조금의 경우「지방재정법」 제 32 조의 2 제 2 항 42 ）의 개정（2015． 1. 1．시행）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 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2014．9．다음과 같은 기준을 수립하여 부처에 통보하였다．43）

| 구 분 | 규정 예시 | 조치사항 |
| :---: | :---: | :---: |
| 운영비 지원 규정이 <br> 명확하여 보조금을 | （비용＇ | 설치 • 운영에 필요한 | | 현행 규정을 근거로 |
| :--- |
| 운영비 지원 가능 |

41）보조금이란＂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 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 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 부하는 것만 해당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그 밖에 상당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42）지방재정법 제 32 조의 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2）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 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43）최성희，앞의 자료，p． 5

| 구 분 | 규정 예시 | 조치사항 |
| :---: | :---: | :---: |
|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 운영에 필요한 경비' <br>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 |  |
| 운영비 지원 근거로 <br>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그 활동(시설) 등에 필요 한 경비 지원' <br> '~지원•육성에 필요한 비 용 지원, <br>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br> '~단체에 필요한 경비(재정) 지원’ <br>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br> ‘~필요한 자금의 일부 지원 <br> '~의 관리에 드는 경비 지 원' 등 | 조속히 입법을 추진 (법령에 운영비 지원 근거 명시)하되, 우 선 소관부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지원여 부 판단 |
|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또는 위탁비용 지원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br> '~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를 지원' <br> '~시설의 설치•관리 및 개 선비용 지원' 등 | 운영비로 보조금 지 원이 불가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보 조사업비 또는 위탁 경비로 재설정 또는 법령에 근거 마련 필요 |

※ 출처 : 최성희,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 방식에 대한 검토",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http://www.lawmaking.go.kr/lmKnlg/lmKnlgDat/5214?pageIndex=1
(방문일 2016. 6. 2) p. 5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 17 조제 1 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개인이나 일반 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보조금 지급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법규사항이 아니므로 침해행정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율 은 필요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여기서＇규정＇이란 보조금 지급 의 포괄적인 근거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44）또한，「지방재정법」 제 32 조의2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운영비로 지 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바，＇법령’이란 통상 법률，대통령령，총리 령 또는 부령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법률로 제한 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45）따라서 법률에서 지방보조금 지급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가 있다면，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보조금 지급 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행명령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규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6)}$

현행 국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규율 체계는 개별법에 이에 대 한 근거를 두고，그 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보조금 예산의 편 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보조금과 관련 하여서는 이 법이 일반법의 위치에 있다．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개별법에 마련되어 있더라도 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보조사업의수행，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등에 관해 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 3）＇보조금 지원＇에 관한 입법 모델（안）${ }^{47)}$

제 6 조（보조금의 지원）（1） OOO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OOO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

44）최성희，앞의 자료，p． 8
45）최성희，앞의 자료，p． 8
46）최성희，앞의 자료，p． 8
47）입법 모델（안）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관련 입법례 규정을 참고로 하여 제안하였다．

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 으로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2）세제 지원에 관한 규정

1）입법례 유형
［세제지원에 관한 입법례48）］

| 번 호 | 법률명 | 세제 지원 |
| :---: | :---: | :---: |
| 1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 32 조（조세의 감면）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 지사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 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 2 | 김치산업진흥법 | 제 25 조（조세의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 를 감면할 수 있다． |
| 3 | 식품산업진흥법 | 제 31 조（조세의 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

48）이 외에도 진흥법제 내에서 세제 지원에 관한 입법례는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 다．그 중 일부만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 번 호 | 법률명 | 세제 지원 |
| :---: | :---: | :---: |
|  |  |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조 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 4 | 국민체육진흥법 | 제 41 조（조세 감면 등）（1）정부는 체육회와 진흥 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br> （2）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 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br> （3）체육회，장애인체육회，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 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 5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22 조（세제 지원 등）（1）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 례제한법」，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확대 및 육성을 위하여 금융지 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6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 례제한법」，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 번 호 | 법률명 | 세제 지원 |
| :---: | :---: | :---: |
| 7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 22 조（지방세의 감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 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 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 세를 감면할 수 있다． <br> 1．「문화예술진흥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문화시설 <br> 2．「의료법」제 3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br>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학원 <br> 4．「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대규 모점포 <br> 5．「상법」 제 169 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br> 6．그 밖에 조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시설 |

## 2）검 토

세제지원과 관련하여서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는「조 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 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인지세법」，「증 권거래세법」，「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임시수입 부가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 도록 하고 있어，49）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특례법에 명시된 법률에 해당 특례사항이 반영되어 있어야만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개별법에서는 기본적인 입법 형식이＂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OOO 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 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무문별한 조세특례 신설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아래 규정과 같이 조세특례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조세 감면에 관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조세 특례사항에 대하여 효과분석 및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조세특 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의 필요 성 등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조세특례 신설 관련 규정］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  |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1）기획재 <br> 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br>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 <br> 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br> 보하여야 한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  |
|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  |  |
| 인됭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조 |  |  |
| 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연도별 |  |  |
|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  |  |
|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  |  |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  |

[^6]|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 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 일까지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4)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 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 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 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 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 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 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 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 일 전까지 국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br> (5)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경제•사회 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 부하여야 한다. <br> (6) 기획재정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조세감면 에 관한 건의, 제 3 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 4 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 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  | （7）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 야 한다． <br> （8）제 1 항부터 제 7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조세 감면건의，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주요 조 세특례의 범위，조사•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 국회법 | 제 79 조의 3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 평가 자료의 제출）（1）의원 또는 위원회가「조 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 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연 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 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기대효과，예상되 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 하여 평가한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 를 생략할 수 있다． <br> （2）제 1 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

따라서 진흥법제에 있어 세제지원 등 조세특례를 두고자 할 경우에 는「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규정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및 제3조

에 규정된 법률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어야만，조세특례가 가능하게 된다．또한 신설시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 3）＇세제 지원＇에 관한 입법 모델（안）${ }^{50)}$

제 O 조（조세의 감면）또는（세제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OO 을 육성하 기 위하여 OO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3）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51）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 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설치하는 것이다．이 러한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하되，별표 1 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국가재정법」에서는 그 설치를 제 한하고 있다．52）

그리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가회계에 관한 사항은「국가회계법」에 서 규율하고 있다．「국가회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이 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50）입법 모델（안）은 관련 입법례 규정을 참고로 하여 제안하였다．
51）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 기 위하여 설치한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2항）．
52）국가재정법 제 4 조（회계구분）（3）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 되，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국가회 계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개별 법률 규정에 의 하게 된다．

한편，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53)}$

## 1）입법례 유형

특별회계에 관한 입법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과 국가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지방 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국가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은「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입법례 ${ }^{54) \text { ］}}$

| 번 호 | 법률명 | 특별회계 설치 |
| :---: | :---: | :---: |
| 1 | 건축서비스산업 <br> 진흥법 | 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1）시 • 도지사 <br> 또는 시장 $\cdot$ 군수 $\cdot$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

53）지방재정법 제 9 조（회계의 구분）（1）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로 구분한다．
（2）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 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 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다만，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 치－운용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다만，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 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5．28．＞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다만，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54）이 외에도 진흥법제 내에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입법례는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다．그 중 일부만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 번 호 | 법률명 | 특별회계 설치 |
| :---: | :---: | :---: |
|  |  | 한다．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 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건축진흥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br> （2）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br>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br> 2．정부의 보조금 <br> 3．「건축법」제 80 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 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비율의 금액 <br> 4．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br> 5．그 밖의 수입금 <br> （3）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br> 1．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보급에 필요한 비용 <br> 2．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br> 3．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 한 비용 <br> 4．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br> 5．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비용 <br> 6．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 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 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 24 조（특별회계의 설치 등）（1）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특 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br> （2）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


| 번 호 | 법률명 | 특별회계 설치 |
| :---: | :---: | :---: |
|  |  | 조성한다． <br>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br> 2．정부의 보조금 <br>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 3 항 및 제4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br> 4．「수도권정비계획법」 제 16 조에 따라 시•도 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br> 5．「지방세법」 제 112 조（「지방세법」 제 112 조제 1 항제 1 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 <br> 6．차입금 <br> 7．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br> 8．제31조제 3 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br> （3）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br> 1．기반시설의 설치，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br> 2．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br> 3．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br>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br> 5．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 안정 지원 <br>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br> （4）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 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번 호 | 법률명 | 특별회계 설치 |
| :---: | :---: | :---: |
|  |  | (5)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3 | 아시아문화중심 <br> 도시 조성에 <br> 관한 특별법 | 제 42 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 치)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 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한다. <br> (2) 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 운영한다. <br> (3)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br>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br>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br> 3.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br>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br>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 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br> 6. 제 43 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br> 7. 제 15 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회수금 및 융자 로 인한 수입금 <br> 8. 삭제 <br>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br> (4)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br> 1. 제 10 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br> 2.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 14 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br> 3. 제 15 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 조성,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 |


| 번 호 | 법률명 | 특별회계 설치 |
| :---: | :---: | :---: |
|  |  | 25 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br> 4. 제 26 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 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br> 5. 문화전당의 설립 - 운영, 문화원의 설립 • 운 영 등에 대한 지원 <br> 6.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 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br>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 우 당해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br> 8.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br>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 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br>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br> 제 $\mathbf{4 3}$ 조(차입금) (1)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br> (2)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 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br> (3)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  |  | 제 43 조(차입금) (1)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 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br> (2)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 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 번 호 | 법률명 | 특별회계 설치 |
| :---: | :---: | :---: |
| 4 |  | (3)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  |  | 제4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 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  |  | 제 45 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 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  |  | 제 46 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국가재정법」제 4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주한미군기지 <br> 이전에 따른 <br> 평택시 등의 <br> 지원 등에 관한 <br> 특별법 | 제 9 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1) 주 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 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 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 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br> (2)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 - 운용한다. <br> (3)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br>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 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br>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br>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 금으로부터의 예수금 <br> 4.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br> 5. 그 밖의 수입금 <br> (4)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br>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 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 |


| 번 호 | 법률명 | 특별회계 설치 |
| :---: | :---: | :---: |
|  |  | 에 필요한 경비 <br> 2. 제 3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br> 3.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br> 4.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br> 5.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 한 자금 <br> 6.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용과 그에 필요한 자금 <br> 7. 회계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자금 <br> 8.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복구 및 방 지대책에 필요한 자금 <br> 9.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br>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
|  |  | 제 10 조(차입금) (1)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 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br> (2)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br>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  |  | 제 11 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  |  | 제 12 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 번 호 | 법률명 | 특별회계 설치 |
| :--- | :--- | :--- |
|  |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회계의 세출예산중 당 <br> 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 <br> 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br>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2）검 토

「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는 엄격한 제한 을 받고 있으며，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개별법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별표 1 에 개정도 함께 진행되어 별 표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특별회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5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 법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정부기업예산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등기특별회계 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55）「국가재정법」 별표 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 3 항 관련）．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환경정책기본법」
－국방 •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진흥법제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 한 특별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에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건축서비스산업진 흥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속한다．

현행 실정법상 국가재정법 별표에 규정이 없는 법률에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입법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국가재정법」 별표 개 정을 통해 특별회계 근거 법률을 추가하거나 및 개별 법률상의 특별 회계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부담금 등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 라 준조세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의 통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 3）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입법 모델（안）${ }^{56)}$

（1）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입법 모델（안）

제 O 조 $(\mathrm{OOO}$ 특별회계의 설치 등）（1）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OOO 사업을 촉진하고， OOO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OOO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56）입법 모델（안）은 관련 입법례 규정을 참고로 하여 제안하였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
(3)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4.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특별회계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임대주택의 매입 - 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8.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OO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 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5)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국가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입법 모델(안)

제 O 조( OO 특별회계의 설치) (1) OOO 사업과 OOO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 고, 그 관리 •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OO 특별회계(이하 "특별회 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특별회계는 OOO 장관이 이를 관리 - 운용한다.
(3)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OO 수입 및 OO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 O 조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
5. 그 밖의 수입금
(4)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6. OO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7. 제 O 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제 O 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제O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5．제 O 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6．．．．
7．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8．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자금
9．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10．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제 O 조（차입금）（1）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2）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3）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 환하여야 한다．

제 11 조（잉여금의 처리）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2조（예비비）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13 조（세출예산의 이월）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 출하지 아니한 것은「국가재정법」 제 48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 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 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세입•세 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57）이러 한 기금은 국가가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고，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57）국회예산정책처，「국가재정법－이해와 실제」，2014．p． 32

운영하는 특정자금58）으로 진흥법제에 있어서 재정확보를 위해 이러한 ＇기금의 설치＇가 활용되고 있다．기금에는 사업성 기금，금융성 기금， 사회보험성 기금，계정성 기금 등이 있는데59），진흥법제의 경우 특정 분야의＇진흥＇의 목적이 강한 사업성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 1）입법례 유형

## ［기금 설치에 관한 입법례（00）］

| 번 호 | 법률명 | 기금의 설치 |
| :---: | :---: | :---: |
| 1 | 국민체육진흥 법 | 제 19 조（기금의 설치 등）（1）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체육인의 복지 향상，체육단체 육 성，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체육•문화 예술 전문인력 양성，취약분야 육성 및 스포츠 산업 진흥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 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br> （2）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br> （3）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 20 조（기금의 조성）（1）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 원으로 조성한다． <br> 1．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br>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 의 수입금 |

58）국회예산정책처，앞의 책，p． 32
59）국회예산정책처，앞의 책，p． 526
60）이 외에도 진흥법제 내에서 기금 설치에 관한 입법례는 존재하고 있다．그 중 일 부만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 번 호 | 법률명 | 기금의 설치 |
| :---: | :---: | :---: |
|  |  | 3．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br> 4．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br> 5．「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br> 6．제 22 조제 4 항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br> 7．제 29 조제 2 항에 따른 출연금 <br>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br> （2）정부는 제 1 항제 1 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 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br> （3）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 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
|  |  | 제 22 조（기금의 사용 등）（1）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br> 1．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 급 사업 <br> 2．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br> 3．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br> 4．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br> 5．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br> 6．제 14 조제 4 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 의 지원 <br> 7．제 17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br> 8．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 8 회 서울장애인 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br> 9．삭제 <br> 10．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한국도핑방 |


| 번 호 | 법률명 | 기금의 설치 |
| :---: | :---: | :---: |
|  |  | 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 의 운영•지원 <br>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br> 11 의2.「스포츠산업 진흥법」 제 2 조제 2 호에 따 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br>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br>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29 조제 2 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br>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 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기금의 지원 비 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 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br>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 업의 지원 <br>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br>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br>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br> 라.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


| 번 호 | 법률명 | 기금의 설치 |
| :---: | :---: | :---: |
|  |  | 바．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br> （3）제 19 조제 2 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이하＂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 용－관리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 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br> （4）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청소년 육 성，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나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 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다만，제 5 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 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br> 1．「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br> 2．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br> 3．경륜－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br> 4．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 치－관리－운영 <br> 5．「스포츠산업 진흥법」 제 16 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
| 2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32 조（뉴스통신진흥자금）（1）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자금＂이라 한 다）을 둔다． <br> （2）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br> 1．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잉여금 |


| 번 호 | 법률명 | 기금의 설치 |
| :---: | :---: | :---: |
|  |  | 2. 제3항에 따른 출연금 <br> 3.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br> 4. 자금운용 수익금 <br> 5. 그 밖의 수이ㅂㅡㅡㅁ <br> (3)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 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br> (4)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한다. <br> 1. 제 10 조제 2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 한 업무에 대한 지원 <br> 2. 제 25 조제 1 호•제 8 호 및 제 9 호의 사업 <br> 3. 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br> (5)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
| 3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신문• <br>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 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br> (2)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 성한다. <br> 1. 정부의 출연금 <br>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br>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 금품 <br>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br>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 번 호 | 법률명 | 기금의 설치 |
| :---: | :---: | :---: |
|  |  | 제 35 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1) 언론진흥기 <br> 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br> 1. 신문•인터넷신문 •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 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br> 2.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br> 3.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br> 4.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br>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br> 6.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 자에 대한 융자 <br> 7.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 서비스 및 잡지 지원 <br>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br> (2)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 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br> (3)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
|  |  | 제 36 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 - 운용) <br> (1) 언론진흥 <br> 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 - 운용한다. <br> (2)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 <br> 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 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br> (3) 언론진흥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및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 37 조(성과의 평가) <br>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br> 제 31 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 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 월 말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br>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성과 |


| 번 호 | 법률명 | 기금의 설치 |
| :---: | :---: | :---: |
|  |  | 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br>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br> (4)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23 조(기금의 설치 등) (1) 영화예술의 질적 향 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 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br> (2) 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 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 리하여야 한다. <br>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 24 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br> 1. 정부의 출연금 <br>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br> 3. 제 25 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 권에 대한 부과금 <br>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br>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  |  | 제 25 조(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br>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


| 번 호 | 법률명 | 기금의 설치 |
| :---: | :---: | :---: |
|  |  |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br>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br>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br>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 업 지원 <br>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br> 6의2.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br>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br>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br>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br>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br>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br>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br>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br>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br>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 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br> (2) 제 1 항제 12 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 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할 수 없다. |
|  |  | 제 25 조의 2 (부과금의 징수) (1)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 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 |


| 번 호 | 법률명 | 기금의 설치 |
| :---: | :---: | :---: |
|  |  | 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 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1. 직전 연도에 제 38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 분의 60 이상 상 영한 영화상영관 <br>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 ( 2 개 이상의 영 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 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 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br> (2)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br> (3) 제 2 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 회가 제 39 조제 1 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 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br> (4)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 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 |


| 번 호 | 법률명 | 기금의 설치 |
| :---: | :---: | :---: |
|  |  | 납된 금액의 100 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 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br> (5)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 2 항의 부과금 및 제 4 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br> (6) 부과금•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7)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제 2 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 분의 3 을 초과할 수 없다 |
|  |  | 제 25 조의 3 (성과의 평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 25 조제 1 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 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 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br>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 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 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 하여야 한다. <br>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 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br> (4)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 원자력진흥법 |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br> (1) 정부는 제 12 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 |


| 번 호 | 법률명 | 기금의 설치 |
| :---: | :---: | :---: |
|  |  | 하고，「원자력안전법」 제 1 조에서 정한 원자력 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 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br> （2）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 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br> （3）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 와 같으며，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원 자력안전법」 제 111 조의 4 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br> 1．제 13 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 14 조제 2 항에 따 른 가산금 <br> 2．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 익금 <br> 3．제4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 • 운용 주 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 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
|  |  | 제 18 조（기금의 관리•운용）（1）원자력연구개발계 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원자력안전규제계 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다 만，계정의 관리•운용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br> （2）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 19 조（기금의 사용）（1）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원자력안전규 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 |


| 번 호 | 법률명 | 기금의 설치 |
| :---: | :---: | :---: |
|  |  | 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br> 1．원자력연구개발사업 <br> 2．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 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br> 3．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br>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 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br> （2）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 2）검 토

기금을 관리하는 법체계는 기금에 관한 기본법은 「국가재정법」，기 금의 설치•운영의 근거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 고 있다．그 외 기금의 세입원인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부담금관리 기본법」，기금의 수입•지출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 관리 법」，기금의 회계와 결산은 「국가회계법」，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에 관한 사항은「공공자금관리기본법」의 규율을 받는다．${ }^{61)}$

기금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에 관해서는 반드시 법률 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 이외에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게 되어 있다．62）

61）김도승，＂환경설질환 구제와 기금 법리＂，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미발간 자료），2016．2．16，p． 2
62）국가재정법 제 5 조（기금의 설치）（1）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정부의 출 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설치 근거 법률6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정부기업예산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등기특별회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환경정책기본법」
－국방 •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고용보험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과학기술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연금법

[^7]- 국민체육진흥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인연금법
- 근로복지기본법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 한 법률
- 기술보증기금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재해보험 법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 문화예술진흥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보훈기금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무역보험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양곡관리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한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원자력 진흥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전기사업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주택도시기금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청소년기본법
- 축산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문화재보호기금법
- 석면피해구제법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국유재산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공탁법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려면 우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개별법 제•개정과 「국가재정법」 별표 2 를 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하며，입법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64）65）

한편「국가재정법」에서 기금제도의 운용 원칙，편성，관리，감독，처 벌 등에 관한 사항을 거의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개별 기금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관련된 규정은 불 필요하다．66）다만 기금 설치 규정에는 반드시 해당 기금을 설치하게 된 목적을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67)}$

## 3）＇기금 설치＇에 관한 입법 모델（안）${ }^{68)}$

제 O 조（ OO 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1） OOO 의 진흥을 위하여 OOO 재단 에 OO 진흥기금을 설치한다．

64）국가재정법 제 14 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1）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 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 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 에 자문하여야 한다．
1．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 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 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 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 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65）김도승，앞의 자료，p．9；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p． 299
66）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p． 299
67）김도승，앞의 자료，p． 9
68）입법 모델（안）은 관련 입법례 규정을 참고로 하여 제안하였다
(2) OO 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OO 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 O 조( OO 진흥기금의 용도 등) (1) OO 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 용된다.

1. OOO 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OOO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 ...
4. OO 진흥재단의 운영
5. OOO 사업자에 대한 융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OOO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3) OO 진흥재단은 OO 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 하여야 한다.

제 O 조( OO 진흥기금의 관리•운용) (1) OO 진흥기금은 OO 진흥재단이 관 리 - 운용한다.
(2) OO 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OO 진흥재단에 OO 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3) OO 진흥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및 OO 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O 조(성과의 평가) (1) OOO 장관은 제 O 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 용의 성과를 측정 •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O 월 말까지 OO 진흥재 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OOO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 • 평가하기 위하여 OO 진흥재 단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3) OOO 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OO 진흥재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규정

진흥법제에서는 지원수단의 하나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양 여하거나，사용료，대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기 위한 국유•공유재산 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 1）입법례 유형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입법례69）］

| 번 호 | 법률명 | 국유재산 특례 |
| :---: | :---: | :---: |
| 1 | 생활체육진흥법 | 제 11 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또 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 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br> （2）제 1 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 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는「국유재산법」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 12 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1）보건복지 부장관은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 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 중 산 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 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 또 는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공 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 |

69）이 외에도 진흥법제 내에서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입법례는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다．그 중 일부만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 번 호 | 법률명 | 국유재산 특례 |
| :---: | :---: | :---: |
|  |  | 권을 양여할 수 있다． <br> （2）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과제를 수행 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 구기기•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 3 | 말산업 육성법 | 제 24 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 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게 대부•사용•수익 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br> （2）제 1 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 따른다． |

## 2）검 토

진흥법제에서는 진흥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를 주기도 한다．기본적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 로 사용하거나，사용료，대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기 위해서는 엄격 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다만，개별 법률 규정으로 이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데，특례를 둘 경우에는 2011년에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

한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이 법은 무분별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유재산특례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70）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71)]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결핵예방법」제 24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 1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 11 조에 따른 사용료등 의 감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 16 조에 따른 사용료등 의 감면 및 제 17 조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20 조의 2 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1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공연법」제 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 1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과학기술기본법」제 3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 「광주과학기술원법」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교통안전공단법」제 2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70）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 4 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1）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 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2）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71）「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 1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 조의 2 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 14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5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 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울산과학기술원법」제 1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 17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 1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사용료등 의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16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r국민체육진흥법」 제 22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사 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 용료등의 감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사 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 「국회사무처법」제 1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 4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기상산업진흥법」 제 17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r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양여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 26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노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 사용료등 의 감면
- 「농촌진흥법，제3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 1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 24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 r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59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ᄌ$ 제 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 2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도로교통법」제 132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2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양여
- 「도시개발법，제6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 「도시철도법」제 10 조에 따른 양여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 1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독립기념관법」제 14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양여
- 「모자보건법」제 22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2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문화재보호법」제4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3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r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 2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r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 21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 1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 3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발명진흥법，제 1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 2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방위사업법」 제 4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법률구조법」 제 2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7 조의 4 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 12 조에 따른 양여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0 조에 따른 양여
- 「사립학교법」 제 3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3 조의 2 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에 따른 사용 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 조의 3 에 따른 사용료등 의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장기 사용허 가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 1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선박안전법」 제5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선원법」제 11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선원법」제 146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식품산업진흥법」 제 19 조의 4 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 2 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9 조의 2 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 1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3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 26 조에 따른 장 기 사용허가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8조에 따른 양여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22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아동복지법」 제6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법인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한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 2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암관리법」제 3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r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16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예금자보호법」 제 24 조의 2 에 따른 양여
- r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1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r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 17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 3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 20 조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 11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자연공원법」 제5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16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7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6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r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 1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 4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 17 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 「전시산업발전법」 제 26 조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 「전쟁기념사업회법」 제 1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1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4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 2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정부법무공단법」 제 21 조의 3 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 른 사용료등의 감면，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12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r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11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 17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 36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지방문화원진흥법，제 1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r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 18 조에 따른 양여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7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8 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 「청소년기본법」제5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청소년기본법」제5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초지법」제 1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r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 20 조의 2 에 따른 양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 17 조에 따른 사용 료등의 감면
- 「택지개발촉진법」 제 11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에 따른 사 용료등의 감면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장기 사용허가 등 및 양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11 조의 2 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 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r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제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하수도법」제6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에 따른 양여
- 「한국고전번역원법」제1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한국공항공사법」제 1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과학기술원법」제 11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한국국방연구원법」제 1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 17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 2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국제협력단법」제 17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 44 조에 따른 양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제 1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 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 1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 1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 16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 14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산업은행법」제44조에 따른 양여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 1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연구재단법」제 12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 16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제 10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철도공사법」제 14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 26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제 11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 13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항로표지법」제 32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항로표지법」제 39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항만공사법」제 27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해양환경관리법」제 105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 5 조의 3 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 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 아드대회 지원법」 제 6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 23 조에 따른 양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양여
－법률 제 10710 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른 양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 46 조의 2 에 따른 양여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사 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40 조의 3 및 제 40 조의 4 에 따른 사용 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 「군인복지기본법」제 11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 37 조에 따른 양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9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양여
－「방위사업법」제 32 조의 2 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r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8 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따라서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려면 우선 국유재산 특례 신설에 관 한 개별법 제•개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하는＇국유 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하며，입법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72）

72）「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 6 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1）중앙관서의 장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 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신설등＂이라 한다）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특례는＂「국유재산법」 제 32 조제 1 항，제 34 조제 1 항 또는 제 47 조제 1 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 료，대부료，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의 감면＂，＂「국유재산 법」 제 35 조제 1 항 또는 제 46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 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 니한 국유재산의 양여＂이며73），＂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 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도로법」，「하천법」，「소하천정비법」，「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어촌•어항법」 또는 「항만법」에 따라 국 유재산을 점용허가，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74)}$

한편，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개별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과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75），그 근거가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변경의 경우에는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2．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현물출자，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4．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4）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제 26 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 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73）「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 2 조
74）「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 3 조
75）「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 5 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되는 법률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76)}$ 그러나 국유재산특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정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특례 규정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개별법 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외에는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별법에서 국유재산특례조항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입법례 ${ }^{77)]}$

| 번 호 | 법률명 | 특례규정 및 존속기한 |
| :---: | :---: | :---: |
| 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 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 9 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1）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 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br> （2）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 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 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 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br> ［법률 제11226호（2012．1．26．）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76）「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 5 조의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1）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여 야 한다．
（2）제 1 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그 기간은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77）손 현 외，「국유재산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자산관리공사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2016，pp．42～43

| 번 호 | 법률명 | 특례규정 및 존속기한 |
| :---: | :---: | :---: |
|  |  | 제 28 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1）국가 <br>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br> （2）제 1 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 상•지원내용•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 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양여할 수 있다．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 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br> （4）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 여야 한다． <br>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 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br> （6）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 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이 경우「지방재정법」 제 11 조에도 불구하고 지방 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br> （7）대회관련시설로 건립된 선수촌•미디어촌 |


| 번 호 | 법률명 | 특례규정 및 존속기한 |
| :---: | :---: | :---: |
|  |  | 을 일반에게 제공할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 38 조의 2 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br>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ㅁ |
|  |  | 부 칙 <법률 제11226호, 2012.1.26.> <br> 제 2 조(유효기간) 제 5 조부터 제 39 조까지, 제 83 조 부터 제 85 조까지, 제 88 조, 제 90 조, 제 92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2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 대회 지원법 | 제 7 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1) 국가 <br>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 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 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 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 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 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 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  |  | 부 칙 <법률 제9789호, 2009.10.9.> <br> 제 2 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대회 개최기간이 연장되 는 경우에는 최종 개최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3）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입법 모델（안）${ }^{78)}$

제 O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1）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OOO 을 위한 OOO 단체（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 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 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 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OOO 기관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부 칙

제 O 조（유효기간）제 O 조는 OOOO 년 O 월 O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6）출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정부출연금이란＂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 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한다．79）「국 가재정법」제 12 조에 따르면＂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공공목 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 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개별 진흥법제에서는 지원수단의 하나로 출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8]
## 1) 입법례 유형

[출연금 지급에 관한 입법례80]

| 번 호 | 법률명 | 출연금 지급 |
| :---: | :---: | :---: |
| 1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 제 8 조(출연금)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7 조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 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 민•군기술협력 사업 촉진법 | 제 17 조(출연금의 지급)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 12 조에 따른 민•군기술 협력 전담기구, 제 13 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 관 및 제 24 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민•군기술협 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1)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은 제 14 조제 1 항 각 호의 기관 또 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 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 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0) 이 외에도 진흥법제 내에서 출연금 지급에 관한 입법례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일부만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 2）검 토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르면 정부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 행，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에 한정하고 있으며，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고 있다．${ }^{81)}$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대부 분 연구 기관에의 출연이나，관련 연구 기금에의 출연，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공단 등의 기관에 한하여 정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 정을 두고 있다．

3）＇출연금 지급＇에 관한 입법 모델（안）${ }^{82)}$

제 O 조（출연금의 지급）（1）국가는 OOO 기관의 OOOO 을 위하여 필요한 OOO 비용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7）부담금 감면에 관한 규정

＇부담금’이란＂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 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부과금，기여금，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 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 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의미한다．83）기본적으로 부담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침익적인 것으로 반드시 「부담금 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81）「국가재정 법」제 12 조（출연금）．
82）입법 모델（안）은 관련 입법례 규정을 참고로 하여 제안하였다．
8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법률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며，84）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는＂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 방법，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85）＂되도록 하여 부담금 의 신설 및 부과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진흥법 제에서는 지원의 수단으로 이처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엄격하게 부과 되는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 1）입법례 유형

［부담금 감면에 관한 입법례86）］

| 번 호 | 법률명 | 부담금 감면 |
| :---: | :---: | :---: |
| 1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4조（부담금의 감면）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br> 1．「초지법」제 23 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br> 2．「농지법」제 38 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br> 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 2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의 4 （부담금의 감면 등）（1）국가 및 지방자 <br> 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사업을 |

84）「부담금 관리기본법」 제 3 조（부담금 설치의 제한）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 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85）「부담금 관리기본법，제 4 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 과요율 등（이하＂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 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86）이 외에도 진흥법제 내에서 부담금 감면에 관한 입법례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일부만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 번 호 | 법률명 | 부담금 감면 |
| :---: | :---: | :---: |
|  |  |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 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br>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 3 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br> 2．「산지관리법」제 19 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br> 3．「농지법」제 38 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br> 4．「초지법」제 23 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br>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 36 조에 따른 교통 유발부담금 <br>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 합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 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 고 같은 법 제 52 조제 3 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3 | 공항소음 <br>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5 조（각종 부담금의 면제）제 18 조에 따라 주민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 담금을 면제한다． <br>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br> 2．「농지법」제 38 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br> 3．「초지법」제 23 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br> 4．「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


| 번 호 | 법률명 | 부담금 감면 |
| :---: | :---: | :---: |
| 4 | 도시재정비 | 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수도권정비계획법」 <br> 제12조에 따라 위한 바과 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같 <br> 특별법 | | 은 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
| :--- |
|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 2）검 토

부담금이 반드시 개별 법률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근거를 가지고 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것처럼，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개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 다．따라서 진흥법제에서 지원수단의 하나로 부담금을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당연히 공익 목적에 따라 부 과되는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 감면의 목적도 공익 목적 등 감면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3）＇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입법 모델（안）${ }^{87)}$

제 $\mathbf{O}$ 조（부담금의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OOO 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OOO 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부과되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금융지원에 관한 규정

금융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인 융자•투자 등의 금융지원 외에 최근 산업 진흥법제등에 있어（1） $\mathrm{R} \& \mathrm{D}$ ，연구개발비，사업운영 등의 지 원을 위한 특화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회사 설립을 통해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2）산업 육성，인력의 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을 위한

87）입법 모델（안）은 관련 입법례 규정을 참고로 하여 제안하였다．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3) 구성원(조합원)이 공동 으로 조성한 자산을 운용하여 자금대여•보증•투자 사업을 운영하는 등88)의 새로운 수단의 금융지원 정책 및 입법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 1) 입법례 유형

## [금융지원에 관한 입법례89)]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1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제 5 조(항공기 담보의 특례)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은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항공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그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융자하여 줄 수 있다. |
| 2 | 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20 조(자금융자)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 보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 보보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정보보 호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 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br> 1.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설치•이 전•개체(改替) - 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br> 3.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국산화 를 위한 개발자금 |

88) 해당 내용은 이준호(d), "임베디드SW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법제화-", 전자부품연 구원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p.2013, pp.19~20와 관련 입법례 규정을 참 고로 하여 도출하였다.
89) 이 외에도 진흥법제 내에서 금융지원에 관한 입법례는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일부만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2 | 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자금 <br> 5．정보보호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br> 6．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한 자금 <br> 7．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2）제 1 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제 11 조（금융지원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 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 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 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 4 |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15 조（금융 지원）（1）정부는 1 인 창조기업에 대 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br> （2）정부는 1 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 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신용 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 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지역신용보 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으로 하여금 1 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 5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5조（금융지원 등）（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br>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  |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식 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 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 는 투자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 6 | 첨단의료복합 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 13 조（융자지원）（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료 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 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 산업 기반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br>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융자 를 할 때에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 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으며，해당 사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이 경 우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 한 부분은「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 자로 보지 니한다． <br> （3）제 2 항에 따른 사업의 성공 및 실패의 기준， 융자의 대상 및 조건，융자의 절차 및 상환 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 | 문화산업진흥 <br> 기본법 | 제 8 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10 조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 조제 1 항• 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 융회사（이하＂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 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  | 그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br>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br> 2.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br>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br>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br>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br>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 설비 및 전문인 력 등의 알선과 경영 자문 <br>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br>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 팅 및 저작권 관리 <br> 9. 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br> (2) 제 1 항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br> (3) 제 1 항제 4 호의 투자조합자금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포 함한다. <br> (4)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  |  | 제9조(투자조합) (1)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 금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투 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 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br> (2)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 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8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법 | 제 20 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1）지능 형 로봇투자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br> （2）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0 조제 1 항에 따른 환 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br> （3）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br> （4）이 법에 따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제21조（투자대상사업）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투 자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은 지능형 로봇 제품， 부품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
|  |  | 제22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2 조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 제 23 조（존립기간）（1）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존 립기간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 182 조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 등록된 날부터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다만，지능 형 로봇투자회사는 지능형 로봇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 |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  | 일부터 기산하여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r> (2) 금융위원회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 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 제 24 조(영업보고서의 제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로 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제 25 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에게, 금융위원회는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자에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br> 1.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br> 2.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 보관회사 및 일반 사무관리 회사 <br> 3.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 은 지능형 로봇기업 <br>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과 관련하 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 1 항제 2 호의 경우 에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  | 관한 법률」 제 29 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 으로 하여금 제 1 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 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br> （3）제 2 항에 따라 검사를 한 금융위원회는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  |  | 제 26 조（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 등）（1）「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집합투자업 자＂라 한다）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br> （2）집합투자업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2 조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 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지능형 로봇사업에 관한 지능형 로 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와 자문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 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br> （3）집합투자업자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 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 을 수 있다． |
|  |  | 제 27 조（투자위험보증사업） <br> （1）산업통상자원부장 <br> 관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투자위험보증기 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능형 로봇투자회 사에게 제 28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  | 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br> (2)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 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br> (3)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 $\mathbf{2 8}$ 조(자산운용의 방법) (1) 지능형 로봇투자회 사는 자본금의 100 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제 1 호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br> 1. 지능형 로봇개발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br> 2. 지능형 로봇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한 출자•주 식•지분•수익권•대출채권 취득 <br> 3.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주식•지분•수익 권 • 대출채권의 취득 <br> 4. 지능형 로봇 등의 개발•생산•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 의 지능형 로봇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br>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br> (2)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 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을 |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br> 1．단기대출 <br> 2．금융기관 예치 <br> 3．국•공채의 매입 <br> （3）그 밖에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29조（자금차입 등）（1）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r> 1．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br> 2．제 28 조제 1 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br> （2）제 1 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지능형 로봇투자회 사 자본금의 100 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 야 한다． |
| 9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1 조의 3 （기술지주회사의 설립）（1）공공연구기 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 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br> （2）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br>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br> 2．임원이「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br> 3．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br> 4．보유기술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 2 조 |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  | 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br> (3) 제 1 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 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br> (4)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 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 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 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 을 사용할 수 있다. <br> (5)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br> (6)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 우에는 제 23 조를 준용한다. |
|  |  | 제 21 조의 4 (출자회사의 설립 등) (1) 기술지주회사 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 3 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br> (2)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 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3)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 23 조를 준용한다. 기술지 주회사가 제 21 조의 3 제 5 항에 따라 현물출자받 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 원에 보고할 수 있다. |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  | 제21조의 4 (출자회사의 설립 등) (1) 기술지주회사 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 3 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br> (2)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 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3)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 23 조를 준용한다. 기술지 주회사가 제 21 조의 3 제 5 항에 따라 현물출자받 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 원에 보고할 수 있다. |
|  |  | 제21조의 4 (출자회사의 설립 등) (1) 기술지주회사 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 3 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br> (2)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 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3)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 23 조를 준용한다. 기술지 주회사가 제 21 조의 3 제 5 항에 따라 현물출자받 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 원에 보고할 수 있다. |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  | 제 21 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br> 1.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 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사 업화 <br> 2. 제 1 호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출 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br> 3.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 의 기술 및 경영 자문 <br> 4. 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 (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br> 5.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 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br> 6.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 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  | 제 21 조의 6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 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br> 2. 제 21 조의 3 제 2 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br> 3. 제 21 조의 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
|  |  | 제 21 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1) 공공연구 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  | (2)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 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 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 전 - 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br>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 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 | 건설기술 진흥법 |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1) 건설사업관리(「건 설산업기본법」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 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br> (2)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br> (3)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br> (4)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 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  |  | 제 75 조(공제조합의 사업) (1)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br> 1.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 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 <br>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br> 3.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 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  | 4.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br>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br> 6.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 매 알선 <br> 7.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br> 8.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 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br> (2) 공제조합은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br> (3) 제 2 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 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1) 건설폐기물 처리업 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 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br> (2)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br> (3)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br> (4)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분담금 납 부, 책임준비금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 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의 금액, 납부받은 분담금의 적립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


| 번 호 | 법률명 | 금융 지원 |
| :---: | :---: | :---: |
|  |  |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 48 조(공제조합의 사업) (1)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br>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br> 2. 조합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 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 증, 처리비용환불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br> 3. 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어음의 할인(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받은 어음만 해당한다) <br>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br>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 의 알선 <br> 6. 건설폐기물 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 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익증 진을 위한 사업 <br> 7. 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br> 8.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br>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br> 10. 제 1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 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br> (2) 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 <br> 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 환 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

## 2）검 토

기본적인 금융지원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산업，기업，단체 등을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보증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하여 이에 근거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한 형태가 전통적인 금융지원 의 방법이었다．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일방적인 자금 지원에서 벗 어나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자금 확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투자 및 지주회사 설립，공제조합 설립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지원 수단을 발굴•활용하고 있다．다만 아직까지는 엄격한 설립 제한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진흥법제 내 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제한 사항 등에 대 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3）금융지원에 관한 입법 모델（안）${ }^{90)}$

투자회사 및 지주회사 설립，공제조합 설치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은 산업과 관련한 진흥법제에서 주로 활용된다．이하에서는 지역산업을 예정하여 입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 모델（안）
제 0 조（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의 설립 등）（1）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는「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2）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3）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9]（4）이 법에 따른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지역산업발전투자 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0 조（투자대상사업）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제 0 조에 따른 사 업과 이에 관련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 00 조（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금융위원회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2 조에 따라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00 조（존립기간）（1）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2 조에 따라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로 등록된 날부터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는 지역산업발전 사업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 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 부터 기산하여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금융위원회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0 조（영업보고서의 제출）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00 조（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등）（1）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금융위원회는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자에게 지역 산업발전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 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
2．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 사무관 리 회사
3．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지역산업발전사업을 수 행하는 기업
4．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에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 1 항제 2 호의 경우에는 지 역산업발전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검사를 요 청할 수 있다．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29 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제 1 항 각 호의 자의 업무 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 00 조（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 등）（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집합투자업자＂라 한 다）는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2）집합투자업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산업발전사업에 관한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산업발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와 자문 또는 위탁계약을 체 결하고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3）집합투자업자는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 0 조（투자위험보증사업）（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에게 제31조의 33 에 해당하는 사 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 게 할 수 있다．
（2）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 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 0 조(자산운용의 방법) (1)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 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제 1 호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 용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지역산업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산업기업에 대한 출자•주식•지분•수익권•대출채권 취득
3. 지역산업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 자 - 주식 • 지분 - 수익권 • 대출채권의 취득
4. 지역산업 등의 개발 - 생산 • 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지역산업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 분의 투자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산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 인한 투자
(2)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6. 단기대출
7. 금융기관 예치
8. 국 - 공채의 매입
(3) 그 밖에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0 조(자금차입 등) (1)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차입 -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다 만,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 31 조의 33 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 - 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 는 지능형 지역산업발전투자회사 자본금의 100 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2）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 모델（안）

제 0 조（지역산업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1）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기술 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에 따른 지역산업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기준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3）제 1 항의 경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 조의 3 제 2 항제 4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4）출자회사의 설립，기술지주회사의 업무•운영과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 0 조 ${ }^{(r}$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술지주회사의 설 립 특례）（1）제 31 조의 1 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에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 조의 3 제 2 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0 조（기업부설지역산업연구소 등）（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사업 내용•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 부설지역산업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지역산업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른 기업부설지역산업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부설지역산업연구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지역산업연구소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다 만，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
2．제 1 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 0 조(지역산업기술정보센터) (1) 지역산업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보급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기술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른 지역산업기술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2. 선행기술정보의 생산•관리•분석 및 제공
3. 외부 용역에 따른 선행기술의 검색
4. 그 밖에 선행기술정보자료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업
(3) 지역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지역산업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 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지역산업기술정보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6) 제3항에 따라 지역산업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 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지역산업기술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산업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기술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9) 제8항에 따른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0 조(지역산업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 역산업기술정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산업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O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 O 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O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2）제 1 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입법 모델（안）

제 0 조（지역산업공제조합의 설립）（1）지역산업 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 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지역산업 공제조합（이하＂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3）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정관기재사항，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민법」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5）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과「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 0 조（공제조합의 사업）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지역산업 관련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의 기술향상과 지역산업 사업체 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지역산업 관련 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다 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 는 제외한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역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보급 지원
4．지역산업 사업자가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의 기술향상과 지역산업 사 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 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5．지역산업 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6．지역산업 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 0 조(기본재산의 조성) (1)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2) 제 1 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 0 조(공제규정) (1) 공제조합은 제 00 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대상•부금•준비금 및 적 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야 한다.
(3) 공제조합은 제 2 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0 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1)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 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 0 조(공제조합의 책임) (1)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 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 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 여 소멸한다.

제 0 조(지분의 양도 등) (1)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3）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 권 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4）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
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 압류 또는 압류는「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제 0 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1）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다만，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 여야 한다．
1．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제 1 항제 1 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 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제 00 조（대리인의 선임）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 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을 선임할 수 있다．

제 00 조（이익금 등의 처리）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민법」 제 80 조에 따라 처리한다．다만，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0 조（배상책임 등）（1）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다만，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9）재정수반법률에 대한 종합적 검토

진흥법제는 기본적으로 재정•세제 지원을 기본적인 지원수단으로 상정하고 있는 바，이는 정책추진에 있어서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나，국가재정의 한계와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진흥법제의 입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쟁점사항이다．일 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지원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법적 근거만 을 규정하고，실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 정되는데，이러한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법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재정•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재정법」，「조세특 례제한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재정법제에 따른 규율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제와의 관계 등도 고려하여 제도 설계가 이 루어져야 한다．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법제화에 있어서는 정책운용의 탄력성과 효율 성을 위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지만，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 는 수준의 입법방식이 필요하다．

법률 시행에 따른 지출소요는 법률 시행연도 이후 일정기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재정수반법률에서 규정한 정책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출의 증가규모가 안정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보 여주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의결된 재정수반법률에 대한 분석은 최소한 의결 후 5 년의 기간 동안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며，법률안 심사과

정에 서도 재정 요인에 대해서는 최소 5 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p.22)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의결 재정지출법률에서 규정된 재 정수반 조항 중 2013~2017년 예산 또는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재정 수반 조항에 관한 사항이다. 2013년도에 의결된 252개 재정수반법률 중 25 개 법률 35 개 조항의 경우 해당조항 시행에 따른 지출소요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나 2013~2017년 예산 또는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출소요가 예상되는 재정수반 조항은 2015년 이후 연도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될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 집계 한 지출소요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전 재정 관 리의 측면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재정수반 조항 또한 장기적 관점에 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2014.7, pp.21~22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수반법률에 대한 분석은 재정지원을 수반하 는 법률의 경우 5 년 수준의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 약될 수 있다. 법률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정확한 재정수반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 에, 구체적인 지원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입법례는 재정지원의 수단으로서 보조 금의 지원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 령령에서 정하는 방식이 다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례에서는 대 부분 보조금의 지원방식과 절차 등 지원체계에 관한 행정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실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 지원의 실체와 근거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 임입법원리에 어긋날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법률에서 지원의 대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은 위임받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은 지원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지원대상이나 지원주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재정 수반법률에 있어서 필요한 장기적인 예산운영의 예측과 분석•검토에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개발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진흥법제는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산업이나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법 률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산업 등 구 체적으로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고，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반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토지 의 특정 지역을 단지화（클러스터화）하여 지원하는 법률이 있는 반면 에，대상이 되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이용이 수반되 는 법률 유형도 있다．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과 관련 계획과의 조화가 중시된다．

## （1）입법례 유형

1）단지형성에 관한 진흥법제
단지형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진흥법제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토지 의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면서，해당 산 업을 위한 단지형성에 있어 다른 법률과의 충돌과 저촉을 예방하고 있다．또한，대부분의 법률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이용법제와의 관계를 해당 법률에서 명 확하게 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 [단지형성에 관한 진흥법제]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 2) 개발계획을 수반하는 진흥법제

단지형성에 관한 법률들이 아닌 법률들에서는 개발계획에 관한 내 용을 담고 있으면서 해당 계획의 승인 및 추진절차 등이 기존의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들과 절차적으로 중복됨으로써 진흥법제 내에서 새 로운 규제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개발계획을 수반하는 진흥법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유통산업발전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 （2）검 토

단지형성에 관한 진흥법제와 개발계획을 수반하는 진흥법제에서는 보편적으로 해당 법률에 근거한 개발계획과 토지이용 법제와의 조화 및 상호조정은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다만，해당 법률들 간의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절차과정에 있어서 절차간소화의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즉，기존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들과 절차적으로 중복 됨으로써 진흥법제 내에서 새로운 규제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이는 진흥법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 에 있어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 화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이 법률에서는 토지이용의 절 차간소화를 위하여 통합심의 및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91）
단지형성과 관련하여 유의해서 볼 입법례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있다．이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통합조정회의，심의위원회의 심의，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절차간소화 관련 규정］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1 | 토지이용 <br>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br> 특별법 | 제 2 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br> 1．＂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경제적 가 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10]|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  |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 조에 따른 개발행위 <br> 나．「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의 건축 및 같 은 항 제 9 호의 대수선 <br>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제 13 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br> 2．＂토지이용 인•허가＂란 제 3 조 각 호의 허가• 승인을 말한다． <br> 3．＂토지이용 인•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  |  | 제 12 조（통합심의위원회）（1）토지이용 인•허가권 자는 신속한 토지이용 인•허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br>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13 조 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br> 2．「건축법」제4조제 1 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br> 3．「경관법」제 29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 치하는 경관위원회 <br>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19 조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심의위원회 <br> 5．「산지관리법」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br> 6．「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 5 항에 따라 지역 대책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 성 검토위원회 <br> （2）（생 략） <br> （3）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  | 1. 제 3 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br> 2.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br> 3. 그 밖에 토지이용 인•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br> (4) ~ (7) (생 략) <br> (8)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통합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제1항 각 호의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br> (9) (생 략) |
| 2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br>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 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 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시•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산업 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에 설치되는 산업 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라 한다. <br>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 18 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 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 18 조의 2 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 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  | 제 19 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 한 농공단지계획을 포괄하여 말한다． |
|  |  |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1）이 법은 산업단 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 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br> （2）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  | 제 10 조（관계 기관 협의）（1）지정권자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 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다만，제 8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제출기한을 정하여 따로 제출받은 서류에 관하여는 민간 기업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 를 협의하여야 한다． <br> （2）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 부터 10 일（근무일 기준）이내에 의견을 회신하 여야 한다．다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15 일（근무일 기준）이 내로 한다． <br> （3）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 2 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 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br> （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 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  | 지정권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 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제 11 조(통합조정회의) (1) 지정권자는 제 10 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br> (2)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 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 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br> (3)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 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제 12 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1) 제 10 조 및 제 11 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 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 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 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등의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총리 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은 해당 이견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검 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br> (3) 제 1 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 관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  | （4）국무조정실에 제 1 항에 따른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br> （5）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두는 기구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  |  | 제 14 조（심의위원회의 심의）（1）제 8 조에 따른 산 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 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br> （2）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 획，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제 13 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br> （3）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br>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업입지정책심의회 <br>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br>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 가심의위원회 <br> 3 의2．「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 성 검토위원회 <br>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 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br> 5．「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 통위원회 |


| 번 호 | 법률명 | 주요 내용 |
| :---: | :---: | :---: |
|  |  | 6．「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br> 7．「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
|  |  | 제 19 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1）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 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문화 재청장，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 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2）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수립한 산업단지계 획의 기준과 제 1 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단지 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총 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br> （3）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 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 보다 강화된 규제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4）제 2 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 준은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다른 기준에 우선 하여 적용되며，제 10 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협의의견을 제 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 별법」，「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이러한 법률 사항들에 대하여 적용범위의 확대 및 운영의 범

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이 법률이 특별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며，해당 진흥법제에 있어서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계획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 동 법률의 적용을 준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인허가절차의 특례뿐만 아니라，절차간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발굴하여 동 법률의 범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준용 규정＇입법 모델（안）${ }^{92)}$

제 00 조（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1） OO 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 한 특례법」을 준용한다．다만 같은 법 제O조 및 제O조는 준용하지 아 니한다．
（2）제1항에 따라「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 용하는 경우＂산업단지＂는＂OO단지＂로，＂국가산업단지＂는＂OO단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OO단지개발지원센터＂로，＂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는＂OO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OO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지방 OO 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산업단지계획＂은＂OO단지계획＂으로，＂민간 기업등＂은＂제O조에 따라 OO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산업입 지정책심의위원회＂는＂OO정책위원회＂로，＂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 OO 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OO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OO 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며，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 청할 수 있다．

[^11]
## 5. 벌칙•과태료 규정에 관한 사항

진흥법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 반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을 규제하거나 또는 처벌하는 등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담의 내용이 담겨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경우에 따라서는 진흥법제에 있어서도 진흥관련 실체적 규정들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규제에 관한 사항과 벌칙 규정들 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현행 진흥법제에서도 행정형벌 또는 과태 료 등의 제재규정이 다수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 (1) 입법례 유형

현행 진흥법제를 보면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벌칙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는 법률들도 있다.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도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행정질서벌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벌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의 하나로써93) 벌칙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최후적•보충적인 수단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1)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진흥법제의 실체규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두게 된다.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1) 행정형벌만을 두고 있는 경우, (2) 행 정질서벌만을 두고 있는 경우, (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모두 두 고 있는 경우 (4) 벌칙규정을 두기 전에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12]
## 제 3 장 진흥법제의 입법 체계 및 모델 분석

시정명령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와 두고 있지 않는 경우 등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진흥법제]

| $\begin{aligned} & \text { 번 } \\ & \text { 호 } \end{aligned}$ | 법률명 | 벌칙 내용 |  |
| :---: | :---: | :---: | :---: |
|  |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br> (과태료) |
| 1 | 인성교육진흥법 |  | O |
| 2 | 학술진흥 법 |  | O |
| 3 | 건설기술진흥 법 | O | O |
| 4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O | O |
| 5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O | O |
| 6 | 조경진흥법 |  | O |
| 7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O | O |
| 8 | 항공운송사업진흥 법 | O |  |
| 9 | 낙농진흥 법 |  | O |
| 10 | 식품산업진흥법 | O | O |
| 11 | 외식산업진흥법 | O | O |
| 12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O | O |
| 13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 O |
| 1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O | O |
| 15 | 공예문예산업진흥법 |  | O |
| 16 | 관광진흥 법 | O | O |
| 17 | 국민체육진흥 법 | O | O |
| 18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O | O |


| $\begin{aligned} & \text { 번 } \\ & \text { 호 } \end{aligned}$ | 법률명 | 벌칙 내용 |  |
| :---: | :---: | :---: | :---: |
|  |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과태료) |
| 19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 O |
| 20 |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O |
| 2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O | O |
| 22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 O |
| 23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O | O |
| 24 | 지방문화원진흥법 |  | O |
| 25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O | O |
| 26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 O |
| 27 | 우주개발진흥법 | O | O |
| 28 | 원자력진흥법 | O | O |
| 29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O | O |
| 30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O | O |
| 31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O |  |
| 32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 O |
| 33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O | O |
| 34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 O |
| 35 | 산업디자인진흥법 | O |  |
| 36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O | O |
| 37 | 소금산업진흥법 | O | O |
| 38 | 환경교육진흥법 |  | O |
| 39 | 기상산업진흥법 | O | O |
| 40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하나 법률 | O | O |


| $\begin{aligned} & \text { 번 } \\ & \text { 호 } \end{aligned}$ | 법률명 | 벌칙 내용 |  |
| :---: | :---: | :---: | :---: |
|  |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br> (과태료) |
| 41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O | O |
| 42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O | O |
| 43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O | O |
| 44 | 발명진흥법 | O | O |
| 45 | 사회적기업 육성법 | O | O |
| 46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 O |
| 47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O | O |
| 48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O |  |
| 49 | 말산업육성법 | O | O |
| 50 | 한국진도개 보호 • 육성법 |  | O |
| 5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O | O |
| 52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 O |
| 53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  | O |
| 54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 O |
| 5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O |  |
| 56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 O |
| 57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 O |
| 58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O | O |
| 59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O |  |
| 60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O |
| 61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O | O |


| 번 <br> 호 | 법률명 |  | 벌칙 내용 |  |
| :---: | :--- | :---: | :---: | :---: |
|  |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br> (과태료) |  |
| 62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O | O |  |
| 63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O | O |  |
| 6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O | O |  |
| 65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O |  |  |
| 66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O | O |  |
| 6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O | O |  |
| 68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br> 한 법률 | O | O |  |
| 6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O | O |  |
| 70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O | O |  |
| 7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O |  |  |
| 72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O | O |  |
| 7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O | O |  |
| 74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O | O |  |
| 75 | 택지개발촉진법 | O | O |  |
| 76 | 해외건설 촉진법 | O | O |  |
| 77 | 농업기계화 촉진법 | O | O |  |
| 78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O | O |  |
| 79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영 | O |  |
| 80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O |  |  |
| 81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  |  |
| 82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  |


| $\begin{aligned} & \text { 번 } \\ & \text { 호 } \end{aligned}$ | 법률명 | 벌칙 내용 |  |
| :---: | :---: | :---: | :---: |
|  |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br> (과태료) |
| 83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O |  |
| 84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O | O |
| 85 | 산업융합 촉진법 | O | O |
| 8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 O | O |
| 87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O | O |
| 88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O |  |
| 89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 O |
| 90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O |  |
| 91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 을 위한 특별법 | O | O |
| 92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O | O |
| 93 | 신항만건설 촉진법 | O | O |
| 9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O | O |
| 95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 O |
| 9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O | O |
| 9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O | O |
| 98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O | O |
| 99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O | O |
| 10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101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 O |


| 번 <br> 호 | 법률명 |  | 벌칙 내용 |  |
| :---: | :--- | :---: | :---: | :---: |
|  |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br> (과태료) |  |
| 102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O |  |  |
| 103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br> 법률 |  | O |  |
| 1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O | O |  |
| 105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06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07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08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09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10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br>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11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12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 O | O |  |
| 113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14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15 | 긴급복지지원법 | O |  |  |
| 116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17 | 노후준비 지원법 | O | O |  |
| 118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19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  |
| 120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br> 법률 | O | O |  |
| 121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 O |  |


| 번 <br> 호 | 법률명 | 벌칙 내용 |  |
| :---: | :--- | :---: | :---: |
|  |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br> (과태료) |
| 122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123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 O |
| 124 |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 <br> 한 법률 |  | O |
| 125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br> 관한 법률 |  | O |
| 126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O |  |
| 126 | 다문화가족지원법 | O | O |
| 128 | 아이돌봄 지원법 | O | O |
| 129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13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O |  |
| 131 | 한부모가족지원법 | O | O |
| 132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br> 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13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134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135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136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137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O | O |
| 138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O | O |
| 139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
| 140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br> 관한 법률 | O | O |


| 번 <br> 호 | 법률명 |  | 벌칙 내용 |  |
| :--- | :--- | :---: | :---: | :---: |
|  |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br> (과태료) |  |
| 14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br> 에 관한 법률 | O |  |  |
| 14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br> 관한 법률 | O | O |  |
| 14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br> 관한 법률 | O | O |  |
| 14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4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46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47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 <br> 한 법률 | O | O |  |
| 14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49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O | O |  |
| 150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O |  |  |
| 15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br> 법률 | O | O |  |
| 15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O | O |  |

## 2)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권리•이익을 특정인에게 특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특정인으로부터 박탈하는 능력규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벌칙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다.94)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적인 지원 규정만을 입안하고 있는 경 우에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게 된다.
94) 박영도, 앞의 보고서(a), p. 432

##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진흥법제］

「과학교육진흥법」，「대학도서관진흥법」，「도서•벽지 교육진흥법」，「영재 교육진흥법」，「학교도서관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김치산업 진흥법」，「독서문화진흥법」，「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스포츠산업진흥법」，「씨름진 흥법」，「영상산업진흥기본법」，「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작은도서관 진흥법」，「전통무예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농촌진 흥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과학기 술 육성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여성농 어업인 육성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생명공학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학교시설사업 촉진법」，「건널목 개량촉진법」，「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나노기술개발 촉진법」，「장애인•노인 등 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도서개발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경제교육지원법」，「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식생 활교육지원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 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건전가정 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통 일교육진원법」，「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등

## (2) 검 토

현행 진흥법제에 있어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등의 벌칙 규정이 다수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진흥법제의 기본원칙상 이는 적절하지 않은 입법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진흥법제에도 작위 및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실체 규정의 입법 필요성 있고, 이러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을 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벌칙 규정을 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1) 벌칙을 두지 않고 작위 또는 부작 위를 명하는 규정을 적용을 받는 자의 도의적인 문제로서 그 준수를 기대하는 훈시규정으로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벌칙 규 정 이전에 작위 또는 부작위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절차를 먼저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95) (3) 행정형벌 보다는 행정질서벌 규정을 우선 두거나 형벌과 행정재재의 병과, 행정재재의 병과 등이 더 바람직한 경우, (4) 행정형벌도 양형 기준에 따라 유형화 등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입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진흥법제에 있어 현실적으로는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절차에서 거짓 또는 부정으로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경우에는 제재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행정형벌보다는 과태료 등의 규정이 더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진흥법제에서 행정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 의제 조항에 의한 형사처벌과 지원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 정 등이 다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 형벌을 규정한 목적의 정당성과

[^13]필요성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최대한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1 차적으로 진흥법제에 있어서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벌칙규정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로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차적으로는 과태료에 대한 규정 또 한 정비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 고，지원대상의 제외 또는 지원제한의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진흥법제는 법률에서 금지규범 등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위반에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 아니라，일정한 요건에 해당 되면 지원•진흥을 하겠다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금지규범 보다 는 행위규범이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행위규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금지규범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법 적용 의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진흥법제에서는 가능 한 한 최대한 벌칙규정과 감독규정보다는 제도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 정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법」의 경우 보고의무（제 8 조제 4 항）규 정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과태료 규정만 삭제하였다．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된 현행 법 제 8 조를 보면，연구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법 제 8 조의 보고의무는 남겨두고 위 반시 과태료만 삭제한다면，제 8 조 위반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상으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게 된다．즉 진흥법제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제재규정을 최소화하더라도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은 존치시켜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법 제 8 조 규 정을 그대로 둔 채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면，시정명령이나 협약해 지 등 규제성이 적은 다른 행정적 수단을 검토해 볼 수 있다．96）

[^14]
# 제4장 진흥법제 입법시 주요 고려 사항 

## 제 1 절 주요 쟁점

진흥법제의 입법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1) 법률 제명의 사용 기준, (2) 법적 근거의 필요성 및 범위 여부, (3) 진흥 및 지원정책 추진의 필요성 담보 (4) 평등의 원칙 등 합헌성 고려, (5) 재정 관련 법제와의 관계 고려 (6) 유사•중복 입법의 문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하 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 1. 법률 제명의 사용 기준

현행 실정법상 법률의 제명에 진흥, 지원, 육성, 촉진, 조성을 어떠 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있기 보다는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용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흥, 조성, 육성, 촉진, 지원이 라는 이러한 용어를 개념상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용 어들이 하나의 법에도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에 법률 내용상의 성격 에 따라 일정한 법률 제명 사용 기준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 다. 그럼에도 우리 법령 체계에서 법률의 제명에 따른 구분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진흥법제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일정 부분 용어 사용 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97)}$ 진흥법제의 주요 대상이 산업, 문화
97) 법률 제명의 원칙 및 기준에 관하여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2 \mathrm{pp.611} \mathrm{\sim 613}$ 에 일부 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 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 현해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한 다. (2) 법령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법령의 내 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법 령의 제명은 법령마다 고유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의 제명과 같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과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법령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제명을 구별하여 표현해야 한다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 법률 내용에 따라 어떤 법률

등일 경우에는＇진흥＇이，기금이나 단지를 생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일 경우에는＇조성＇이，기관（기업）이나 단체일 경우에는＇육성＇이，재정 지 원의 목적이 강할 경우에는＇지원＇이，제도의 활성화가 목적일 경우는 ＇촉진＇의 용어가 보다 더 적합할 것이다．용어 구분에 따른 용례 및 입법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 제명상 진흥•조성•육성•촉진•지원 용어의 사용 구분］

| 구 분 | 언어적 의미 | 용 례 | 입법례 |
| :---: | :---: | :---: | :---: |
| 진 흥 | 떨치어 일어남 | 산업 진흥／ 문화 진흥 | 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조 성 | 무엇을 만들어 이룸 | $\begin{aligned} & \text { 기금 조성/ } \\ & \text { 단지 조성 } \end{aligned}$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육 성 | 길러 자라나게 함 | 기술자 육성／ 중소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
| 촉 진 |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 | 수출 산업화 촉진／공업화 촉진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특별한）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법」 또는 「○O특례법」으로，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 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고 하여 특별법과 기본법에 관하여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진흥법제 또는 진흥법，지원법，조성법，육성법，촉진법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 지 않다．그 외 법제처에서는 법률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매년 「법률 제명 약칭 기 준」을 발간하고 있다．

| 구 분 | 언어적 의미 | 용 례 | 입법례 |
| :---: | :---: | :---: | :---: |
|  |  |  |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br> 관한 법률，장애인 고령자 <br>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br> 법률 |

한편，최근 입법 경향을 보면 규제법에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요소 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권력적•침익적인 규제 일변도 의 규율보다는 규제와 함께 지원 등의 인센티브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의 규제 대상자와의 갈등을 완화하고，규제법제의 수용 가능성과 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다만「건설기술 진흥법」의 예처럼 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이 건 설공사 및 기술 관리 규제의 목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법률의 제명 에＇진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법의 성격과 내용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98）따라서 규제의 내용과 진 흥의 내용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있더라도 법의 전체적인 내용 및 입 법 목적이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면＇규제＇또는＇관리＇의 용어를 진흥 및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면＇진흥＇，＇지원＇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법적 근거의 필요성 및 범위 여부

현재 진흥관련 법률의 대부분에 지원 근거 등만 정해 놓고，행정권 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진흥법제의 주요 수단인 지원에

[^15]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까지 법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99）

법적 근거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진흥법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 에게 수익적인 급부 행정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 한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데 일치하지만 침해행정 이외의 영 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유보설이 다수설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가를 기준으로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가를 판단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

중요사항유보설에 입각하더라도 기본적으로（1）상대방의 부담과 결 부되어 행하여지는 경우，（2）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3）진흥의 법 형식 또는 조직을 고권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 는 경우，（4）제공자에게 지원 의무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5）지원 목적•대상•방법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01)}$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들도 다수 존재한다．예를 들어 진흥의 수단 중 하나인 기금과 관련하여서는「국가재정법」 제 5 조에서는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102）조세특례와 관련하여서「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도

99）한편，진흥법제의 경우 대다수가 보조금 등 지원 수단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데 국민의 세금이 그 정책적 수단으로 투입되는 경우 국회의 재정（예산）특권 즉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이 는 제 3 차 워크숍에서 홍강훈 단국대 법학과 교수에 의해 지적된 자문 의견의 내용 이다）．따라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통해 진흥법제에서의 재정통제가 이 루어져야 한다．
100）이에 관하여는 홍정선，앞의 책，pp．20～23；김남철，앞의 책，pp．28～36．
101）박영도（a），앞의 보고서，p．403에서 조성행정의 법적 근거 필요성과 관련하여 위 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진흥법제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102）국가재정법 제 5 조（기금의 설치）（1）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 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

「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조약 및 제3조에 명시된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103）국유재산 특례와 관련하여서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해당 별표는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104）

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103）조세특례제한법 제 3 조（조세특례의 제한）（1）이 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 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소득세법」
2．「법인세법」
3．「상속세 및 증여세법」
4．「부가가치세법」
5．「개별소비세법」
6．「주세법」
7．「인지세법」
8．「증권거래세법」
9．${ }^{\text {r 국세징수법」 }}$
10．「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관세법」
12．「지방세특례제한법」
13．「임시수입부가세법」
14．삭제
1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삭제
18．「교육세법」
19．「농어촌특별세법」
20．삭제
2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삭제
2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 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종합부동산세법」
（2）이 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 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 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0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 4 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1）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

## 3. 진흥 및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 담보

진흥법제의 경우 진흥 및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어떻게 담보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진흥법제의 경우 재정 지원을 주요 입법 요소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추진이 후술하는 평등의 원칙과의 문제, 즉 "특정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특혜 소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진흥법제 입법시에는 반드시 진흥 및 지 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진흥 및 지원의 목적, 대상,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입법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 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흥법제에 관한 사전 입법 영향 평가제도 도입 및 진흥법제의 입법 기준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세제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익 목적인 아닌 "특정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업 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직접목 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 }^{105 \text { ) }}$ 결국 진흥법제가 진흥 및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헌법상 보장된 원리 및 가치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 4. 평등의 원칙 등 합헌성 고려

## (1)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진흥법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의 진흥정책에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16]부담시키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담시키는 법률이 아니지만, 진흥법제의 대상이 되는 국민 및 사안에 따라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 민 및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시혜적•급부적 법률에서 발생되는 불평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진흥법제에서의 평등권 침해 문제는 이미 헌법 재판소 106 )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 시혜적•지원적•급부적 성격의 특별법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산업과 지역 등 대상에 대한 평 등원칙의 위반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됨.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는 (1)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2) 이러한 차 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이며, (1)의 요건은 해당 법ㄱㅈ정의 의미와 목적이 어떠한지에 관한 것 이고, (2)의 요건은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에 관한 것임.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특 정대상에 대한 진흥과 지원에 의하여 발생되는 차별취급이 자의적으로 이 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기 두 번째 요건(차별대우를 정당 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고 도출 되어야 함
※ 출처 : 이준호, 제 1 차 워크숍 자료에서 인용한 것107)으로 해당 내용은 헌재 1999. 7. 22. 98 헌바 14 전원재판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 헌재 2010. 5. 27. 2009헌바49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 소헌 등의 판결 참조 하여 재구성한 것임.
106) 같은 취지의 판례로 헌재 1999. 7. 22. 98 헌바 14 전원재판부 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 헌재, 2007. 7. 26. 2004헌마914 전원재판부 한국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재 2010. 5. 27. 2009헌바49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 소헌 등이 있다.
107) 해당 내용은 이준호 외(b), 앞의 보고서, pp.129~130에도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진흥•지원•육성•촉진• 조성에 관한 입법목적이 자의적이지 않은 이상, 진흥법제가 위헌심사 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진흥법 제에서는 "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입법례도 있으며, 한편으로 지원대 상이 법률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지원요건 충족 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위헌소 지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진흥법제의 대상이 특정 인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지 사안 집단인지에 따라 위헌성 문제를 구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진흥관련법제는 특정집단을 우대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평등권침해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법제가 만약 특정한 인적집단의 차별을 가져온다 면 이는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게 되므로 위헌판결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높게 된다. 반면에 인적집단의 차별이 아니라 사안집단의 차별을 가져온 다면 이는 단순히 완화된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그 합헌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다. 인적집단차별은 헌법 제11조에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집단에 따른 차별과 같이 자신의 의지 로 바꿀 수 없는 인적기준에 의한 차별을 말하고, 사안집단차별은 인적 기준이 아닌 어떠한 사안을 기준으로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다. 인적집단 차별은 헌법이 특별히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 라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경우 위헌의 가능 성이 매우 높아지고 결국, 입법형성권은 매우 좁아지게 된다. 반면에 사안 집단차별은 어떠한 인적집단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선한 정책적 목 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차별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보 장하기 위하여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 다수의 진흥관련법제는 사안집단차별에 해당하므로 위헌성 시비가 적을 수 있지만, 혹시 인적집단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의 검토가 입법과 정에서 필요하다. 나아가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안집단차별을 의도 하였지만 그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로 인적집단차별을

가져오는 경우이다．학계에서는 이를 간접차별이라고 칭하고 이것을 심사 하는 기준의 강도가 무엇인가가 문제되고 있다．대표적 예가 제대군인가 산점제도이다．본법은 군제대여부라는 사안을 기준으로 군복무자의 공무 원 시험합격을 우대해주려는 입법이지만，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여성이 차 별받게 되어 인적집단차별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이 경우 엄격한 비례심사를 한다는 견해와 완화된 비례심사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 다．진흥관련법제를 입법하는 경우 그 법제가 혹시 간접차별은 아닌지도 반드시 고려하여 입법해야 할 것임
※ 출처 ：홍강훈，제 3 차 워크숍에서 제시한 자문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홍강훈，평등권의 심사원칙 및 강도에 관한 연구，공법연구 제41집 제1호，2012，pp．253～276 참조 바람．

## （2）처분적 성격의 진흥법제에 대한 검토

진흥법제의 경우 지원 대상 및 지원 지역이 법률에 확정되어 있는 처분적 성격의 진흥법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처분적 성격의 진흥법제의 입법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서해 5 도 지원 특별법」등

처분적 성격의 진흥법제는 일반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대상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처분적 법률＂의 개념에 비추어 보아，입법단 계에서 행정권의 발동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지원 대상 및 지원 지역 이 확정되는 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처분적 법률이란，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기능의 매개 없이 직 접 국민에게 구체적，개별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의미108）함．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법은 그 적용에 있어서＂일반성＂을 가져야 하는데， 즉 A 라는 법률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권 리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법률의 일반성인데，이 과정에서 입법부가 제 정한 법률은 요건만을 규정하고，행정부가 그 요건에 해당여부에 따른 집 행을 함으로써 비로써 일반 개인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일 반적인 법률인 바，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없이 법률 자체에서 특정 대상•지역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임．

※ 출처 ：이준호，제 1 차 워크숍에서 제시한 발표 자료를 인용한 것109）으로 처분적 법률의 개념 및 헌법적，입법론적 검토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홍완식，＂처분적 법률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 제56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2，한국토지공법학회，pp．309～330 참조 바람．

처분적 성격의 법률들은 원래 의미의 처분적 법률과는 성격의 차이 가 있으며，특히 입법목적과 입법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현재로서는＂처분적 법률＂자체가 위 헌•위법하거나，평등의 원칙 또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 로는 의견의 일치가 되어 있지는 않으며，헌재 판결에서도 합헌 6 인 과 위헌 2 인 의견으로 매우 애매하게 처분적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했 기 때문에，지금으로서는 처분적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 으로 보고 있다．${ }^{110)}$ 그러나 특별법 또는 일부 진흥법제에서 나타나는 처분적 법률은 복지•경제 분야 등에서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특별한 공익적 이유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경우 가 아니라면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평등의 원칙 또는 권력분립의 원

108）홍완식，＂처분적 법률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제56집，한국토지공법학회， 2012．2，p． 314
109）해당 내용은 이준호 외（b），앞의 보고서，p． 129 에도 포함되어 있음．
110）헌재 2008．1．10．2007헌마 1468

칙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로 서 처분적 법률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3）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

한편，헌법재판소에서는 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시혜적 입법 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 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111）＂라고 판시하였다．

## 5．「국가재정법」등 재정관련 법제와의 관계 고려

진흥법제의 경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개별 진흥법제에 법적 근 거를 두고 있지만，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을 중심으 로 하여 개별 국가 재산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국가회 계법」，「국유재산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조세특례 제한법」，「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나아가 「국회법」 등 다양한 재정관련 법률들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진흥법제 입법과정에서는 이러한 법률 체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진흥법제에 지원 규정들을 입안 할 경우에는 해당 법안 제출단계에서부터 재정관련 법제의 통제를 받게 된다．즉，「국회법」 제79조의 2112 ）에 따라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

[^17]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 또한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 제안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도 「국회 법」 제79조의4113）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 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기대효과，예상 되는 문제점 등 평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 향 등을 고려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기금，조세특례나，국유재산특례와 같은 재정지원 사항을 입안 하는 경우에는 각각 「국가재정법」，「조세특례제한법」，「국유재산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여 해당 법률에 관련 규정이 반영이 되

[^18]지 않는 한 해당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법률에 마련된 여러 절차 적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개별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편성 절차 등을 준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재정수반을 요소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집행，사후 단계 별로 여러 성과 평가 절차 등을 두고 이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사업 운용 및 성과평가 체계114）］

| 구 분 | 사 전 | 집 행 | 사 후 |
| :---: | :---: | :---: | :---: |
| 예산관리 | 예산편성（예산안） | 집행（총사업비관리） | 결산（결산보고서） |
| 성과목표관리 <br> 제도 | 성과계획서 | 집행점검 | 성과보고서 |
|  |  |  | 재정사업 <br> 자율평가 <br> 성과평가제도예비타당성조사115） <br> （간이예타） |
| 타당성 재조사 | 싱차펑평가 <br> 보조사업 <br> 운용평가 |  |  |

114）박노욱，＂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조세재정 BRIEF，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12．31（통권 제19조）p． 3
115）국가재정법 제 38 조（예비타당성조사）（1）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 성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제4호의 사업은 제 28 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 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 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과학기술기본법」 제 11 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그 밖에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 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

## 따라서 진흥법제에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입안할 경우에는

 재정관련 법률들과의 관련성，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및 절차 규정 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한편，진흥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의 확보，조달방안의 문 제이다．「국가재정법」등 재정 관련 법령 및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통해 재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진흥법제 입안시에서 반드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재원 지원 수단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재정투입이 이루어지지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문화재 복원사업
3．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도로 유지보수，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 1 호에 따른 재난（이하＂재난＂이라 한다）복구 지 원，시설 안전성 확보，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지역 균형발전，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이 경우，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가．사업목적 및 규모，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4）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5）기획재정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않는 보증의 경우에도 잠재적인 국가채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신중 할 필요가 있으며，조세감면 역시 직접적인 재원 조달이 불필요하다 는 점에서 자주 활용되나 세수감소의 문제가 있어 이 역시 신중을 요 하여야 한다．${ }^{116)}$ 재정부담을 주는 진흥법제에 대해서는 최근 입법 예 고된「재정건전화법」117）이 제정된다면，해당 법률을 통한 재정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그러나 우리의 경우 구속력을 갖는 재정준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진흥법제는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 로 이에 대한 성과 평가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재정지원을 통해 진흥법제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했는지 효과성과 필요성을 주 기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법률의 존속 여부를 재검할 필요가 있다．이 러한 관점에서 진흥법제의 재정지원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존속기한 및 존속 여부에 대한 재평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진흥법에서는 이러한 규정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16）이는 최승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가 제 3 차 워크숍에서 제시한 자문의견의 내 용이다．
117）2016．8． 10 일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입법예고 되었다．법률의 제정 목적을 보면＂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재정환경의 변화 추세，장기 재정전망결과 등을 고려할 때，중장기 재정여력의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다．한편，「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사회보장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정운용주체별로 분산된 재정운용관련 법령체계 하에서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재정건전화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따라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 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관리체계 수립 등 재정건전화 규율을 신설하는 한편，범정부차원의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관련 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재정운용체계를 강화함으로써，재정건전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주요 내용은 재정건전화 책무，재정전략위원 회，채무•수지준칙 법제화，재정부담 수반법률안의 재원조달，중장기 재정건전화계 획의 수립•평가，강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국민참여 및 재정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ogLmPpSeq＝34327\＆mappingLbicld＝0\＆announceType＝TYPE5， 방문일자 2016．10．1．）

## 6．유사•중복 입법의 문제

진흥법제에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으로 여러 법률들에 의 한 유사•중복 입법 및 지원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앞 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관련 진흥법제를 보면「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공예문화산업 진흥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 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교육과 관련해서도「교육진흥법」，「과학교육 진흥법」，「도서•벽지 교육진흥법」，「영재교육 진흥법」，「인성교육진흥법」，「환경교육진흥법」 등 동일한 분야，영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흥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이 제정된 배경 및 개별 법률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는 다르겠지만，입 법 목적이나 지원 수단 등이 포함 혹은 중복관 계에 있거나 합리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법률들이 많아 집행 과정이나 수범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진흥관련 법제의 통합 및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새롭 게 진흥관련 법제를 입법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법령과의 중복•유 사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 기존 법령에 반영해도 무방할 경 우에는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유사 법령을 개정하여 도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진흥법제의 중복•유사 입법은 필연적으로 중복 지원의 문제 를 야기하는데 상호간에 다른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들간에 있어서 지원대상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동일한 대 상에 대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 법률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법률 제정이 불가피한 조치 라면 이를 입법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제도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 는데,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관련된 법률 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수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법률들이 개별적으로 제정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중복지원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관련 법률 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지원법제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법제]

| 중소기업지원법제 | 특수상황에 있는 기업 지원법제 |
| :--- | :---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법 |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특별법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 - 사회적기업육성법 |
| 원에 관한 법률 | -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ㅂㅂㅂ률 | 관한 특별조치법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
|  | 관한 법률 등 |

이처럼 중소기업지원과 특수한 상황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취 지 자체가 달라 지원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 복지원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지원이 그 목적 및 취지가 달라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 계가 없으나, 근본적으로 정부 예산의 집행에 관한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방향과 취지에 따라서 중복지원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는 입법과정에서 관련 법률들의 내용 및 체계를 분석하여 중복지

원에 대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입법 형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기업 분야의 중복지원에 관한 입법 모델（안）］

제 00 조（ 000 기업에 대한 지원）（1） 00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 00 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다만，제 3 호와 제 4 호의 경우「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벤처기업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정부지원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 회적기업과 벤처기업은 제외한다．
1．「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 인 창조기업
3．「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즉，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 해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복지 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관련 입법시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의무화한 다거나 현장에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복지원이 이루어지 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 2 절 정 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입법 형식 중 하나인 진흥법제의 의의，특징， 유형별 현황 및 분석을 기초로 하여，진흥법제의 공통된 입법 요소 중 특징적인 요소를 도출하여 입법 기준과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진흥법제는 기본적으로 입법 목적과 정책 수단과의 관계에서 타당 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기본적으로 진흥법제는 특정 산업，기

업, 계층, 문화 등을 진흥, 지원,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정책추진 체계, 다양한 지원 및 특례 수단을 공통의 입법요소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입법 목적과 달리 산업의 규제•관리에 관한 수단이 중심이 되 어서는 안 되며, 지원 수단 또한 정책 목적 달성에 유용한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흥법제 입법 목적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흥법제 가 "특정 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이익을 위해 입안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상 보 장된 평등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헌법의 이념 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흥법제가 입안되어야 한다. 이 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주체, 목적, 요건, 지원대상의 권 리•의무에 관한 사항, 선정 절차, 의무위반시 제재수단 등이 명확하 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한편, 진흥법제 입안시에는 진흥법제가 재정 지원을 주요 핵심 요소 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재정법제, 재정확보 방안, 집행 및 성과 평 가의 연계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진흥법제 입안시에 기본적으로 세제, 금융, 경비 지원(보조) 등을 기본 요소로 하는데 개별 진흥법제 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만을 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재정관련 법제에서 재정 지원의 신설, 집행, 사 후 관리 단계에서 엄격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이러한 관련법과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입안하여야 한다.

최근 진흥법제의 입법 경향을 보면 정책추진 체계 및 지원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 추진 체계에 있어서 기존에는 하향식 정책추진 체계를 일반적으로 마련•시행하였다면,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 맞는 정책을 입안•추진할 필요성이 큰

영역에서는 이러한 상향식 정책추진 체계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원수단에 있어서도 금융, 세제, 보조금 등 재정지원, 재단 및 진흥공단 등의 설립, 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 지원 외에도 펀드 등 의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다양한 금융수법의 활용, 컨설팅 지원, 창업 지원 등 각 법제의 입법 목적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개 발하여 입법에 반영하고 있다. 진흥법제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지 속가능한 지원•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바람직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 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발굴 및 정책 수단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정책 실현의 수단으로써 진흥법제는 법률의 제명에 구분 없이 향후 여러 형식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흥법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복•유사하거나 효과성•타당성이 낮은 진흥법제 또한 많이 발견할 수 있어 기존 진흥관련 법제의 통합 및 정비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무분별한 진흥법제의 입법을 방지하고, 진흥법제의 입법 목적을 효 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여러 사항들이 입법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사후적으로 진흥법제의 입법 목적이 정책대상에게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그 효과성과 지속 필요성에 대한 사후 검토 과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김남철，「행정법 강론」，박영사， 2014
국회예산정책처，「국가재정법－이해와 실제」， 2014
국회예산정책처，＂2013년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2014.7

문상덕，＂행정법학에 있어서 법과 정책－그 상관관계와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최송화교수화갑기념논문집 「현대공법학의 과제」，박 영사， 2002

박노욱，＂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조세재정 BRIEF，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12．31（통권 제19조）

박영도（a），「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6
박영도（b），「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방안」，한국법제연구원， 2012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 2012
손 현 외，「국유재산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자산관리공사 연 구용역보고서，한국법제연구원， 2016
홍정선，「행정법특강」，박영사， 2012
오준근，＂「지정」제도의 입법구조와 분석＂，법제，법제처， 2002
이준호 외（a），「지역경제활성화지원법률 제정 관련 국내외 사례연구」， 행정자치부 연구용역보고서，한국법제연구원， 2014

이준호 외（b），「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기반 조성 법제화 방안 연구」， 전남지역사업평가단－한국법제연구원， 2016

이준호 외（c），「새로운 CSR 전략 모색을 위한 법제화 연구」，산업통상 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한국법제연구원， 2013.4

이준호 외（d），＂임베디드SW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법제화－＂，전자부품 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한국법제연구원，p． 2013

한국법제연구원，「법률용어사례집」， 2016
홍강훈，＂평등권의 심사원칙 및 강도에 관한 연구＂，공법연구 제41집 제1호， 2012

홍완식，＂처분적 법률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 제56집， 2012.2

## 참고 문서

최성희，＂지방자치단체의 법인•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방식에 대한 검토＂，법제처 정보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등록 자료， http：／／www．lawmaking．go．kr／lmKnlg／lmKnlgDat／5214？pageIndex＝1 （방문일 2016．6．2）

손 현 외（유태동•이준호•홍강훈），「진흥관련 법제의 입법모델 연구」제 1 차，제 2 차，제 3 차 워크숍 자료（미발간 자료）， 2016

김도승，＂환경성질환 구제와 기금법리＂，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 자문 회의 자료（미발간 자료），2016． 2

이상윤，＂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관련 검토＂자료（미발간 자료）， 2015 미래와경영연구소，「NEW 경제용어사전」，미래와경영，2006．4．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2652\＆cid＝42111\＆categor yId＝42111（방문일자 2016．10．13）

## 참고 웹사이트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1. 법률 제명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구 분 | 법 률 | 비 고 |
| :---: | :---: | :---: |
| 진흥법 | 과학교육 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 학교도 서관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학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 법, 조경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김치산업 진흥법, 낙농진 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 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뉴스통 신 진흥에 관한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씨름 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 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전통무예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비파괴 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우주개발 진 흥법, 원자력 진흥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금산업 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환경교육진흥 | 70개 |


| 구 분 | 법 률 | 비 고 |
| :---: | :---: | :---: |
|  | 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농촌진흥법, 무 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  |
| 지원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 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 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녹색기 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 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 76개 |

118) 진흥, 조성, 육성, 촉진, 지원 등 법률 제명에 2 가지 이상의 용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태임.

| 구 분 | 법 률 | 비 고 |
| :---: | :---: | :---: |
| 지원법 |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양육비 이 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성공업지구 지원 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크루즈산 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76개 |
|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국토교통과 학기술 육성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국 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 30개 |


| 구 분 | 법 률 | 비 고 |
| :---: | :---: | :---: |
|  | 연구조합 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농림 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 촉진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건널목 개량촉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노기술개 발 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 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산업기 술혁신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 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 한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도서개발 촉진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남북 이산가 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50개 |


| 구 분 | 법 률 | 비 고 |
| :---: | :--- | :---: | :---: |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br> 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
| 조성법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br> 조성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br>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중심지의 <br>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7 7개 |

119) 기타는 증진, 장려 등 유사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법 형태로 제정된 법률임.

| 구 분 | 법 률 | 비 고 |
| :---: | :---: | :---: |
| 기타 |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 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충청북도 청주시 설 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 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4 \cdot 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
|  | 소 계 | 286개 |

## 2. 연도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연도별 |  | 법률명 | 비고 |
| :---: | :---: | :---: | :---: |
| 1950년대 | 진흥 | 원자력진흥법 | 1개 |
|  | 지원 |  |  |
|  | 육성 |  |  |
|  | 촉진 |  |  |
|  | 조성 |  |  |
|  | 기타 |  |  |
| 1960년대 | 진흥 | 과학교육진흥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낙동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소금산업 진흥법, 농 촌진흥법 | 11개 |
|  | 지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육성 | 한국진도개 보호 • 육성법,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
|  | 촉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
|  | 조성 |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연도별 | 법률명 |  | 비고 |
| :---: | :---: | :---: | :---: |
|  | 기타 |  |  |
| 1970년대 | 진흥 | 학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 | 12 개 |
|  | 지원 |  |  |
|  | 육성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
|  | 촉진 | 건널목 개량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  |
|  | 조성 |  |  |
|  | 기타 |  |  |
| 1980년대 | 진흥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20 개 |
|  |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소기업창업 지원법 |  |
|  | 육성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


| 연도별 | 법률명 |  | 비고 |
| :---: | :---: | :---: | :---: |
|  | 촉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도서개발 촉진법 |  |
|  | 조성 |  |  |
|  | 기타 | 숙련기술장려법 |  |
| 1990년대 | 진흥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보건 의료기술 진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 49개 |
|  | 지원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
|  | 육성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 연도별 | 법률명 |  | 비고 |
| :---: | :---: | :--- | :--- |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 <br> 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기술 <br> 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br> 외국인투자촉진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br>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br> 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촉진 |  |  |


| 연도별 |  | 법률명 | 비고 |
| :---: | :---: | :---: | :---: |
|  | 지원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 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  |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 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
|  | 촉진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 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  |


| 연도별 |  | 법률명 | 비고 |
| :---: | :---: | :---: | :---: |
|  |  | 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 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 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
|  | 조성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 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 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
|  | 기타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 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 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


| 연도별 |  | 법률명 | 비고 |
| :---: | :---: | :---: | :---: |
|  |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  |
| 2010년대 | 진흥 | 대학도서관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조경진흥법, 한 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김치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 차산업발전 및 차문 화 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씨름 진흥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삼차 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 지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80개 |
|  | 지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  |


| 연도별 |  | 법률명 | 비고 |
| :---: | :---: | :---: | :---: |
|  |  |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 년 지원에 관한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육성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  | 촉진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
|  | 조성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
|  | 기타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 제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  |


| 연도별 | 법률명 |  | 비고 |
| :---: | :---: | :---: | :---: |
|  | 등에 관한 특별법,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 <br> 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격 강화에 관한 특별 법, <br>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4 \cdot 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  |
| 소 계 | 286 개 |  |  |

## 3. 제안자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제안자 <br> 구분 | 법률명 |  | 비 고 |
| :---: | :---: | :---: | :---: |
| 의원 입법 | 진흥 | 과학교육 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조경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낙농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 률, 독서문화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생활체육진흥 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씨름 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잡지 등 정기간 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소프트웨 어산업 진흥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디 자인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식품 -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 47개 |
|  |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 69개 |


| 제안자 <br> 구분 | 법률명 |  |
| :---: | :---: | :--- | :--- | :--- |$|$ 비 고


| 제안자 <br> 구분 | 법률명 |  | 비 고 |
| :---: | :---: | :---: | :---: |
|  |  |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  |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생명공 학육성법,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20 개 |
|  | 촉진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 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 보급 촉진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도서개발 촉진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농 | 25 개 |


| 제안자 <br> 구분 | 법률명 |  | 비 고 |
| :---: | :---: | :---: | :---: |
|  |  | 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
|  | 조성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 용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5개 |
|  | 기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폐교재 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지 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토 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 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 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항쟁기 강제동원 피 | 46개 |


| 제안자 <br> 구분 | 법률명 |  | 비 고 |
| :---: | :---: | :---: | :---: |
|  |  |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 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 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4 \cdot 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
| 정부 입법 | 진흥 | 학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영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주개발진흥법, 원자력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농촌진흥법, 수목원 • 정 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  | 지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건 | 17 |


| 제안자 <br> 구분 | 법률명 |  | 비 고 |
| :---: | :---: | :---: | :---: |
|  |  | 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지원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산 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육성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자유총맹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육성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 10 |
|  | 촉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건널목 계량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나 노기술개발 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민•군 기술협력사업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 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 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25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제안자 <br> 구분 | 법률명 |  | 비 고 |
| :---: | :---: | :---: | :---: |
|  | 조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2 |
|  | 기타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7 |
| 소 계 |  |  | 286개 |

4. 소관부처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 부처명 |  | 법 률 | 비 고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고용 } \\ & \text { 노동부 } \end{aligned}$ | 진흥 |  | 12 |
|  |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 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  |
|  | 촉진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
|  | 조성 |  |  |
|  | 기타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
| 교육부 | 진흥 | 과학교육 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학술진흥법 | 17 |
|  | 지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육성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


| 부처명 | 법 률 |  | 비 고 |
| :---: | :---: | :---: | :---: |
|  | 촉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
|  | 조성 |  |  |
|  | 기타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국방부 | 진흥 |  | 2 |
|  | 지원 |  |  |
|  | 육성 |  |  |
|  | 촉진 |  |  |
|  | 조성 |  |  |
|  | 기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begin{aligned} & \text { 국토 } \\ & \text { 교통부 } \end{aligned}$ | 진흥 |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조경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 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28 |
|  | 지원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 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부처명 | 법 률 |  | 비 고 |
| :---: | :---: | :---: | :---: |
|  | 육성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 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  | 촉진 | 건널목 개량촉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수도 권신공항건설 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  |
|  | 조성 |  |  |
|  | 기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
| 기획 재정부 | 진흥 |  | 2 |
|  | 지원 | 경제교육지원법,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  |
|  | 육성 |  |  |
|  | 촉진 |  |  |
|  | 조성 |  |  |
|  | 기타 |  |  |


| 부처명 |  | 법 률 | 비 고 |
| :---: | :---: | :---: | :---: |
| 농림 <br> 축산 <br> 식품부 | 진흥 | 김치산업 진흥법, 낙농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27 |
|  | 지원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 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육성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
|  | 촉진 | 농업기계화 촉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 진에 관한 법률 |  |
|  | 조성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
|  | 기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텔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begin{aligned} & \text { 문화 } \\ & \text { 체육 } \\ & \text { 관광부 } \end{aligned}$ | 진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 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씨름 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 31 |



| 부처명 | 법 률 |  | 비 고 |
| :---: | :---: | :---: | :---: |
|  | 촉진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
|  | 조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  | 기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법무부 | 진흥 |  | 2 |
|  | 지원 |  |  |
|  | 육성 | 한국법학원 육성법 |  |
|  | 촉진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
|  | 조성 |  |  |
|  | 기타 |  |  |
| $\begin{aligned} & \text { 보건 } \\ & \text { 복지부 } \end{aligned}$ | 진흥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16 |
|  |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부처명 | 법 률 |  | 비 고 |
| :---: | :---: | :---: | :---: |
|  | 육성 |  |  |
|  | 촉진 |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  |
|  | 조성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
|  | 기타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산업 <br> 통상 <br> 자원부 | 진흥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 | 26 |
|  | 지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유무 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육성 |  |  |
|  | 촉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
|  | 조성 |  |  |


| 부처명 | 법 률 |  |  |
| :---: | :---: | :--- | :---: |$\quad$ 비 고


| 부처명 |  | 법 률 | 비 고 |
| :---: | :---: | :---: | :---: |
|  | 육성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
|  | 촉진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
|  | 조성 |  |  |
|  | 기타 |  |  |
| 외교부 | 진흥 |  | 1 |
|  | 지원 |  |  |
|  | 육성 |  |  |
|  | 촉진 |  |  |
|  | 조성 |  |  |
|  | 기타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  |
| 통일부 | 진흥 |  | 5 |
|  | 지원 |  |  |
|  | 육성 |  |  |
|  | 촉진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


| 부처명 | 법 률 |  | 비 고 |
| :---: | :---: | :---: | :---: |
|  | 조성 |  |  |
|  | 기타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  |
| $\begin{aligned} & \text { 해양 } \\ & \text { 수산부 } \end{aligned}$ | 진흥 | 소금산업 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 20 |
|  | 지원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 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  |
|  | 육성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
|  | 촉진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텔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 한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  |
|  | 조성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기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자 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 부처명 | 법 률 |  | 비 고 |
| :---: | :---: | :---: | :---: |
| 환경부 | 진흥 | 환경교육진흥법 | 11 |
|  | 지원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  | 육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
|  | 촉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  | 조성 |  |  |
|  | 기타 |  |  |
| $\begin{aligned} & \text { 국가 } \\ & \text { 보훈처 } \end{aligned}$ | 진흥 |  | 5 |
|  |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
|  | 육성 |  |  |
|  | 촉진 |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부처명 | 법 률 |  | 비 고 |
| :---: | :---: | :---: | :---: |
|  | 조성 |  |  |
|  | 기타 |  |  |
|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진흥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 2 |
|  | 지원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육성 |  |  |
|  | 촉진 |  |  |
|  | 조성 |  |  |
|  | 기타 |  |  |
| 국민 <br> 안전처 | 진흥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 |
|  | 지원 |  |  |
|  | 육성 |  |  |
|  | 촉진 |  |  |
|  | 조성 |  |  |
|  | 기타 |  |  |


| 부처명 |  | 법 률 | 비 고 |
| :---: | :---: | :---: | :---: |
| 기상청 | 진흥 | 기상산업진흥법 | 1 |
|  | 지원 |  |  |
|  | 육성 |  |  |
|  | 촉진 |  |  |
|  | 조성 |  |  |
|  | 기타 |  |  |
| 농촌 진흥청 | 진흥 | 농촌진흥법 | 1 |
|  | 지원 |  |  |
|  | 육성 |  |  |
|  | 촉진 |  |  |
|  | 조성 |  |  |
|  | 기타 |  |  |
| 문화재청 | 진흥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1 |
|  | 지원 |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부처명 | 법 률 |  | 비 고 |
| :---: | :---: | :---: | :---: |
|  | 육성 |  |  |
|  | 촉진 |  |  |
|  | 조성 |  |  |
|  | 기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산림청 | 진흥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4 |
|  | 지원 |  |  |
|  | 육성 |  |  |
|  | 촉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
|  | 조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기타 |  |  |
| 조달청 | 진흥 |  | 1 |
|  | 지원 |  |  |
|  | 육성 |  |  |
|  | 촉진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


| 부처명 | 법 률 |  | 비 고 |
| :---: | :---: | :---: | :---: |
|  | 조성 |  |  |
|  | 기타 |  |  |
| $\begin{gathered} \text { 중소 } \\ \text { 기업청 } \end{gathered}$ | 진흥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  |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  | 육성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  | 촉진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
|  | 조성 |  |  |
|  | 기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
| 특허청 | 진흥 | 발명진흥법 | 1 |
|  | 지원 |  |  |
|  | 육성 |  |  |
|  | 촉진 |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부처명 | 법 률 |  | 비 고 |
| :---: | :---: | :---: | :---: |
|  | 조성 |  |  |
|  | 기타 |  |  |
| 금융 위원회 | 진흥 |  | 1 |
|  | 지원 |  |  |
|  | 육성 |  |  |
|  | 촉진 |  |  |
|  | 조성 | 금웅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
|  | 기타 |  |  |
| 방송 <br> 통신 <br> 위원회 | 진흥 |  | 1 |
|  | 지원 |  |  |
|  | 육성 |  |  |
|  | 촉진 |  |  |
|  | 조성 |  |  |
|  | 기타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


| 부처명 | 법 률 |  | 비 고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국무 } \\ & \text { 조정실 } \end{aligned}$ | 진흥 |  | 2 |
|  | 지원 |  |  |
|  | 육성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  | 촉진 |  |  |
|  | 조성 |  |  |
|  | 기타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
|  |  | 소계 | 286 |

## 5. 주요 진흥법제 개관 및 구성 체계 ${ }^{120)}$

| 법률명 |  | $\begin{array}{l}\text { 제정 } \\ \text { 일자 }\end{array}$ | $\begin{array}{l}\text { 제정목적 }\end{array}$ | $\begin{array}{l}\text { 조문 } \\ \text { 구성 }\end{array}$ |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비 고

120) 분량 문제로 진흥법제의 일부에 대해서만 정리하였다. 법률별 제정일자, 제정목적, 조문구성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를 참조하기 바란다.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1 조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제 11 조의 2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 11 조의 3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제 11 조의 4 학교생활기록 제 12 조 교원의 임용•보수 등 제 12 조의 2 교원의 파견근무 제 12 조의 3 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 13 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제 14 조 재정 지원 제 15 조 영재교육연구원 제 16 조 특례자 선정 등 제 17 조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제 18 조 특례자의 전학• 배치 등 |  |
| 건설기술 진흥법 | $\begin{gathered} 1987 . \\ 10.24 . \end{gathered}$ |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 구 -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 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 제 8 장 <br> 제91조 | 제 1 장 총칙 <br>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3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br>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 2013.5.22. <br> 전부개정을 <br> 통해 <br> 「건설기술 관리법, 에서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 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 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 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br> 제6조 기술자문위원회 <br> 제 2 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br> 제7조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 <br> 제 8 조 건설기술의 연구 • 개발 등의 권고 <br> 제9조 공동 연구•개발 등 <br> 제 10 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br> 제11조 기술평가기관 <br> 제 12 조 시범사업의 실시 <br> 제 13 조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br> 제 14 조 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br> 제 15 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br> 제 16 조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br> 제 17 조 국제 교류 및 협력 <br> 제 18 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br> 제 19 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br> 제 3 장 건설기술자의 육성 등 <br> 제 20 조 건설기술자의 육성 <br> 제 21 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 「건설기술 <br> 진흥법， <br> 으로 법률 <br> 제명을 <br> 변경함．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22 조 건설기술자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 23 조 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 24 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br> 제4장 건설기술용역 등 <br> 제1절 건설기술용역업 <br> 제 25 조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br> 제 26 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br> 제27조 결격사유 <br> 제 28 조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br> 제 29 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등 <br> 제 30 조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br> 제 31 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br> 제 32 조 과징금 <br> 제 33 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업 무 계속 <br> 제 34 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br> 제 35 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br> 제 36 조 건설기술의 공모 <br> 제 37 조 건설기술용역 대가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38 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도•감독 등 제2절 건설사업관리 <br> 제 39 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 40 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 41 조 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제 42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5 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 43 조 설계 등의 표준화 제44조 설계 및 시공 기준 제 44 조의 2 건설기준의 관리 제45조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제 46 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 47 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 48 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 49 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50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제51조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52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2 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 53 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 55 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 56 조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57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 58 조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 59 조 공장인증의 취소 등 제 60 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61조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3조 안전관리비용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67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68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6장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1절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69조 협회의 설립 <br> 제 70 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br> 제71조 보고 등 <br> 제 72 조 지도•감독 등 <br> 제 73 조 다른 법률의 준용 <br> 제 2 절 공제조합 <br> 제7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br> 제 75 조 공제조합의 사업 <br> 제76조 조사 및 검사 등 <br> 제 77 조 지도•감독 등 <br> 제 78 조 다른 법률의 준용 <br> 제7장 보칙 <br> 제79조 수수료 <br> 제 80 조 시정명령 <br> 제 81 조 비밀의 누설 등 금지 <br> 제 82 조 권한 등의 위임 - 위탁 <br> 제 83 조 청문 <br> 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br> 제8장 벌칙 |  |

274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85 조 벌칙 <br> 제86조 벌칙 <br> 제87조 벌칙 <br> 제 88 조 벌칙 <br> 제 89 조 벌칙 <br> 제 90 조 양벌규정 <br> 제 91 조 과태료 |  |
| 식품산업 진흥법 | $\begin{aligned} & 2007 \\ & 12.27 \end{aligned}$ |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 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 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 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장 <br> 제 38 개조 | 제 1 장 총칙 <br>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br> 제4조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br> 제5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br>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br> 제 2 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br> 제7조 식품산업전문인력 양성 <br> 제 8 조 식품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 9 조 식품산업통계의 조사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9 조의 2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 10 조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br> 제 11 조 식품산업사업자단체 <br> 제 12 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br> 제 12 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br> 제 12 조의 2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등 제 3 장 식품산업의 진흥 <br> 제 13 조 계약거래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 13 조의 2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등 제 14 조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등 제 14 조의 2 식품명인제품의 사후 관리 제 15 조 식품산업컨설팅 지원 제 16 조 삭제 <br> 제 17 조 전통식품과 식생활문화의 세계화 제 17 조의 2 한식세계화 사업추진기관의 지정등 제 18 조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 - 발전 제 18 조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 - 발전 제 19 조 식품성분조사등 <br> 제 19 조의 2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  |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9 조의 3 농산물가공품생산등의 지원 제 19 조의 4 수산가공품생산등의 지원 제 19 조의 5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등 제 19 조의 6 수산물가공업의 정지등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br> 제 20 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br> 제 21 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br> 제 22 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br> 제 22 조의 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 <br> 제 23 조 삭제 <br> 제 24 조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지정등 <br> 제 24 조의 2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br> 제 25 조 부정행위의 금지등 <br> 제 26 조 우수식품등인증및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사후관리 제 27 조 수수료등 <br> 제 28 조 표시변경등의 명령 <br> 제 29 조 우수식품등 인증의 취소 <br> 제 30 조 승계 <br> 제5장 보칙 |  |

277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31조 조세의 감면 <br> 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 33 조 우수식재료사용 촉진 <br> 제 33 조의 2 청문등 <br> 제 34 조 권한의위임 • 위탁 <br> 제 34 조 권한의위임 • 위탁 <br> 제 35 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br> 제6장 벌칙 <br> 제 36 조 벌칙 <br> 제37조 양벌규정 <br> 제 38 조 과태료 |  |
| 게임산업 <br> 진흥에 <br> 관한 법률 | $\begin{gathered} 2006 . \\ 4.28 \end{gathered}$ |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 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 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 제7장 제57개조 | 제1장 총칙 <br>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3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수립•시행 <br> 제 2 장 게임산업의 진흥 <br> 제4조 창업등의 활성화 <br> 제 5 조 전문인력의 양성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br> 제7조 협동개발 및 연구 <br> 제 8 조 표준화 추진 <br> 제 9 조 유통질서의 확립 <br> 제 10 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 11 조 실태조사 <br> 제 3 장 게임문화의 진흥 <br> 제 12 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br> 제 12 조의 2 게임과 몰입의 예방등 <br> 제 12 조의 3 게임과 몰입•중독예방조치등 <br> 제 12 조의 4 게임물이용 교육지원등 <br> 제 13 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br> 제 14 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br> 제 15 조 <br> 제4장 등급분류 <br> 제 16 조 게임물관리위원회 <br> 제 16 조의 2 위원회의 법인격등 <br> 제 17 조 감사 <br> 제 17 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7 조의 3 회의록 <br> 제 18 조 사무국 <br> 제 19 조 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등 <br> 제 20 조 지원 <br> 제 21 조 등급분류 <br> 제 22 조 등급분류거부 및 통지등 <br> 제 23 조 등급의 재분류등 <br> 제 24 조 등급분류의 통지등 <br> 제 24 조의 2 등급분류업무의 위탁등 <br> 제 24 조의 3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br> 제24조의4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br> 제5장 영업질서 확립 <br> 제 1 절 영업의신고•등록•운영 <br> 제 25 조 게임제작업등의 등록 <br> 제 26 조 게임제공업등의 허가등 <br> 제 27 조 영업의 제한 <br> 제 28 조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br> 제 29 조 영업의 승계 <br> 제 30 조 폐업 및 직권말소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31조 사후관리 <br> 제 2 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br> 제 32 조 불법게임물등의 유통금지등 제 33 조 표시의무 <br> 제 34 조 광고•선전의 제한 <br> 제 3 절 등록취소등 행정조치 <br> 제 35 조 허가취소등 <br> 제 36 조 과징금부과 <br> 제 37 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br> 제 38 조 폐쇄 및 수거등 <br> 제6장 보칙 <br> 제 39 조 협회등의 설립 <br> 제 39 조의 2 포상금 <br> 제 40 조 청문 <br> 제 41 조 수수료 <br> 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 <br> 제 43 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br> 제7장 벌칙 <br> 제44조 벌칙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 47 조 양벌규정 제 48 조 과태료 |  |
|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 $\begin{gathered} 1999 . \\ 2.8 . \end{gathered}$ |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 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begin{aligned} & \text { 제7장 } \\ & \text { 제72개조 } \end{aligned}$ | 제1장 총칙 <br>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br> 제4조 문화산업의 중•장기기본계획수립등 <br> 제5조 연차보고 <br>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br> 제2장 창업•제작•유통 <br> 제7조 창업의 지원 <br>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br> 제9조 투자조합 <br> 제 10 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br> 제 10 조의 2 완성보증계정의 설치등 <br> 제 11 조 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br> 제 11 조의 2 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  |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2 조 유통활성화 <br> 제 12 조의 2 공정한 거래질서구축 <br> 제 13 조 삭제 <br> 제 14 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br> 제 15 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 표시 <br> 제 15 조의 2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등 <br> 제 15 조의 3 우수문화프로젝트등의 지정취소 <br> 제 3 장 문화산업기반조성 <br> 제 16 조 전문인력의 양성 <br> 제 16 조의 2 가치평가기관의 지정등 <br> 제 16 조의 3 평가기관 및 평가수수료 지원 <br> 제 16 조의 4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br> 제 17 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개발의 촉진 <br> 제 17 조의 2 기술료의 징수 <br> 제 17 조의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등 <br> 제 17 조의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준용 제 17 조의 5 문화기술연구주관기관의 지정등 <br> 제 18 조 삭제 <br> 제 19 조 협동개발 - 연구의 촉진등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20 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진출지원 제 21 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등 <br> 제 22 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br> 제 23 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등 <br> 제 24 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br> 제 25 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br> 제 26 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지원 <br> 제 27 조 각종부담금등의 면제 <br> 제 28 조 인 - 허가등의 의제 <br> 제 28 조의 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등 <br> 제 28 조의 3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지원 <br> 제 29 조 국공유재산의대부 - 사용등 <br> 제 30 조 세제지원등 <br> 제 30 조의 2 문화산업진흥시설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br> 지원 <br> 제 30 조의 3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br> 제 30 조의 4 소비자보호 <br> 제 31 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br> 제4장 삭제 |  |

284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32 조 <br> 제 33 조 <br> 제 34 조 <br> 제 35 조 <br> 제 36 조 <br> 제 37 조 <br> 제 38 조 <br> 제5장 삭제 <br> 제 39 조 <br> 제 40 조 <br> 제 41 조 <br> 제42조 <br>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br> 제 43 조 문화산업전문회사 <br> 제 44 조 회사의 형태 <br> 제 45 조 사원의 수 <br> 제 46 조 사원총회 <br> 제 47 조 겸업등의 제한 <br> 제 48 조 유사명칭사용금지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begin{array}{ll}\text { 법률명 }\end{array}$ |  | $\begin{array}{l}\text { 제정 } \\ \text { 일자 }\end{array}$ | $\begin{array}{l}\text { 제정목적 }\end{array}$ | $\begin{array}{l}\text { 조문 } \\ \text { 구성 }\end{array}$ |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br>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br> 제7조 위원의 임기 <br> 제8조 위원회의 운영 <br> 제 3 장 원자력진훙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원자력의 <br> 연구 - 개발등 <br> 제9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br> 제 10 조 종합계획의 시행 <br> 제 11 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등 <br> 제 12 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br> 제 13 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br> 제 14 조 강제징수 <br> 제 15 조 특허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br> 제 16 조 실태조사 <br> 제4장 원자력기금 <br> 제 17 조 원자력기금의 설치 <br> 제 18 조 기금의 관리 - 운용 <br> 제 19 조 기금의 사용 <br> 제5장 보칙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제 20 조 비밀누설금지 <br> 제 21 조 원자력이용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제 21 조의 2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br> 제6장 벌칙 <br> 제 22 조 벌칙 <br> 제 23 조 과태료 |  |
| 지 원 | 남녀고용 <br> 평등과 <br> 일－가정 <br> 양립 <br> 지원에 <br> 관한 법률 | $\begin{aligned} & 1987 . \\ & 12.4 . \end{aligned}$ | 이 법은「대한민국헌법」 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 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 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 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 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 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  | 제1장 총칙 <br>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적용범위 <br> 제 4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br> 제 5 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br> 제6조 정책의 수립등 <br> 제6조의 2 기본계획수립 <br> 제6조의 3 실태조사실시 <br> 제 2 장 고용에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br> 제7조 모집과 채용 <br> 제8조 임금 | 2007．12．21．， <br> 일부개정을 <br> 통해 법 <br> 제명을 <br> 「남녀고용 <br> 평등법」 <br> 에서 <br> 「남녀고용 <br> 평등과 <br> 일－가정 <br> 양립 지원에 <br> 관한 <br> 법률」로 <br> 변경함． |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9 조 임금외의 금품등 <br> 제 10 조 교육•배치 및 승진 <br> 제 11 조 정년•퇴직 및 해고 <br> 제 2 절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br> 제 12 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br> 제 13 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br> 제 13 조의 2 성희롱 예방교육의 위탁 <br> 제 14 조 직장내 성희롱발생시 조치 <br> 제 14 조의 2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방지 <br>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 <br> 제 15 조 직업지도 <br> 제 16 조 직업능력개발 <br> 제 17 조 여성고용촉진 <br> 제 17 조의 2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지원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br> 제 17 조의 3 적극적고용개선 조치시행계획의 수립•제출등 제 17 조의 4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등 <br> 제 17 조의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명단공표 제 17 조의 6 시행계획등의 게시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7 조의 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제 17 조의 8 적극적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 17 조의 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등 <br> 제 3 장 모성보호 <br> 제 18 조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 18 조의 2 배우자출산휴가 <br> 제 3 장의 2 일 - 가정의양립지원 <br> 제19조 육아휴직 <br> 제 19 조의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br> 제 19 조의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 근로조건등 <br> 제 19 조의 4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사용형태 <br> 제 19 조의 5 육아지원을 위한 그밖의 조치 <br> 제 19 조의 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br> 제 20 조 일 •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br> 제 21 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등 <br> 제 21 조의 2 그밖의 보육관련지원 <br> 제 22 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br> 제 22 조의 2 근로자의 가족돌봄등을 위한 지원 <br> 제 22 조의 3 일 - 가정양립지원기반조성 |  |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4장 분쟁의예방과해결 <br> 제 23 조 상담지원 <br> 제 24 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br> 제 25 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br> 제 26 조 <br> 제 27 조 <br> 제 28 조 <br> 제 29 조 <br> 제 30 조 입증책임 <br> 제5장 보칙 <br> 제 31 조 보고 및 검사등 <br> 제 31 조의 2 자료제공의 요청 <br> 제 32 조 고용평등이행실태등의 공표 <br> 제 33 조 관계서류의 보존 <br> 제 34 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br> 제 35 조 경비보조 <br>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 36 조의 2 규제의 재검토 <br> 제6장 벌칙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37조 벌칙 <br> 제 38 조 양벌규정 <br> 제 39 조 과태료 |  |
| 장기공공 <br> 임대주택 <br> 입주자 <br> 삶의 질 <br> 향상 <br> 지원법 | $\begin{gathered} 2009 \\ 3.25 \end{gathered}$ |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 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3 개조 | 제 1 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국가등의 지원 제4조 입주자의 참여 <br> 제 5 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br> 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등 <br> 제 7 조 사업주체의 관리의무 <br> 제 8 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br> 제 9 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제 10 조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br> 제 10 조의 2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의 증축 제 10 조의 3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제 11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begin{gathered} 2014 . \\ 6.3 \end{gathered}$ |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 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 제83개조 | 제1장 총칙 <br> 제1조 목적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 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 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br> 제4조 적용범위 <br>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br>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br> 제 2 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br> 제1절 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br>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br> 제 8 조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br> 제 9 조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br> 제 10 조 지역개발계획수립의 제한 <br>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br> 제 11 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br> 제 12 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제안 <br> 제 13 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br> 제 14 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br> 제 15 조 사전협의등 <br> 제 16 조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의 고시 <br> 제 17 조 행위등의 제한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8 조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의 해제 <br> 제 3 절 지역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등 제 19 조 시행자의 지정 <br> 제 20 조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등 <br> 제 21 조 지역개발사업시행의 위탁 <br> 제 22 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br> 제 23 조 실시계획의 승인 <br> 제 24 조 인가 - 허가등의 의제 <br> 제 25 조 지역개발사업구역등의 일괄지정•승인 <br>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등 <br> 제 26 조 지역개발사업의 시행방식 <br> 제 27 조 토지등의 수용등 <br> 제 28 조 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 <br> 제 29 조 이주대책등 <br> 제 30 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br> 제 31 조 선수금 <br> 제 32 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br> 제 33 조 원형지의 공급등 <br> 제 34 조 기초조사등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35 조 토지에의 출입등에 따른 손실보상 <br> 제 36 조 공공시설의 귀속등 <br> 제 37 조 국유지•공유지의 처분제한 <br> 제5절 준공검사등 <br> 제 38 조 준공검사 <br> 제 39 조 공사완료의 공고 <br> 제 40 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br> 제 41 조 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 <br>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등 <br> 제 42 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br> 제 43 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등 <br> 제 44 조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br>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등 <br> 제 45 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등 <br> 제 46 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등에 따른 의제 <br> 제 47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특례 <br> 제 48 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br> 제4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br> 제 50 조 투자선도지구개발을 위한 지원등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br> 제51조 조세－부담금등의 감면 <br> 제 52 조 국유•공유재산의임대－매각 <br> 제 53 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지원 <br> 제54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br> 제 55 조 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등의 지원 <br>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br> 제 57 조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운영 <br> 제 58 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br> 제 59 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적용특례 <br> 제 60 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적용특례 <br> 제61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br> 제6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br> 제 63 조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br> 제6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등 <br> 제 65 조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br> 제66조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평가 <br> 제 3 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br> 제67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  |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68 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절차등 <br> 제69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br> 제 70 조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br> 제71조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br> 제4장 보칙 <br> 제 72 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등의 전환 <br> 제 73 조 지역개발사업구역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br> 제 74 조 부동산가격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br> 제75조 지정취소등 <br> 제76조 보고•검사등 <br> 제77조 청문 <br> 제78조 행정심판 <br> 제 79 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br> 제 80 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의제 <br> 제5장 벌칙 <br> 제81조 벌칙 <br> 제 82 조 양벌규정 <br> 제 83 조 과태료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귀농어- <br> 귀촌 <br> 활성화 및 <br> 지원에 <br> 관한 법률 | $\begin{array}{r} 2015 \\ 1.29 \end{array}$ | 이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 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 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7개조 | 제 1 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국가등의 책무 <br>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br> 제 5 조 종합계획의 수립등 <br> 제6조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br> 제7조 귀농어업인•귀촌인정착 지원 <br> 제 8 조 귀농어초기에 대한 지원등 <br> 제9조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등 <br> 제 10 조 귀농어 • 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등 <br> 제 11 조 지원센터의지정취소등 <br> 제 12 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br> 제 13 조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등 <br> 제 14 조 박람회등의 개최 <br> 제 15 조 창업 및 주택구입등 지원 <br> 제 16 조 낙후지역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br> 제 17 조 농지•어장매입등 지원 <br> 제 18 조 시설•장비등의 지원 <br> 제 19 조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20 조 법인에 대한 지원 <br> 제 21 조 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등 <br> 제 22 조 정보의 제공 <br> 제 23 조 조세의 감면 <br> 제24조 보고 및 검사 <br> 제 25 조 청문 <br>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br> 제 27 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  |
| 노후준비 <br> 지원법 | $\begin{array}{r} 2015 \\ 6.22 \end{array}$ |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 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3개조 | 제 1 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국가등의 책무 <br> 제 4 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br> 제 5 조 기본계획의 수립 <br> 제6조 노후준비지원사업 <br> 제7조 노후준비지표 <br> 제8조 국가노후준비위원회 <br> 제9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br> 제 10 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br> 제 11 조 노후준비서비스제공자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2 조 결격사유 <br> 제 13 조 금지행위 <br> 제 14 조 정보유출의 금지 <br> 제 15 조 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 16 조 연금보험정보의 제공등 <br> 제 17 조 정보활용의 제한 <br> 제 18 조 보고•검사등 <br> 제 19 조 시정명령 <br> 제 20 조 지정취소등 <br> 제 21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br> 제 22 조 벌칙 <br> 제 23 조 과태료 |  |
| 의료 해외 <br> 진출 및 <br> 외국인 <br> 환자 유치 <br> 지원에 <br> 관한 법률 | $\begin{aligned} & 2015 . \\ & 12.22 \end{aligned}$ |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 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 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 | 제 31 개조 | 제 1 장 총칙 <br>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br> 제 2 장 관리•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4조 의료해외진출의 신고 <br> 제5조 우회투자의 금지 |  |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6조 외국인환자유치에 대한 등록 <br> 제 7 조 등록증대여등의 금지 <br> 제 8 조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 <br> 제 9 조 과도한 수수료등의 제한 <br> 제 10 조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제한 <br> 제 11 조 보고의무 <br> 제 3 장 지원 및 육성 <br> 제 12 조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사업 <br> 제 13 조 전문인력의 양성 <br> 제 14 조 유치기관평가 및 지정 <br> 제 15 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br> 제 16 조 외국인환자 사전 - 사후관리 <br> 제 17 조 금융 및 세제지원 <br> 제4장 운영체계 <br> 제 18 조 종합계획의 수립 <br> 제 19 조 정책심의위원회 <br> 제 20 조 연차보고 <br> 제 21 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등 <br> 제5장 보칙 및 벌칙 |  |

301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22조 시정명령 <br> 제 23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br> 제 24 조 등록의 취소 <br> 제 25 조 지정의 취소 <br> 제 26 조 과징금 <br> 제27조 신고자포상 <br> 제 28 조 벌칙 <br> 제 29 조 벌칙 <br> 제 30 조 양벌규정 <br> 제 31 조 과태료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begin{gathered} 2011 . \\ 8.4 . \end{gathered}$ |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 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 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 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 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  | 제 1 장 총칙 <br> 제 1 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기본이념 <br> 제 4 조 장애아동의 권리 <br>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br> 제 2 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br> 제 6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


| 법률명 | $\begin{aligned} & \text { 제정 } \\ & \text { 일자 } \end{aligned}$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7조 장애아동복지지원의 심의 <br> 제 8 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br> 제 9 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br> 제 10 조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br> 제 11 조 장애아동복지지원 실태조사 <br> 제 3 장 복지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br> 제 12 조 장애의 조기발견 <br> 제 13 조 복지지원의 신청 <br> 제 14 조 복지지원대상자 선정 <br> 제 15 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br> 제 16 조 복지지원제공기관의 연계 <br> 제 17 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br> 제 18 조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br>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br> 제 19 조 의료비 지원 <br> 제 20 조 보조기구지원 <br> 제 21 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br> 제22조 보육지원 <br> 제23조 가족지원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begin{array}{ll}\text { 법률명 }\end{array}$ |  | $\begin{array}{l}\text { 제정 } \\ \text { 일자 }\end{array}$ | 제정목적 | $\begin{array}{l}\text { 조문 } \\ \text { 구성 }\end{array}$ |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40 조 양벌규정 <br> 제 41 조 과태료 |  |
| 발전소 <br> 주변지역 <br> 지원에 <br> 관한 법률 | $\begin{gathered} 1989 . \\ 6.16 \end{gathered}$ |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 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1 개조 | 제 1 장 총칙 <br> 제 1 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의 설치 <br> 제 2 장 삭제 <br> 제4조 <br> 제5조 <br> 제6조 <br> 제7조 <br> 제8조 <br> 제 3 장 지원사업의 시행 <br> 제9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br> 제 10 조 지원사업의 종류등 <br> 제 11 조 지원사업의 시행자 <br> 제 12 조 <br> 제 13 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br> 제 13 조의 2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306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장 아이돌보미의 직무등 <br> 제 5 조 아이돌보미의 직무 <br> 제6조 결격사유 <br> 제 7 조 아이돌보미의 자격 <br> 제 8 조 명의대여등의 금지 <br> 제 9 조 교육기관의 지정등 <br> 제 10 조 보수교육 <br> 제 3 장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br> 제 11 조 서비스제공기관지정등 <br> 제 12 조 서비스기관정보의 제출등 <br> 제 13 조 서비스기관의 임무등 <br> 제 13 조의 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br> 제 14 조 표준계약서작성 <br> 제 15 조 보호자의 준수사항 <br> 제 16 조 서비스기관에 대한 권고등 <br> 제 17 조 서비스기관지정의 취소등 <br> 제 18 조 서비스기관 관리•평가 <br> 제4장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 <br> 제 19 조 공동육아나눔터 |  |

307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begin{array}{ll}\text { 법률명 }\end{array}$ |  | $\begin{array}{l}\text { 제정 } \\ \text { 일자 }\end{array}$ | 제정목적 | $\begin{array}{l}\text { 조문 } \\ \text { 구성 }\end{array}$ |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비 고 |
| :--- |

308

| 법률명 |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제36조 양벌규정 제 37 조 과태료 |  |
| $\begin{aligned} & \text { 육 } \\ & \text { 성 } \end{aligned}$ | 사회적 <br> 기업 <br> 육성법 | $\begin{array}{r} 2007 \\ 1.3 \end{array}$ |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 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br> 제4조 삭제 <br> 제 5 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br> 제 5 조의 2 시 • 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 <br>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br> 제 8 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br> 제9조 정관등 <br> 제 10 조 경영지원 등 <br> 제 10 조의 2 교육훈련 지원 등 <br> 제 11 조 시설비 등의 지원 <br> 제 12 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br> 제 13 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br> 제 14 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5 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br> 제 16 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br> 제 16 조의 2 사회적기업의 날 <br> 제 17 조 보고 등 <br> 제 18 조 인증의 취소 <br> 제 19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br> 제 20 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br> 제 21 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br> 제 22 조 벌칙 <br> 제 23 조 과태료 |  |
| 지방대학 <br> 및 <br> 지역균형 <br> 인재 <br> 육성에 <br> 관한 법률 | $\begin{array}{r} 2014 . \\ 1.28 \end{array}$ |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 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1 장 총칙 <br>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br>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br> 제 2 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등 <br> 제 5 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의 수립 |  |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br> 제 7 조 다른계획과의 관계 <br> 제 3 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 <br> 제 8 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제 9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br>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등 <br> 제 10 조 교원의 참여확대 <br> 제 11 조 해외교류-연수의 기회균등 <br> 제 12 조 지역인재의 공무원임용기회확대 <br> 제 13 조 공공기관등의 채용확대등 <br> 제 14 조 대학등의 지역인재 우대채용 <br> 제 15 조 대학의 입학기회확대 <br> 제 16 조 국가등의 지원 <br> 제 17 조 특성화지방대학의 지정등 <br> 제 18 조 지방대학의 책무 <br> 제 19 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지원협의회 <br> 제 5 장 지역균형인재고용영향평가 <br> 제 20 조 정책등의 지역균형인재고용 영향평가실시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생명공학 <br> 육성법 | $\begin{aligned} & 1983 . \\ & 12.31 \end{aligned}$ |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 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 - 발전시키고 그 개 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6 개조 | 제 1 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3조 적용범위 <br> 제4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br> 제 5 조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등 <br> 제6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br> 제7조 삭제 <br> 제 8 조 삭제 <br> 제9조 연구 및 기술협력 <br> 제 10 조 공동연구의 촉진 <br> 제 11 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제 12 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br> 제 13 조 생명공학육성시책 강구등 <br> 제 14 조 검정 및 임상 <br> 제 15 조 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br> 제 16 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br> 제 17 조 기초의 과학육성지원기구 <br> 제 18 조 삭제 | 1995.1.5. <br> 일부개정을 <br> 통해 <br> 유전공학을 <br> 생명공학 <br> 으로 <br> 기술영역을 <br> 확대하기 <br> 위하여 <br> "유전공학 <br> 육성법"을 <br> "생명공학 <br> 육성법"으 <br> 로 제명을 <br> 변경함.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2 조의 3 신기술인증의 표시 제 12 조의 4 신기술인증의 취소 제 13 조 신기술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 제 14 조 기술개발성과의 이전촉진 제 15 조 기술역량진단사업 추진 제 16 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제 17 조 국제공동연구등 협력사업 제 18 조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제 19 조 포상 <br> 제 19 조의 2 청문 <br>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br> 제 21 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의제 <br> 제22조 벌칙 <br> 제23조 양벌규정 |  |
| $\begin{gathered} 1 \text { 인 } \\ \text { 창조기업 } \\ \text { 육성에 } \end{gathered}$ <br> 관한 법률 | $\begin{gathered} 2011 . \\ 4.4 \end{gathered}$ |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 성을 갖춘 국민의 1 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 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 | 제 23 개조 | 제 1 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1 인창조기업인정의 특례 <br>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하여 1 인 창조기업을 육 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  | 제 5 조 1 인창조기업육성계획의 수립등 제6조 실태조사 <br> 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br> 제 8 조 1 인창조기업지원센터의 지정등 <br> 제 9 조 지식서비스거래 지원 <br> 제 10 조 교육훈련지원 <br> 제11조 기술개발지원 <br> 제 12 조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br> 제 13 조 해외진출지원 <br> 제 14 조 홍보사업 등 <br> 제 15 조 금융지원 <br> 제 16 조 전담기관 지정등 <br> 제 17 조 조세에 대한 특례 <br> 제 18 조 ${ }^{\text {「 }}$ 식품산업진흥법, 에 관한 특례 <br> 제 19 조 보고•검사 <br> 제 20 조 청문 <br> 제 21 조 권한등의 위임 - 위탁 <br> 제 22 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br> 제 23 조 과태료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촉 } \\ & \text { 진 } \end{aligned}$ |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begin{gathered} 2008 \\ 6.5 \end{gathered}$ |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 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 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국가등의 책무 <br> 제4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의 수립 <br> 제 5 조 연도별시행계획 등 <br> 제6조 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 <br> 제 7 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br> 제 8 조 일자리창출지원 <br> 제9조 유망직종선정•지원 <br> 제 10 조 직업교육훈련 <br> 제11조 인턴취업지원 <br> 제 12 조 경력단절예방 <br> 제 13 조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br> 제 14 조 보고•검사 <br> 제 15 조 권한의 위임-위탁 <br> 제 16 조 관계기관의 협조 |  |
|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 $\begin{aligned} & 1991 . \\ & 12.31 \end{aligned}$ |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 |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제 2 조 정의 | 2008.3.21., <br> 일부개정으 <br> 로 고령자 |


| 법률명 | $\begin{aligned} & \text { 제정 } \\ & \text { 일자 } \end{aligned}$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고령자 <br> 고용 <br> 촉진에 <br> 관한 법률 |  | （高齢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 로써，고령자의 고용안 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  | 제 3 조 정부의 책무 <br> 제4조 사업주의 책무 <br> 제 4 조의 2 <br> 제 4 조의 3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br> 제 1 장의 2 고용상연령차별금지 <br> 제 4 조의 4 모집－채용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 <br> 제 4 조의 5 차별금지의 예외 <br> 제 4 조의 6 진정과 권고의 통보 <br> 제4조의7 시정명령 <br> 제 4 조의 8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등 <br> 제 4 조의 9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br> 제 2 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br> 제 5 조 구인－구직 정보수집 <br> 제6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br> 제7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br> 제 8 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개선에 <br> 대한 지원 <br> 제 9 조 고령자의 취업알선기능 강화 <br> 제 10 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 고용촉진법 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1 조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제 11 조의 2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 11 조의 3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 전문인력고용지원 <br> 센터의 지정취소등 <br> 제 11 조의 4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br> 제 3 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br> 제 12 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br> 제 13 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등 <br> 제 14 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br> 제 15 조 우선 고용직종의 선정등 <br> 제 16 조 우선 고용직종의 고용 <br> 제 17 조 고용확대의 요청등 <br> 제18조 내용공표 및 취업알선중단 <br> 제4장 정년 <br> 제 19 조 정년 <br> 제 19 조의 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개편등 <br> 제 20 조 정년제도운영현황의 제출등 <br> 제 21 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br> 제 21 조의 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  |

318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21 조의 3 퇴직예정자등의 구직활동지원 제 22 조 정년연장에 대한 지원 <br> 제5장 보칙 <br> 제 23 조 보고와 검사 <br> 제 23 조의 2 권한의 위임 <br> 제 23 조의 3 벌칙 <br> 제 23 조의 4 양벌규정 <br> 제 24 조 과태료 |  |
| 택지개발 <br> 촉진법 | $\begin{aligned} & 1980 \\ & 12.31 \end{aligned}$ |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 한 주택난（住宅難）을 해 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 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 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 39 개조 |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용어의 정의 <br> 제 3 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등 <br> 제 3 조의 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br> 제 3 조의 3 주민등의 의견청취 <br>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br> 제5조 <br> 제6조 행위제한등 <br>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등 <br> 제 8 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br>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등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0 조 토지에의 출입등 <br> 제 11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12 조 토지수용 <br> 제 12 조의 2 건축물의 존치등 <br> 제 13 조 환매권 <br> 제 14 조 간선시설의 설치 <br> 제 15 조 <br> 제 16 조 준공검사 <br> 제 17 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br> 제 18 조 택지의 공급 <br> 제 18 조의 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br> 제 19 조 택지의 용도 <br> 제 19 조의 2 택지의 전매행위제한등 <br> 제20조 선수금등 <br> 제21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br> 제 22 조 자료제공의 요청 <br> 제 22 조의 2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 23 조 감독 <br> 제 23 조의 2 청문 <br> 제 24 조 보고 및 조사등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25 조 공공시설등의 귀속 <br> 제 26 조 국유지•공유지의 처분제한등 <br> 제 27 조 행정심판 <br> 제 28 조 자금의 지원 <br> 제 29 조 <br> 제 30 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br> 제 30 조의 2 택지개발지구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br> 제 31 조 <br> 제31조의 2 벌칙 <br> 제 32 조 벌칙 <br> 제 33 조 <br> 제 34 조 양벌규정 <br> 제 35 조 과태료 |  |
| 해외건설 촉진법 | $\begin{aligned} & 1975 . \\ & 12.31 \end{aligned}$ |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 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 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 제41개조 | 제1장 총칙 <br>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br> 제4조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br> 제 5 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의 수립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  | 제 2 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br>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br> 제7조 삭제 <br> 제 8 조 삭제 <br> 제9조 삭제 <br> 제 3 장 현지법인설립등의 신고 및 보고 <br> 제 10 조 현지법인설립등의 신고 <br> 제 11 조 삭제 <br> 제 12 조 삭제 <br> 제 13 조 해외공사상황보고 <br> 제 4 장 해외공사의 지원등 <br> 제 14 조 삭제 <br> 제 15 조 삭제 <br> 제 15 조의 2 해외중소건설업자 지원 제 15 조의 3 해외도시개발사업의 지원 <br> 제 15 조의 4 해외건설정책 및 연구개발등 지원 제 15 조의 5 해외공사관련 국제협력지원등 제 15 조의 6 금융자문 <br> 제 16 조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등 <br> 제 17 조 합작수주•시공의 권고등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7 조의 2 공공기관의 해외공사투자 <br> 제 17 조의 3 해외건설진흥위원회 <br> 제 18 조 기술개발 <br> 제 18 조의 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br> 제 18 조의 3 응급의료시설의 설치등 <br>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br> 제 19 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등 <br> 제 19 조의 2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등에 관한 협의 제 19 조의 3 존립기간 <br> 제 19 조의 4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검사등 제 19 조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등 <br> 제 19 조의 6 자산운용의 범위 <br> 제 19 조의 7 자금의 차입 <br> 제 20 조 삭제 <br> 제 21 조 삭제 <br> 제 22 조 삭제 <br> 제6장 해외건설협회 <br> 제 23 조 해외건설협회의 설립등 <br> 제 23 조의 2 협회의 설립인가등 <br> 제 24 조 협회의 업무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25 조 총회 <br> 제 26 조 협회의 임원등 <br> 제 27 조 지도•감독 <br> 제 28 조 「민법，의 준용 <br> 제7장 감독 <br> 제 29 조 삭제 <br> 제 30 조 삭제 <br> 제 31 조 삭제 <br> 제 32 조 삭제 <br> 제 33 조 대리시공 <br> 제 8 장 보칙 <br> 제 34 조 권한의 위탁 <br> 제 35 조 삭제 <br> 제 36 조 삭제 <br> 제9장 벌칙 <br> 제37조 벌칙 <br> 제 38 조 벌칙 <br> 제 39 조 벌칙 <br> 제 40 조 양벌규정 <br> 제 41 조 과태료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장애인• <br> 노인 등을 <br> 위한 <br> 보조기기 <br> 지원 및 <br> 활용촉진에 <br> 관한 법률 | $\begin{aligned} & 2015 \\ & 12.29 \end{aligned}$ |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 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 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 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4개조 | 제 1 장 총칙 <br> 제 1 조 목적 <br> 제 2 조 기본이념 <br> 제 3 조 정의 <br> 제 4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br> 제 5 조 기본계획수립등 <br>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br> 제 2 장 보조기기의 지원등 <br> 제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사업 <br> 제8조 보조기기 교부등 <br> 제 9 조 보조기기 정보제공 <br> 제 10 조 보조기기의 품질관리등 <br> 제 11 조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br> 제 12 조 보조기기 업체의 의무 <br> 제 3 장 보조기기센터 <br> 제 13 조 중앙보조기기센터 <br> 제 14 조 지역보조기기센터 <br> 제4장 보조기기관련 전문인력 <br> 제 15 조 보조공학사자격증 교부등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begin{aligned} & \text { 제정 } \\ & \text { 일자 } \end{aligned}$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 을 목적으로 한다. |  | 제6조 삭제 <br> 제7조 삭제 <br> 제 3 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추진 제 8 조 상생협력성과의 공평한 배분 <br> 제 9 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촉진 <br> 제 10 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인력교류확대 <br> 제 11 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등 <br> 제 12 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환경경영협력촉진등 <br> 제 13 조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례 <br> 제 14 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실태조사 <br> 제 15 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지수의 산정 • 공표 <br> 제 16 조 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지원 <br> 제 17 조 수탁기업협의회 <br> 제 18 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완화 <br> 제 19 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협력촉진 <br> 제 20 조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설립 <br> 제 20 조의 2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br> 제4장 수탁 - 위탁거래의공정화 <br> 제 21 조 약정서의 발급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22 조 납품대금의 지급등 <br> 제 23 조 검사의 합리화 <br> 제24조 품질보장등 <br> 제 24 조의 2 기술자료임치제도 <br> 제 24 조의 3 기술자료임치의 등록 <br> 제 24 조의 4 비밀유지의무 <br> 제 24 조의 5 수수료 <br> 제 25 조 준수사항 <br> 제 26 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등 <br> 제 27 조 수탁 - 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개선 <br> 제 28 조 분쟁의 조정 <br> 제 28 조의 2 교육명령등 <br> 제 5 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br> 제 29 조 <br> 제 30 조 <br> 제 31 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br> 제 32 조 사업조정신청등 <br> 제 33 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br> 제 34 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34 조의 2 사업조정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 35 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 <br> 제 36 조 대기업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지원 제 37 조 대기업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br> 제 38 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br> 제 39 조 서류의 비치 <br> 제 40 조 자료의 제출등 <br> 제 40 조의 2 손해배상책임 <br> 제7장 벌칙 <br> 제41조 벌칙 <br> 제42조 양벌규정 |  |
| 산업융합 촉진법 | $\begin{gathered} 2011 . \\ 4.5 \end{gathered}$ |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 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 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 $\begin{gathered} \text { 제 } 39 \text { 개 } \\ \text { 조 } \end{gathered}$ | 제 1 장 총칙 <br>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국가등의 책무 <br>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br> 제 2 장 산업융합의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둥 <br> 제 5 조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등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br>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등 <br> 제7조 산업융합관련 통계의 조사•작성 <br> 제8조 산업융합발전위원회 <br> 제 9 조 융합신산업관계법령의 개선권고등 <br> 제 10 조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등 <br> 제 3 장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br> 제 11 조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의 신청 <br> 제 12 조 적합성인증심사 <br> 제 13 조 적합성인증등 <br> 제 14 조 적합성인증의 취소 <br> 제 15 조 적합성인증의 거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br> 제 16 조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br> 제4장 산업융합촉진의 지원과 활성화등 <br> 제 17 조 융합신산업의 지원 <br> 제 18 조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등 <br> 제19조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관련 지원등 <br> 제 20 조 산업간 협력체계의 구축 <br> 제 21 조 산업융합연계조직의 지원등 <br> 제 22 조 이종산업간 인력의 상호교류지원 <br> 제 23 조 시범사업의 실시 |  |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24 조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지원등 <br> 제 25 조 산업융합신제품구매자에 대한 지원 <br> 제 26 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등 <br> 제 27 조 대학교원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br> 제 5 장 산업융합의 기반조성 <br> 제 28 조 산업융합특성화대학의 지정등 <br> 제29조 산업융합표준화 <br> 제 30 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진출의 촉진과 지원등 <br> 제 31 조 산업융합문화의 기반조성 <br> 제6장 보칙 <br> 제 32 조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외 사용금지등 <br> 제 33 조 청문 <br> 제34조 수수료 <br> 제 35 조 금융지원등 <br> 제36조 위임 및 위탁 <br> 제 37 조 벌칙적용시 공무원의제 <br> 제7장 벌칙 <br> 제 38 조 벌칙 <br> 제 39 조 과태료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농수산자 } \\ & \text { 조금의 } \\ & \text { 조성 및 } \\ & \text { 운용에 } \end{aligned}$ <br> 관한 법률 | $\begin{gathered} 2012 \\ 2.22 \end{gathered}$ |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 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 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장 총칙 <br>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농수산자조금의 설치 <br> 제4조 자조금의 용도 <br> 제 5 조 출연 및 지원 <br> 제 2 장 의무자조금 <br> 제 6 조 의무자조금의 설치 <br> 제 7 조 의무자조금의 재원 <br> 제 8 조 의무거출금의 한도 <br> 제 9 조 총회의 설치등 <br> 제 10 조 총회의 운영 <br> 제 11 조 총회의 의결사항 <br> 제 12 조 대의원회 <br> 제 13 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br> 제 14 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등 <br> 제 15 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의 해임 제 16 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br> 제 17 조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


| 법률명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8 조 사무국의 설치등 <br> 제 19 조 의무거출금의 납부 <br> 제 20 조 의무거출금수납의 위탁 <br> 제 21 조 의무자조금의 폐지 <br> 제 3 장 임의자조금 <br> 제 22 조 임의자조금의 설치 <br> 제 23 조 임의자조금의 재원 <br> 제 24 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br> 제 25 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br> 제 26 조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br> 제 27 조 임의자조금의 폐지 <br> 제4장 보칙 <br> 제 28 조 통계의 작성•관리등 <br> 제 29 조 과오납금의 환급 <br> 제 30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br> 제 31 조 자조금운용평가 <br> 제 32 조 지도•감독 <br>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br> 제5장 벌칙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34조 벌칙 <br> 제 35 조 벌칙 <br> 제 36 조 양벌규정 <br> 제 37 조 과태료 |  |
| 연구실 <br> 안전환경 <br> 조성에 <br> 관한 법률 | $\begin{gathered} 2005 \\ 3.31 \end{gathered}$ |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 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 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 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 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 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1 장 총칙 <br> 제 1 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적용범위등 <br> 제4조 정부의 책무 <br> 제4조의 2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 제4조의 3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제 4 조의 4 연구실안전관리의 정보화 제 5 조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br> 제 2 장연구실의안전조치 <br> 제 5 조의 2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등 제6조의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6조의 3 안전관리우수연구실 인증 제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8 조 안전점검의 실시 <br> 제 9 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br> 제 10 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보고 및공표 제 10 조의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 등록 제 11 조 검사 <br> 제 12 조 증표제시 <br> 제 13 조 비용의 부담등 <br> 제14조 보험가입 <br> 제 15 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등 <br> 제 15 조의 2 사고보고 <br> 제 16 조 사고조사의 실시 <br> 제17조 연구실 사용제한등 <br> 제 18 조 교육-훈련등 <br> 제 18 조의 2 대학-연구기관등의 지원 <br> 제 18 조의 3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br> 제 3 장 보칙 <br> 제 19 조 신고 <br> 제 19 조의 2 보험관련자료의 제출 <br> 제20조 비밀유지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21 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제4장 벌칙 <br> 제 22 조 벌칙 <br> 제 23 조 벌칙 <br> 제 24 조 양벌규정 <br> 제 25 조 과태료 |  |
| 마리나 <br> 항만의 <br> 조성 및 <br> 관리 등에 <br> 관한 법률 | $\begin{gathered} 2009 \\ 6.9 \end{gathered}$ |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 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 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 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begin{aligned} & \text { 제6장 } \\ & \text { 제57개조 } \end{aligned}$ | 제 1 장 총칙 <br>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br> 제 2 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br>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등 <br> 제 5 조 기본계획의 변경등 <br> 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등 <br> 제7조 기초조사 <br> 제 3 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br>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등 <br> 제 9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등 <br> 제 10 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등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1 조 마리나항만구역지정의 해제 <br> 제 12 조 행위등의 제한 <br> 제 13 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등 <br> 제 14 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br> 제 15 조 토지출입등에 따른 손실보상 <br> 제 16 조 인 - 허가등의 의제 <br> 제 17 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br> 제 17 조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의적용 특례 <br> 제 17 조의 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br> 제 18 조 준공확인 <br> 제 19 조 공사완료의 공고등 <br> 제 20 조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br> 제 21 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등 <br> 제 22 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br> 제 23 조 시설관리권 처분의 특례 <br>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br> 제 24 조 관리규정 <br> 제 24 조의 2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br> 제 25 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등의 비용부담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26 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등 제 27 조 행위의 금지 제 28 조 원상회복등 <br> 제4장의 2 마리나업 <br> 제 28 조의 2 마리나업의 등록등 <br> 제 28 조의 3 마리나업의 승계등 <br> 제 28 조의 4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br> 제 28 조의 5 등록사업자의 의무 <br> 제 28 조의 6 시정명령 <br> 제 28 조의 7 등록취소등 <br> 제 28 조의 8 보험가입 <br> 제 28 조의 9 분양 및 회원모집 <br> 제 28 조의 10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등 <br> 제5장 보칙 <br> 제 29 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br> 제 30 조 국 - 공유재산의 대부 - 사용등 <br> 제 31 조 각종부담금등의 감면 <br> 제 32 조 비용의 지원 <br> 제 32 조의 2 마리나선박제조사 고유식별코드 |  |


| 법률명 |  | 제정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제 32 조의 3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br> 제 33 조 행정처분 <br> 제 33 조의 2 검사•확인등 <br> 제 33 조의 3 수수료 <br> 제 34 조 청문 <br> 제 35 조 권한의 위임-위탁 <br> 제 36 조 벌칙적용에있어서의 공무원의제 <br> 제6장 벌칙 <br> 제 37 조 벌칙 <br> 제 38 조 벌칙 <br> 제 39 조 벌칙 <br> 제 40 조 양벌규정 <br> 제 41 조 과태료 |  |
| $\begin{aligned} & \text { 기 } \\ & \text { 타 } \end{aligned}$ | 교육국제화 <br> 특구의 <br> 지정• <br>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begin{gathered} 2012 . \\ 1.26 . \end{gathered}$ |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 <br> 를 지정•운영하여 국제 <br> 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 <br> 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 <br>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 제 22 조 | 제1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br> 제4조 특구의 지정등 <br> 제 5 조 특구의 지정해제 <br> 제6조 특구 육성종합계획의 수립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벨트 조성 <br> 및 지원에 <br> 관한 <br> 특별법 |  |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 고, 기초연구와 비즈니 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 <br>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br> 제2장 추진체계 <br> 제 5 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br> 제6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br> 제7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br> 제 3 장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br> 지정등 <br> 제 8 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등 <br> 제9조 기본계획수립시 지구입지관련 고려사항 <br> 제 10 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br> 제 11 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br> 제 12 조 거점지구의 개발 <br> 제 12 조의 2 지구의 관리•육성계획수립 등 <br> 제 12 조의 3 거점지구토지의 용도구분등 <br> 제 12 조의 4 입주의 승인등 <br> 제 13 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br> 제4장 기초연구환경구축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조문 <br> 구성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14 조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등 <br> 제 15 조 연구원의 사업 <br> 제 16 조 임원 <br> 제 17 조 이사회 <br> 제 18 조 원장 <br> 제 19 조 연구단의 운영등 <br> 제 20 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전담부서등 <br> 제 21 조 연구원의 5 개년 계획에 대한 지원 <br> 제 22 조 연구원의 운영재원등 <br> 제 23 조 무상대부등 <br> 제 24 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br> 제 25 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br> 제 26 조(보고•검사등) <br> 제 27 조(대형 기초연구시설의 설치등) <br> 제 5 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 <br> 제 28 조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br> 제29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br> 및 자금지원등 <br> 제 30 조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등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31 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 대부 및 매각등의 특례 <br> 제 32 조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br> 제 33 조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 및 대학 - 연구기관• <br> 기업간 교류-협력체계구축 <br> 제 33 조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기관• <br> 기업간 교류-협력체계구축 <br> 제 34 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br> 제 35 조 운영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br> 제 35 조의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기관 <br> 제 35 조의 3 투자조합에의 참여 <br>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조성 <br> 제 36 조 「출입국관리법, 에 관한 특례 <br> 제 37 조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br> 제 38 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br> 제 39 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br> 제 40 조 외국인 자녀전용 어린이집의 설치등 <br> 제41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지원등 <br> 제 42 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 운영등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43 조 외국인진료병원등의 지정 및 운영 <br> 제 44 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 제 45 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br> 제 46 조 교육 • 문화예술 • 관광시설지원 <br> 제 47 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br> 제7장 보칙 <br> 제 48 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br> 제 49 조 부동산가격안정 및 난개발방지에 관한 조치 <br> 제 8 장 벌칙 <br> 제50조 벌칙 <br> 제51조 양벌규정 <br> 제 52 조 과태료 |  |
| 주한미군 <br> 기지 <br> 이전에 따른 <br> 평택시 등의 <br> 지원 등에 <br> 관한 특별법 | $\begin{aligned} & 2004 . \\ & 12.31 \end{aligned}$ |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 정，대한민국과미합중국 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 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 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 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 | $\begin{aligned} & \text { 제 } 5 \text { 장 } \\ & \text { 제 } 50 \text { 개조 } \end{aligned}$ | 제 1 장 총칙 <br> 제 1 조 목적 <br> 제 2 조 정의 <br> 제 3 조 국가의 책무 <br> 제 2 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제 4 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br> 제 5 조 인－허가등의 의제 |  |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 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 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 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 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6조 영향평가등의 실시 <br> 제7조 부담금의 면제 <br> 제8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등에 관한 특례 제 8 조의 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br> 제 3 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br> 제 9 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br> 제 10 조 차입금 <br> 제 11 조 잉여금의 처리 <br> 제 12 조 예비비 <br> 제 13 조 세출예산의 이월 <br> 제 4 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등 <br> 제 14 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확정 <br> 제 15 조 연차별 개발계획 <br> 제 16 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br> 제 17 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등 <br> 제 18 조 인•허가등의 의제등 <br> 제 19 조 사업비의 지원 <br> 제20조 부담금의 감면 <br> 제 21 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등 |  |

《부 록》 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 법률명 | 제정 <br> 일자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조문 } \\ & \text { 구성 } \end{aligned}$ | 주요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 22 조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br> 제 23 조 국제화계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br> 제 24 조 국제화계획지구지정등의 효과 <br> 제 24 조의 2 토지수용 <br> 제 25 조 공장의 신설등에 관한 특례 <br> 제 26 조 학교의 이전등에 관한 특례 <br> 제 27 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 운영 등 <br> 제 28 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br> 제 29 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br> 제 29 조의 2 지방산업단지조성보조금지원의 특례 제 30 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br> 제 31 조 공공시설의 귀속등 <br> 제 5 장 주변지역의 지원등 <br> 제 32 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br> 제 33 조 이주대책의 수립등 <br> 제 34 조 지방교부세지원의 특례 <br> 제 35 조 주변지역주민등의 우선고용등 <br> 제 36 조 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br> 제6장 보칙 |  |

5. 주요 진흥법제 개관 및 구성 체계

| 법률명 |  | $\begin{array}{l}\text { 제정 } \\ \text { 일자 }\end{array}$ | 제정목적 | $\begin{array}{l}\text { 조문 } \\ \text { 구성 }\end{array}$ |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보


[^0]:    2 Key Words : Promotion Legislation (Promotion Acts), Support Legislation (Support Acts), Fostering Legislation (Fostering Acts), Legislative Model, Legislative Standards

[^1]:    1) 2016년 1월 1 일 기준으로 약 286 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세한 현황은 부록 참조 바람.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 정보자료 중 제정•공포 법률을 기준으로 함. http://www.law.go.kr (방문일자 2016. 2. 20).
[^3]:    3）해당 연구는 박영도（a），「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6 발간된 보고서임．이하의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여 요약•분석하였다．
    4）박영도（a），앞의 보고서，p． 345

[^4]:    14) 박영도(a) 앞의 보고서, pp.19~20
[^5]:    25) 이준호 외(a), 앞의 보고서, p. 65
    26) 이준호 외(a), 앞의 보고서, p. 65
[^6]:    49）「조세특례제한법」제3조

[^7]:    63）「국가재정법」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 5 조제 1 항 관련）

[^8]:    78）입법 모델（안）은 관련 입법례 규정을 참고로 하여 제안하였다．
    79）미래와경영연구소，「NEW 경제용어사전」，미래와경영，2006．4．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2652\＆cid＝42111\＆categoryId＝42111（방문일자 2016．10．13）

[^9]:    90）입법모델（안）은 이준호（d），앞의 보고서，pp．56～69 및 유사 관련 입법례의 내용이 다．전체적인 구조는 이준호（d）앞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동 일하다．

[^10]:    91）개발계획 외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32 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공공주택 특별법」제 33 조 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11]:    92）입법 모델（안）은 관련 입법례 규정을 참고로 하여 제안하였다．

[^12]:    93) 박영도(a), 앞의 보고서, p. 432
[^13]:    95) (1), (2)의 경우는 박영도(a), 앞의 보고서, p.433에서 제시되었다.
[^14]:    96）「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법，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유태동，제1차 워크숍 토론자 료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15]:    98）물론「건설기술관리법」에서「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진 흥법제로의 성격 변화를 모색한 개정취지는 공감하는 바이다．그러나 실질적인 법 률 규정 내용 및 규제 체계의 전환 없이，일부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고 법률의 제 명을 변경하여 법률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든 면이 없지 않다．

[^16]:    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2)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105)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87.12.8. 선고 86 누 824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08.26. 선고 96 누 17769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이 있다.

[^17]:    111）헌재，1999．7．22． 98 헌바 14 전원재판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 3조 위헌소원
    112）국회법 제 79 조의 2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1）의원이 예산 또는

[^18]: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 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 1 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 략할 수 있다．
    （3）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 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 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4）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113）국회법 제 79 조의 3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1） 의원 또는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 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기대효과，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